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2020. 9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상세하고 유익한 자문의견을 주신 정지만 교수님(상명대학교), 이민환 교수님(인하대학교), 서대교 교수님(건국대학교), 최용호 특별연구위원님(금융연구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머 리 말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한도 인상 등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1997년 현재와 같은 통합체제가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경제·금융위기 속에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제 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가 분화되고, 금융회사들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되었다. 또한 저금리, 저성장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0년 9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안 철 경

■ 목차

요약 / 1

I. 예금보험제도 재고(再考)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선행연구 / 11

3. 연구내용 및 구성 / 19

II.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기금관리체계 / 20

1.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 20

2.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개선 / 55

III.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 90

1. 보호한도 개선 / 90

2. 보호범위 확대 / 114

IV.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 128

1. 현황 / 128

2. 목표기금 재설정 / 137

3. 자금조달방식 재검토 / 145

V.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과제 / 159

1. 개선방향 / 159

2. 정책과제 / 161

| 참고문헌 | / 164

| 부록 | / 171

■ 표 차례

- 〈표 I-1〉 1998년 이전 금융권역별 기금 현황 / 4
- 〈표 I-2〉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 수 및 부보예금 분포(2019년 말) / 4
- 〈표 I-3〉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보호한도(금융권역별 보호한도 동일) / 5
- 〈표 I-4〉 新예금보험기금 목표적립 비율 및 적립액(2019년 말) / 7
- 〈표 II-1〉 도산처리절차 비교: 사법부 주도형과 행정당국 주도형 / 24
- 〈표 II-2〉 일본의 조건변경 사례(1997~2001년) / 35
- 〈표 II-3〉 국가별 정리체계 비교: 적용대상(2013년 4월 기준) / 46
- 〈표 II-4〉 국가별 정리체계 비교: 정리권한 사용조건(2016년 1월 기준) / 48
- 〈표 II-5〉 국가별 정리체계 비교: 은행 정리권한(2019년 9월 기준) / 50
- 〈표 II-6〉 국가별 보험회사 정리체계 비교(2019년 9월 기준) / 52
- 〈표 II-7〉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 61
- 〈표 II-8〉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금융감독체계 / 63
- 〈표 II-9〉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보호한도 / 64
- 〈표 II-10〉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보호대상 / 65
- 〈표 II-11〉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 66
- 〈표 II-12〉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보조 재원조달 / 68
- 〈표 II-13〉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통합보호기구의 역할과 정리당국 / 69
- 〈표 III-1〉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보호한도 변화 / 91
- 〈표 III-2〉 예금보험 부보예금 변화 / 94
- 〈표 III-3〉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은행 예금보호한도 / 94
- 〈표 III-4〉 금융권역별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 96
- 〈표 III-5〉 해외 은행 예금보호한도 / 100
- 〈표 III-6〉 주요국의 금융권역별 보호한도 / 101
- 〈표 III-7〉 은행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 103
- 〈표 III-8〉 저축은행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 105
- 〈표 III-9〉 보험가입금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생명보험계약 비중(2017년) / 110
- 〈표 III-10〉 생명보험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 110
- 〈표 III-11〉 손해보험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 111

■ 표 차례

- 〈표 III-12〉 보호한도 설정 기준별 특징 / 112
- 〈표 III-13〉 금융투자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 114
- 〈표 III-14〉 자본시장의 성장 / 117
- 〈표 III-15〉 동양그룹 사태 손해배상금액 및 회수액 / 118
- 〈표 III-16〉 국가별 보상대상 재산권 비교 / 119
- 〈표 III-17〉 FSCS 금융서비스 보호대상 및 한도 / 121
- 〈표 III-18〉 호주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검토 / 122
- 〈표 III-19〉 최근 3년간 금융회사 과징금 / 126
- 〈표 IV-1〉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 130
- 〈표 IV-2〉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 131
- 〈표 IV-3〉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 132
- 〈표 IV-4〉 예금보험 계정별 기금적립률 / 134
- 〈표 IV-5〉 차등평가의 구분 / 136
- 〈표 IV-6〉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대비) / 136
- 〈표 IV-7〉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규제 / 138
- 〈표 IV-8〉 생명보험 상품비중(부채구조)의 변화 / 139
- 〈표 IV-9〉 생명보험 자산구조의 변화 / 139
- 〈표 IV-10〉 G10 국가의 기금적립방식 / 141
- 〈표 IV-11〉 목표기금 설정 시 반영 요인 / 142
- 〈표 IV-12〉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 추이 / 147
- 〈표 IV-13〉 금융권역별 총예금보험료 부담 추이 / 147
- 〈표 IV-14〉 금융권역별 ROE 추이 / 148
- 〈표 IV-15〉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 추이 / 149
- 〈표 IV-16〉 금융권역별 총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상환기금특별기금)
추이 / 149
- 〈표 IV-17〉 금융권역별 부보금융회사 수 변화 추이 / 150
- 〈표 IV-18〉 금융권역별 부보예금 추이 / 151
- 〈표 IV-19〉 G10 국가의 기금적립방식 / 153

■ 표 차례

〈표 IV-20〉 G10 국가의 예금보험료 감당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 155

〈표 IV-21〉 사전적립방식과 사후각출방식의 장·단점 / 157

〈표 V-1〉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검토사항 / 163

■ 그림 차례

- 〈그림 I-1〉 예금보험기금 금융권역별 부보예금 대비 적립률(2019년 말) / 7
- 〈그림 II-1〉 금융회사 도산처리절차 개념 / 20
- 〈그림 II-2〉 현행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및 파산 절차 / 23
- 〈그림 II-3〉 일본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 구조 / 36
- 〈그림 II-4〉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현황 / 57
- 〈그림 II-5〉 현행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 73
- 〈그림 II-6〉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방안 1: 권역별 기금 분리 / 73
- 〈그림 II-7〉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방안 2: 권역별 기구 분리 / 74
- 〈그림 II-8〉 FSCS의 공동계정 도입 / 84
- 〈그림 II-9〉 FSCS의 현행 기금체계 / 86
- 〈그림 II-10〉 시장 안정 공동계정 운영방안 1: 금융권역 중심 / 88
- 〈그림 II-11〉 시장 안정 공동계정 운영방안 2: 개별회사 중심 / 88
- 〈그림 IV-1〉 예금보험기금의 수익 및 지출 구조 / 129
- 〈그림 V-1〉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60
- 〈그림 V-2〉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향 / 161
- 〈그림 V-3〉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162

Policy Recommendation to Improve Deposit Protection System and Resolution Regime for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in the midst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ds, then operated by each financial sector, were integrated to form a single deposit insurance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lthough the integrated deposit insurance system has managed to overcome several incidence of instability in Korean financial marke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system have been challenged due to insufficient response to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over the decades.

This report revisits current deposit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diagnoses the problems stemming from the integrated system: in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to each financial sector other than banking and lack of proper resolution regime especially for the financial companies potentially posing threats to financial stability. The report provides key recommendations to improve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resolution regime for financial companies employing domestic analysis and overseas case study. Specifically, the policy proposals include reforms in resolution regime and managing structure of deposit insurance fund, adjusting coverage limit and coverage scope to meet the needs of consumers from each financial sector, and resetting target fund and changing funding structure of deposit insurance.

In summa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and resolution regime for financial companies to reflect the systemic importance and business models of individual financial companies.

요약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예금보험공사가 통합기금의 단일 운영 주체가 되었다. 이후 예금보험기금은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원본보장 상품을 위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부분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합기금 내에 설치하였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스템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 반면, 통합체제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령화와 저금리로 소비자의 위험보장 및 위험추구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통합기금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통합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 과정을 거친 자본규제의 변화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점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대형 금융회사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비용·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직·간접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주요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

금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② 예금 보험기금 관리체계, ③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④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계정을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사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체계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를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사후각출을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하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 현행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I. 예금보험제도 재고(再考)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통합예금보험제도 현황

1) 권역별 기금의 통합과 단일 보호한도 적용

■ 금융회사의 지급불능(Insolvency)이나 유동성 부족(Illiquidity)에 대비하여 권역별로 운영되어 온 관련 기금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통합기금으로 일원화되고, 예금보험공사가 통합기금의 단일 관리 주체가 됨

○ (기금 통합) 예금자보호기금(1996), 보험보증기금(1989), 신용관리기금(1983) 등이 1998년 4월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됨¹⁾

○ (가입 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이 별도 기금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²⁾ 현행 예금보험은 은행 및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총 321개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규모(Insurable Amount)는 2,253조 원임

- 예금수취기관 가운데 일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 가입대상이나, 별도 기금을 가진 신용협동조합 등은 제외됨
- 금융투자의 경우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가 대상임
-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가입 대상이나, 보험회사

1) 개정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2) 별도 기금으로 운용되는 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간의 재보험만을 취급하는 재보험전업사는 대상이 아닌 반면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보증보험회사는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호대상 상품이 없음

〈표 I-1〉 1998년 이전 금융권역별 기금 현황

구분	종금,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험	은행	증권
설립	1983. 5	1983. 7	1989. 4	1996. 6	1997. 4
기금	신용관리 기금	신협안전 기금	보험보증 기금	예금자보호 기금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근거	신용관리기금 법	신용협동조합 법	보험업법	예금자 보호법	증권거래법
대상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내은행, 외은지점	증권회사
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기능	예금보험, 자금지원, 퇴출업무	자금지원, 예금보험	보험금 지급 보장	예금보험, 자금지원	고객예탁금 지급보장
보호한도	2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재원 (요율)	예수금 평잔 종금(0.12%) 금고(0.15%)	예탁금 평잔 (0.06%)	수입보험료 (0.15%)	예금 평잔 (0.03%)	고객예탁금 평잔 (0.15%)

자료: 김용우(1998)

〈표 I-2〉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 수 및 부보예금 분포(2019년 말)

구분	은행	저축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금융회사 321개	16.8%	24.9%	43.9%	7.5%	6.5%
보호대상 2,253조 원	60.1%	2.7%	1.4%	26.8%	8.9%

주: 우리종합금융 1개사의 종합금융계정(회사 수 비중 0.3%, 부보예금 비중 0.1%)은 표에서 생략함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a), “19년 말 총부보예금은 2,252.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1% 증가”

-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자등(이하에 서는 ‘금융소비자’ 또는 ‘소비자’)이 거래하는 원본보장 상품을 위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부분 보장하고 있음**
 - **(보호범위)** 예금, 보험계약, 예탁금 등이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열거되어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보증보험계약,³⁾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변액보험의 주계약, 법인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금융회사 발행 채권 등은 예금보험 보호대상이 아님
- 한편, 원본보장 대상에 들어가나 예금보험 외에 별도 기금으로 보장되는 주택 청약저축 등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8년 7월 이전 발행 RP와 보증보험계약, 1998년 9월 이전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담보부 대출채권, 은행 CD, 은행 발행 채권 등이 한시적(1997. 11~2000. 12)으로 보호받음⁴⁾
- **(보호한도)** 예금보험은 부실 금융회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소비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함
 - 예금보험 출범 초기 보호한도는 2천만 원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보호한도를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Blanket Guarantee)하여 2000년 12월까지 유지함
 - 전액보장 시 1998년 7월 이전 가입상품은 '원금과 약정이자' 또는 '해지환급금과 기타지급액' 전액을 보장하고, 8월 이후 가입상품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내는 소정이자 포함 원리금, 2천만 원 초과분은 원금만 보장함⁵⁾
 - 2001년 1월부터는 '원금+소정이자' 또는 '해지환급금+기타지급금'에 대해 최고 5천만 원으로 보호 한도를 축소함

〈표 I-3〉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보호한도(금융권역별 보호한도 동일)

1997년 11월 이전	1997년 11월~2000년 12월	2001년 1월 이후
1인당 2천만 원	원리금 전액 보장	1인당 5천만 원

자료: 안종길·이종욱(2006)

3)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보증보험회사는 예금보험 가입대상으로 남아 있어서 최저예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4) 예금보험공사(2001)

5) 안종길·이종욱(2006)

2) 사전적립기금 강화

-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후각출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을 설치하되 외환위기로 고갈된 사전적립 예금보험기금과 분리하고, 예금보험기금은 상환기금과 구분하여 '新예금보험기금'으로 명명하며 재정비함
 - (상환기금 설치) 2003년 1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별도로 설치함
 -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된 자금을 생존 금융회사들이 사후각출하는 특별기여금 수입과 상환기금 출연금 수입 등으로 상환기금을 조성함
- 新예금보험기금은 2009년에 사전적립기금의 충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각 권역(계정)의 기금 적립 한도를 정한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함
 - (목표기금) 금융권역별로 목표적립률이 설정되고, 적립 규모가 목표적립률 하한을 초과하면 보험료 감면을, 상한에 도달하면 보험료 면제가 적용됨
 -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권역의 누적적립액은 각각 5.1조 원과 0.3조 원으로 권역별 목표적립률(하한)을 초과하여 적립하고 있음
 - (보험료 차등)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는 재무건전성 등 각종 지표의 평가를 통해 3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개별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도 등급에 따라 달라짐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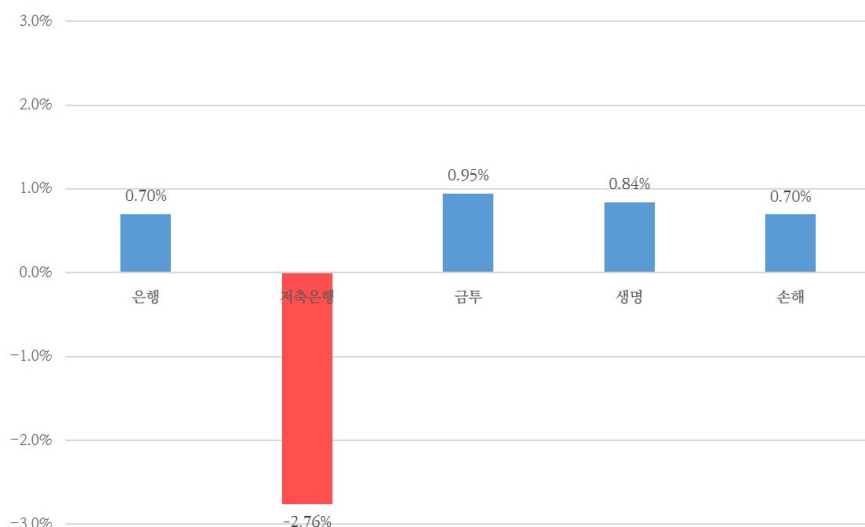
6) 2020년 6월 현재, 현행 3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세분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표 I-4〉 新예금보험기금 목표적립 비율 및 적립액(2019년 말)

구분	은행	저축은행 ¹⁾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목표적립률 ²⁾ (상한~하한)	1.100% ~ 0.825%	1.925% ~ 1.650%	1.100% ~ 0.825%	0.935% ~ 0.660%	1.100% ~ 0.825%
연간적립률 ³⁾	0.08%	0.40%	0.15%	0.15%	0.15%
누적적립액 (조 원)	9.5	-1.7	0.3	5.1	1.4

주: 1) 저축은행 고유계정과 별도로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누적적립액은 -10.3조 원임
 2) 보호대상 예금 총액인 부보(Insurable) 금액 대비 적립률임
 3) 보호한도가 적용된 보호(Insured) 금액 대비 보험료율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2020a), “19년 말 총부보예금은 2,252.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1% 증가”

〈그림 I-1〉 예금보험기금 금융권역별 부보예금 대비 적립률(2019년 말)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a), “19년 말 총부보예금은 2,252.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1% 증가”

3)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계정과 별도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합기금 내에 설치함
- (계정 간 보조) 은행 계정은 물론 다른 금융권역 계정에 사전적립해야 할 예금

보험료의 일부(45%)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기금 구성에 동원함

-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1.7조 원 손실을 포함한 통합기금 규모(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제외)는 14.3조 원임
- 한편,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누적 손실잔액은 10.3조 원으로 2019년 말 현재 부보예금 대비 적립률은 -686.7%에 달함
- **(목표적립률 조정)**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제공한 예금보험료만큼 다른 권역의 목표적립률을 당초 목표의 5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나.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제도의 현주소

■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령화와 저금리로 소비자의 위험보장 및 위험추구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통합기금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함

- **(예금자등)**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1990년대 금융 환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시 권역별 사업모형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금융권역의 소비자들을 '예금자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통합기금을 설계함
 - 당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으로 금융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장의 주력상품은 저축성 금융상품이었음
 - 1997년 당시 생명보험도 장기저축상품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운용자산의 46%가 대출이었고 26%인 유가증권의 절반 이상이 주식이었으며, 보험계약 4건 중 1건이 1년 이내에 해지되어 현·예금 비중도 15%에 달함
- **(보장과 투자)** 금융상품은 저축성 위주에서 노후의 소득과 건강 등을 보장해 줄 연금 및 보장성 보험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다양화되고, 상품 판매 경로가 온라인·비대면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이슈가 대두됨
 - 경제력 향상에 따라 원본보장상품의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이 중요한 보장성 보험이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형상품이 금융시장의 주력상품으로 등장함

- 이에 따라 예금의 원본(Capital)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나 투자자의 예탁금 보장만으로는 통합기금을 통한 시장 안정 달성이 해당 소비자의 충분한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아 ‘예금자등’의 단일 보호방식에 의문이 제기됨
- **(보험소비자)**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을 통한 이자마진 위주의 사업모형에서 사망, 상해, 질병(건강), 장수(연금) 위험 등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마진 위주의 전통적인 보험사업모형으로 전환함
 - 보험은 미래의 재무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위험공동체를 구성한다(Risk Pooling)는 점에서 개별 계약 단위의 예금 등과 다르게 위험공동체 유지, 즉 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함
 - 이때, 보험소비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크게 초과하는 사고보험금을 받아 장래 재무적 손실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원본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보다 사고보험금의 지급 보장이 중요함
- **(금융투자자)**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서는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인한 투자 손실까지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가 예금보험의 영역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음
 - 최근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의 투자 손실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불법 또는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한 보호기금이 없는 데다 급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판매채널의 배상자력도 유사한 문제를 내포함
 - 그러나 투자자의 현금 잔고와 유가증권을 사외 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금융투자자의 경우 원본보장에 한정하고 있는 예금자 중심의 현행 통합기금에서 해외 사례의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
- **(예금자 보호의 확장)**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권역별 기금의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권역 간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다르게 국내 통합기금에는 운영의 경직성이 두드러짐
 - 보험의 경우 통합기금 보험계정의 적립 규모는 G7의 어느 보험기금 규모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에도 청·파산을 배제하지 않는 정리방식과 예금자 보호한도

- 적용은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함
- 금융투자의 경우 보호범위는 G7의 금융투자자 보호범위에 비해 협소함

■ **현행 통합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 과정을 거친 자본규제의 변화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함**

- **(자본규제)**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자본충분성을 강화하는 미시건전성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영향력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주목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부상함
 - 개별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는 예금보험제도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기금의 수요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함
- **(목표기금)**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그동안 강화된 미시건전성 자본규제를 권역별 목표기금 추정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임
 - 현행 목표기금 설정은 자본규제 강화 이전의 외환위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꾸준히 강화된 자본규제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어려움을 목표기금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예금보험제도의 경기순응성을 높일 가능성이 큼
- **(비례성)** 외환위기의 재발이나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시나리오에 대응한 통합기금의 설계에는 공적자금을 포함한 자금조달 및 조달된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구체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거시건전성 강화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시장 영향력에 비례하는 대응을 전제로 한 기금 설계가 필요해 보이며, 이 경우 신속한 정리(Fast Resolution)와 많은 규모의 사전적립(Pre-funded) 기금이 모든 권역에 필요하지 않음
 -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권역의 기금에 대해서는 '최소비용'과 '사전적립'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다.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점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목표 재설정)**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위기대응 강화)** 대형 금융회사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비용 최소화)**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비용·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직·간접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리제도)**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주요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2. 선행연구

-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예금보험의 이론적 모형을 제공한 Diamond and Dybvig(1983) 이후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과 효율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됨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함

가. 금융소비자 보호

1) 보험계약자 보호

- 기존 문헌에서는 보험권역, 즉 보험상품 및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 제도 설계·운영과 계약유지를 전제로 한 부실 보험회사 처리를 주장함
 - 통합기금체제 출범 이후 금융권역 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금융 권역에 동일한 기금설계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보험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운영, 보호한도, 재원조달 등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 연구주제임
- 대표적인 연구로 이순재(2005), 류건식·김해식(2005), 광장(2018), 예금보험공사(2018c), 한국리스크관리학회(2018), 보험연구원(2019) 등이 있음
 - 이순재(2005)는 예금보험료율 체계의 공정성을 실증분석하여 보험계약자의 부가 타 권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보험권의 보험료율 하향 조정, 권역 간 보호한도 차별화 및 공동보험 도입, 권역별 기금 분리 등을 제안함
 - 류건식·김해식(2005)은 국제적 정합성을 기초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험계약자 보상한도의 이원화,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 복수기금제 도입 등을 제안함
 - 한국리스크관리학회(2018)는 생명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운영구조, 보호한도, 자금조달, 규제환경 등을 분석하여 예금보험료 산출대상에서 수입보험료 가중치 상향, 예금보험료율 인하, 목표기금 하향, 보험권 별도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신설, 특별계정 보험료율의 권역별 통일 및 추가기금의 권역별 고유계정 또는 금융회사에 반환 등을 제안함
 - 광장(2018)은 손해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예금보험료율 및 목표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금보험료 산출대상에서 수입보험료 가중치 상향, 예금보험료율 인하, 목표기금 하향 등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권 별도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 신설을 주장함

- 예금보험공사(2018c)는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분석하여 소기업을 보호대상으로 추가, 상품·급부별 보호한도 차별화 및 상향, 계약유지를 우선하도록 부실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등을 제안함
- 보험연구원(2019)은 부실 보험회사 발생 시 보험계약자 보호와 효과적인 부실 처리를 위해 ‘보험계약의 연속성 유지’를 우선하되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2) 금융투자자 보호

- 기존 문헌에서는 금융투자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만,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임
 - 보호상품에 예탁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포함하고, 보호범위를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만,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별도의 독립된 투자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노형식 외(2014), 전선애·오승곤(2015), 예금보험공사(2018d) 등은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주장함
 - 현재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권역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에 해당함
 - 예금보험기구의 고유업무(금융회사 파산 시 보험금 대지급)가 금융회사 파산 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통합기구가 됨으로서 금융소비자를 포괄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은행, 보험회사 중 금융투자업을 겸업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통합보호체제가 더 효율적임

- 금융소비자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반면, 예금보험기금의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로 인한 권역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반면, 전성인(2007), 맹수석(2008; 2017), 정대섭(2017b) 등은 별도의 독립된 투자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논리적 틀 안에서 보호범위를 보다 확장한 금융투자자 보호제도는 수용하기 어려움
 - 금융투자업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금보험의 혜택을 원본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까지 확장하고 보호범위를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함
 - 금융투자자 보호제도를 통합 예금보험제도 안에 배치할 경우 타 권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거나 권역 간 형평성을 위해 보호범위를 축소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큼

- 한편, 서은숙(2012), 안수현(2012), 조대형(2014) 등은 예금보험기금과 구별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금융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파산 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는 별도의 기금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로 공적기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예, 예금보험공사 등)과 자율규제기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해 볼 수 있음

나. 시스템 위기 대응

1)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

- 기존 문헌에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논의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 개선을 주장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정리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하여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에서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됨
 -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정리원칙을 준용하면서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대표적인 연구로 정지만·오승곤(2010), 이민환·서대교(2011), 김기원·이창순(2012), 권세훈·정지만(2014), 이재연·오승곤(2014), 임형석(2014; 2018), 고영미(2014; 2016), 임형석·고영호(2015), 임형석·이재연(2015), 윤종미(2016), 이진범·권은지(2017), 예금보험공사(2017), 정순섭(2017), 이한준(2018) 등이 있음
-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지정,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원칙(Bail-in) 및 회생·정리계획 도입,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 마련 등이 있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회생 및 정리계획 제출의무 등 감독을 강화함
 - 공적자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책임분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나 채권자들이 정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함
 - 대형·복합금융회사에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 또는 파산에 처하게 된 상황을 가정하고 회생이나 정리와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함
 - 시스템 위기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정리기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함

2) 예금보험기구 역할

- 기존 문헌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선제적 역할 강화를 주장함
 - 대표적인 연구로 고동원·노태석(2010), 오승곤 외(2011), 최운열·이진호(2014), 임형석(2016), 정지만·오승곤(2017) 등이 있음
-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선제적 역할 강화방안으로 부실의 조기 인식,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금융안전망 협조체계 강화 등이 있음
 - 부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기구 간 정보공유 강화, 예금보험기구의 조사·검사 권한 강화 등을 제안함
 - 부실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 금융안전망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안전망기구 간 금융업무협의회의 법제화 등을 제안함

다. 예금보험제도 세부설계

1) 보호범위

- 김은정(2016) 등은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호대상의 상품을 예시적 열거 지정에서 포괄적 정의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법령에 권역별로 열거함
 - 권역별 예시적 열거지정 체제는 동일(또는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동일 수준의

보호원칙과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분리보호가 미흡하고, 새로 출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대응이 늦음

- 기존 문헌에서는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만, 보호한도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현행 예금보험의 보호한도(5천만 원)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전 금융권역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환경 변화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2017) 등은 금융상품별로 예금자(계약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수익자도 보호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해외에서는 신탁계좌, 보험상품 등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도 같이 보호함

2) 자금조달

- 기존 문헌에서는 예금보험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Merton(1977)의 옵션가격결정법을 활용하되, 관찰되지 않는 변수의 대용치(Proxy)를 찾거나, 자본규제로 인한 경기순응성을 반영함
 - Merton(1977)은 예금을 은행이 예금자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로 보고, 예금보험계약을 은행 자산에 대한 풋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응용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함
 - 김봉한·전선애(2002) 등은 Duan(1994)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함
 - Merton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산가치와 자산수익률의 변동성을 알아야 하지만, 이 두 변수는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함
 - 강호성 외(2011) 등은 Falkenheim and Pennacchi(2003)의 시장비교접근법

(Market Comparable Approach)을 이용하여 비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산정함

- 장동한·최필선(2008) 등은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예금보험료 산정을 제안함

■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Merton(1977)의 옵션가격결정법 이외의 적정기금수준을 바탕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함

- 김대식 외(2004) 등은 CreditMetrics의 방법론을 기초로 한 부도모형을 이용한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액 분포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도출하여 99% VaR (Value at Risk)를 기준으로 목표기금 규모와 목표기금 도달기간을 산출함

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도출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짐

-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대량 인출 사태를 막아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춤
- 본 연구는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정책목표로 전통적인 예금보험의 기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함

■ 또한 연구범위 측면에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정책목표인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부터 예금보험의 세부 설계까지 일관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존 연구들은 연구범위를 특정이슈에 한정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연구내용 및 구성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II장에서는 금융권역별 특성 및 개별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는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 및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함
- III장에서는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보호한도 개선방안을 권역별로 도출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보호범위 개선방안을 도출함
- IV장에서는 목표기금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과 재설정 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함
-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종합적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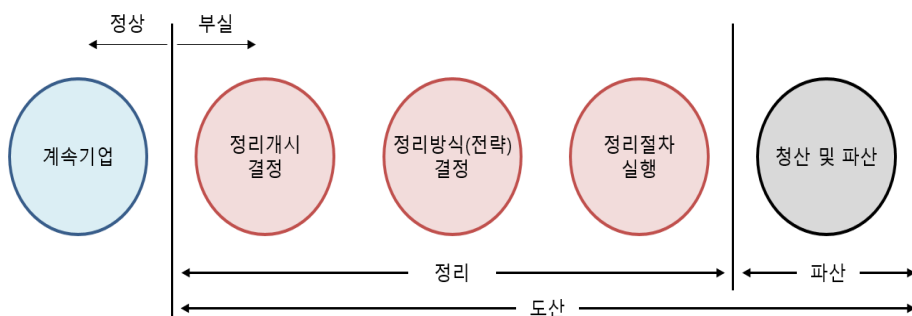
II.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기금관리체계

1.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가. 현황

- 본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행정부)이 취하는 절차 및 조치를 의미함
 - **(도산)** 권한 행사 주체와 상관없이 금융회사 부실 징후 발생에서부터 파산까지 전체 과정을 의미함
 - **(파산)** 법원 주도의 절차로서 법원이 금융회사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 등을 의미함

〈그림 II-1〉 금융회사 도산처리절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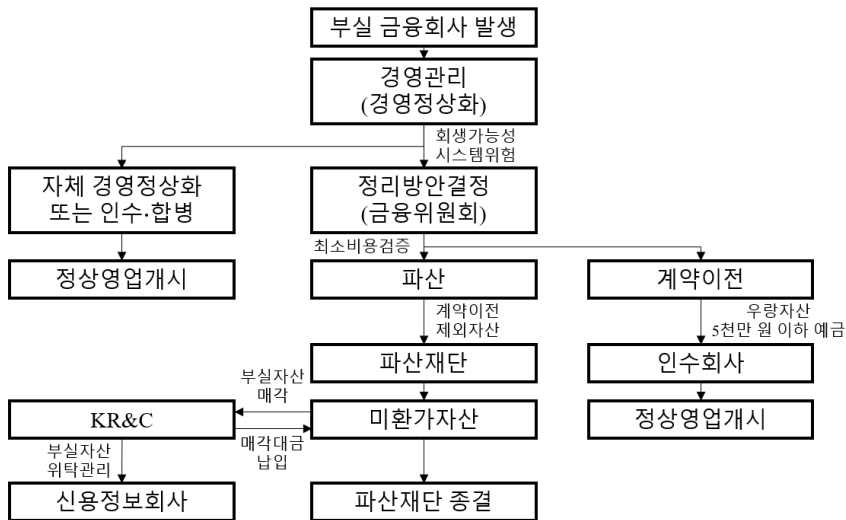
-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예금보험제도와 함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주요 수단으로 두 제도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임
 - **(금융안전망)** 금융안전망은 금융기관 도산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임
 - **(예보제도)**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지급에 대한 사전보증(Guarantee)을 통해 인출 사태를 예방하고 전염적 연쇄파산 차단을 목적으로 함
 - **(정리제도)**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이고 질서 있는 부실 처리를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및 도산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정리기금)**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은 실질적으로 정리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기구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에게 보호예금을 지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폭넓은 정리권한을 가진 위험최소화형(Risk Minimizer)으로 분류됨
 -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기금이 자본잠식(-4.2조 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의 지원 없이 예금보험기금만으로 관련 부실을 지금까지 온전히 처리하고 있음
 - **(보호기금)** 전체 금융권역에 대한 통합기금 운영으로 손해보험을 제외한 각 권역별로 예금보험기금 이외 별도의 보호기금이 없는 상황임
 - 통합기금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할 기금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실 금융회사 지정 및 정리방식을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자금지원 및 경영관리를 담당함
 - **(지정)**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결과 및 예보의 경영상태 실사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 금융회사를 지정함

- 부실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조 제2항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보험 사고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의 지급이 정지된 금융회사로 정의함
 - **(정리)** 금융위는 부실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가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예보에 정리방안 마련을 요청함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의 3단계로 구분됨
 - 예보는 예보법과 금산법에 따라 최소비용 검증을 거쳐 금융위에 정리방안을 제시함
 - **(회생)** 금융위가 부실 금융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고 예보가 예보기금을 투입하여 자체 경영 정상화(또는 M&A) 방식으로 정리절차가 진행됨
-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이 결정되면 법원의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이 설립되고,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선임, 재단을 관리하고 최후 배당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종결이 마무리됨
- **(파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수회사나 가교금융회사에 5천만 원 이하 예금 및 우량자산 등을 계약이전하고, 계약이전 제외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이전함
 - **(관재인)** 예보는 출연 등 자금지원과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등을 지급한 후 파산재단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함
 - **(종결)** 파산재단은 채권확정, 자산환가 및 배당 업무를 진행하며, 미환가 자산은 정리금융기관인 KR&C에 매각한 후 파산재단이 종결됨

〈그림 II-2〉 현행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및 파산 절차



자료: 권은지(2015)

■ 금융회사 도산처리절차는 법적으로 크게 사법부 주도형과 행정당국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사법부 주도형)** 도산절차 개시 여부,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 선임 및 감독, 회사정리계획의 승인 등 도산절차에 대한 권한이 법원에 있음
 - 세계적으로 일반 회사의 도산처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임
 - 통상 법원은 행정부에 비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재산권 분배가 가능하고, 규제 왜곡이 적으며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용이함
- **(행정당국 주도형)** 금융당국(행정부)이 부실 금융회사 지정, 청산 또는 회생 여부, 관리인 선임 및 감독, 부실 금융회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함
 - 주요 금융회사의 도산처리에 관해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함
 - 일반 회사와 달리 금융회사 도산처리에 행정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금융회사 도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표 II-1〉 도산처리절차 비교: 사법부 주도형과 행정당국 주도형

구분	사법부 주도형	행정당국 주도형
목적	-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재산 분배 목적 중심	- 이해관계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 -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고려
장점	- 공평성(이해관계자 간 평등의 실현) - 적법절차의 보장 - 규제왜곡이 적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 용이 - 법원의 최종적 판결·결정으로 제도운영 안정성	- 일상감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 → 부실 판단 및 구조조정 방식에 전문성 보유 -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정리 추진 - 인수합병·계약이전 추진 용이 - 공적 자금 투입 등 효과적 처리
단점	-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 경직된 절차 준수로 도산처리상 유연성 부족	-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의 공평한 처리 및 절차보장 미흡 - 정치적 고려로 일관성 저하 우려 - 공적자금의 과도한 투입 - 금융시장 자생력 약화

자료: 보험연구원(2019)

■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도산처리절차는 금산법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당국 주도형에 속함

- **(신속한 구조조정)** 1997년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 금산법은 부실 금융회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회사법 내지 도산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음
- **(절차적 참여권 제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부실 금융회사 처리에 있어 법원의 역할과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타당성과 합헌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

나. 금융권역별 특성 반영

1) 문제점

■ 금융권역별 특성과 관계없이 정리절차가 모든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됨

- **(통합법)** 금융회사 정리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금산법은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

으로 하는 통합 특별법임

- **현행 정리절차**는 금융안정 달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므로 금융소비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음
 - **(효과성)**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특정 권역(특히, 보험)에서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 있게 달성되지 않고 있음
 - **(보험소비자)** 부실 보험회사 처리 시 계약소멸 및 해지환급금 대지급 방식으로는 보험계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보험회사 정리제도**는 ① 비자발적 계약해지로 인한 보장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하고, ②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미함⁷⁾
 - **(보장중단)** 보험회사 정리제도가 '계약의 연속성 유지'를 우선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해지로 인한 계약자의 금전적 손실 및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으로 결정된 정리방식을 따라야 하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청·파산 방식이 최소비용일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 한 청·파산 절차에 의해 정리해야 함
 - 장기 보장성 보험계약(사망·질병·간병 등)이 해지될 경우, 재가입 시 연령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 위험보장수단 상실이 우려됨
 - 사적연금보험(개인·퇴직연금)이 해지될 경우,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노후보장체계가 약화되는 등 사회보장기능 상실이 우려됨
 - **(전액 또는 전부보호)** 과거 부실 보험회사 처리는 조건변경 없는 전부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전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7) 보험연구원(2019)

- 보험계약자 보호한도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이 전 시 보호한도 및 조건변경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계약자 보호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지 않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평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경영전략을 선택할 유인이 존재함
- 과거 판매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중 현재 판매 중인 보험계약의 보장조건보다 크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회사를 찾기 어려워짐

2) 국제적 논의

가) IAIS의 보험핵심원칙(ICP)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채택한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시 급부 제공’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이전 등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도모할 것을 권고함⁸⁾

- **(계약자 보호 우선)** ‘정리 및 시장퇴출’ 원칙으로 ‘보험회사를 정리하는 경우, 법률체계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시 급부(Benefit) 제공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규정함
- **(개입 권한)** 부실 보험회사 처리에 있어 보험감독자는 건전한 금융회사와의 인수 또는 합병에 개입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실 보험회사를 폐쇄하거나 폐쇄에 조력할 권한을 가져야 함

8) IAIS(2017)

■ IAIS는 부실 보험회사 처리 시 개입방안 선택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시함⁹⁾

- **(개입방안)**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개입방안 결정 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한 부실 보험회사 처리비용(즉, 직접비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방안의 장단점 및 유무형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택하도록 하고 있음

나) EU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지침 도입 논의

■ EU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나 투자자보호제도(Investor Compensation Scheme)와 달리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아직 EU 차원의 통합된 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함

- **(예금자 보호)** EU 공식 출범(1993년) 이후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제도 통합의 일환으로 1994년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지침(Directive 94/19/EC)이 제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최소통합원칙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2014년에 전면 개정된 지침(Directive 2014/49/EU)이 도입됨
- **(투자자 보호)**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지침(Directive 97/9/EC)은 1997년에 제정됨

■ EU 차원에서 당장 완전히 통합된 수준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대신, 최소한의 통합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임

- **(작업반 설립)** 2001년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ttee)에 관련 작업반을 설립한 이후,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지침 제정을 위한 일련의 보고서(Working Paper)를 발표함
- **(백서 발간)** 2010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험계약

9) IAIS(2013)

자보호제도에 대한 백서¹⁰⁾를 발간하고, 효과적이고 동등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함

- **(최소수준 통합)** 2018년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토론보고서¹¹⁾를 발간하고, 잠정적으로 최소수준의 통합(개별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유럽 네트워크 설립)이 보험계약자, 보험시장 및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 다만, 최소수준의 통합 추구 시 기존 개별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잠재적인 부작용 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설계할 것을 권고함

■ EU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① 기금의 설치 의무, ② 기금의 분리, ③ 비전문적 보험계약자 보호, ④ 계약의 연속성 유지, ⑤ 손실 분담과 부분 보장을 고려함¹²⁾

- **(기금 설치)**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기금에 가입해야 함
- **(기금 분리)** 보호기금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회사 지급불능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상호보조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비전문적 계약자 보호)** 보호대상은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 제3의 피해자 등을 포함하고, 보험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비전문적 보험소비자(소규모 기업도 포함)로 한정함
- **(계약연속성 유지)** 보호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함
- **(손실 분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 부실의 책임을 일부 분담하도록 부분 보장(Co-insurance)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함

10) EC(2010)

11) EIOPA(2018)

12) EC(2004; 2005)

- 다만,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로 전부보호함

- 특히 EIOPA는 보험부채 조정, 제한, 상각 등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은 적절한 안전장치하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손실분담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권고함¹³⁾
 - **(우선순위)** 부채 조정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NCWOL)** 보험계약자는 최소한 통상적인 파산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NCWOL: 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 **(실행조건 1)**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다른 가능한 방법과 선택을 모두 고려하고, 이들 대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야 함
 - **(최후수단)**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장 마지막 방안으로 고려해야 함
 - **(실행조건 2)** 다른 정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결국 보험계약자의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함(예: 계약이전을 용이하게 함)
 - **(경영자 요건)** 정리 대상 보험회사의 이어나 다른 주요 임원 등은 적격성 요건(Fit and Proper Requirements)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임되어야 함
 - **(보호범위)**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다른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보험계약자는 가능한 한 범위(보호범위)까지 보상받아야 함

3) 해외사례: 주요국의 보험회사 도산제도

가) 미국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연방 법률이 아닌 주별 입법사항¹⁴⁾으로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절차는 각 주법에 따라 통상 보험감독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회생(Rehabilitation) 등을 추진하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청산(Liquidation)

13) EIOPA(2018)

14) NAIC의 Insurer Receivership Model Act를 기초로 각 주별 입법임

을 신청함¹⁵⁾

- **(보호기금)** 보험계약자보호제도로써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모델법¹⁶⁾을 기초로 제정된 각 주별 법률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보험금지급을 위한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¹⁷⁾

■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은행 등의 도산절차와 달리 주법에 따른 보험 회사의 도산절차에 있어 관리인(Conservator, Rehabilitator 또는 Liquidator)으로 임명되는 주 보험감독자는 계약이전·매각 등 다양한 정리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최소비용원칙의 준수는 법적 의무가 아님¹⁸⁾

- **(지원 권한)** 생명·건강보험보호기금은 그 재량으로 도산절차 중에 있는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 인수하거나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¹⁹⁾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보호기금의 지급업무는 보험회사가 청산명령(Liquidation Order)을 받음으로써 개시되며, 청산명령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은 해지(Cancel)되지만, 법정 보호한도 내에서 생명보험, 장애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 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효력을 유지함²⁰⁾

- **(장기계약)** 생명·연금·질병 보험 등은 장래 보장을 위한 장기 약정인데,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건강 악화나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유사

15) 조정래·박진표(2004)

16)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및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17) 현재 미국 50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손해보험만), 워싱턴 DC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두고 있음

18) 도산절차 중 계약이전 권한에 관해서는 Insurance Receivership Model Act §302C, §402A, 및 §504 A(5)를 참조함

19)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Section 8A 및 8B

20) Insurance Receivership Model Act § 502D

한 조건으로 다른 계약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생명보험보호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한 보증, 인수, 재보험,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보험보장을 제공해야 함
-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관재인(Receiver)과 보호기금은 통상 긴밀한 협조하에 부실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보증, 인수 또는 재보험할 다른 보험회사를 모색함²¹⁾
- **(보호 제외)** 생명보험보호기금은 보험약관상 지수나 다른 외부지표(External Reference)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Interest Rate) 등은 보장하지 않음²²⁾
-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계약에 대한 취급과 동등한 방식으로 이자의 상승을 제한하기 위함임

나) 영국

- 영국의 경우 부실 보험회사의 처리는 법원 주도의 도산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 금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에서 금융회사의 도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계약이전)** 부실 보험회사의 청산인(Liquidator)은 장기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되도록 이를 계속 운영할 의무가 있음²³⁾
- 처리방식 중 하나로 수정된 관리절차(Administration)에 따라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가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파산 시)** 보험회사 파산의 경우(In Default), FSCS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험에 관하여 계약이전 내지 대체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²⁴⁾

21) NAIC(2018)

22)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Section 3B2(c)

23) FSMA §376(2)

24) FSMA §216, PRA Rule §4

- ① 해당 보험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고, ② 보험계약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며(Reasonably Practicable), ③ 해당 방안이 FSCS의 제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 총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고, 보험계약의 계속성 확보가 보험금 대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자에 대한 이익이) 초과비용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조건변경 없이 100% 보장하나,²⁵⁾ 처리사의 서면의견에 따라 보험계약상 급부가 과도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조건변경이 가능함²⁶⁾
- **(재무곤란 시)** 보험회사 재무곤란의 경우(In Financial Difficulty), FSCS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에 관하여 계약이전, 사업계속을 위한 지원 내지 대체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① 해당 보험회사가 재무곤란 상태에 있고, ② 해당 방안이 FSCS의 제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 총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고, 보험계약의 계속성 확보가 보험금 대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자에 대한 이익이) 초과비용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FSCS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변경이 가능함²⁷⁾
 -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중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망·장애급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를 보장하고, 기타는 90%를 보장함
- 따라서 영국은 우리나라 예보법과 달리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부실 보험회사 처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외에 '총 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함
 - **(계약자 이익)** 장기보험의 경우 단순한 대지급만으로는 대체보험을 찾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보험의 경우에도 청산 당시 보험회사의 책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전한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시키는 것이

25) PRA Rule, Policyholder Protection Part §4.3

26) PRA Rule §20.7

27) PRA Rule §5.1(2)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임²⁸⁾

다) 일본

- 일본의 경우 통상 부실 은행 등 금융기관 처리는 금융재생법(金融機能の再生のための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을 따르나,²⁹⁾ 보험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처리됨³⁰⁾

- (금융재생법) 금융재생법은 ‘최소비용의 원칙’, 즉 금융기관의 도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문화³¹⁾하고 있음
- (보험업법) 반면 보험업법은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계약자보호기구(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대지급을 배제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내지 계약인수(직접 또는 자회사) 등만을 업무로 함

- 일본 보험업법이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부실 보험회사 도산 시에도 계약효력의 유지를 중시하여 대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금과 다른 보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됨

28) FSMA §216에 대한 주석 및 §217에 대한 주석을 참고함

29) 금융재생법 제2조 제2항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일본 예금보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예금보험법상 금융기관은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보험회사는 제외됨

30) 행정당국 주도형 절차인 보험업법 외에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부 주도형 절차인 갱생특례법에 의거한 처리도 가능한. 최근 갱생특례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보험계약의 권리삭감(책임준비금 삭감, 예정이율의 변경, 높은 예정이율 계약에 대한 추가적 삭감) 또는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등에서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음(정봉은 2017)

31) 금융재생법상 금융기관 파탄처리 원칙(동법 제3조)

1. 파산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등의 재무내용, 기타 경영상황을 공개한다.
2. 경영의 건전성의 확보가 곤란한 금융기관을 존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파산한 금융기관의 주주 및 경영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5.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금융기관의 파탄처리와 관련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예금상품)** 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자는 예금반환채권자로서 도산 시 은행이 예금채권을 반환하면 그 관계가 소멸되므로 최소비용 원칙의 적용이 가능함
- **(보험상품)** 반면 보험의 경우, 파산절차 개시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면 보험계약자는 해약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나 위험증가에 따른 가입거절의 위험이 있음³²⁾

■ 일본의 경우 계약이전 시 조건변경이 가능하므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예정이율 변경 및 책임준비금 삭감 등으로 자금지원 규모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정함

- **(도산제도)** 보험회사의 도산제도는 크게 보험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형(行政型)과 갱생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법형(司法型)으로 나뉨
- **(보험업법)** 일본 보험업법상 계약이전의 경우 조건변경이 가능함(일본 보험업법 제250조)³³⁾
 - 조건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이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계약 관련 채권액이 이전 대상 계약의 총 채권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할 수 없음(동법 제251조 제2항, 제137조 제3항)
 - 보험계약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의 조건으로 이전받는 회사가 승계함(동법 제252조)
- **(갱생특례법)** 갱생특례법에 따른 도산처리 시에는 법원 주도하에 보험계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조정할 수 있음

32) 정봉은(2017)

33) 원칙적으로 부실 금융기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제294조 제1항), 피관리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제249조의2 제1항)

- 실제로 일본은 1997~2001년 생명보험회사 도산처리 과정에서 예정이율을 우선변경하고 부족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삭감함
- **(예정이율 인하)**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감소함
 - 예정이율을 인하할 경우 도산처리 시점의 책임준비금은 증가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소시켜 책임준비금을 예정이율 인하 전 수준으로 변경함
 - **(책임준비금 삭감)** 책임준비금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고, 필요 시 고금리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삭감함
 - 2006년 4월 고예정이율계약 초과 삭감제도를 신설하여 과거 5년간 예정이율이 기준이율보다 높을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삭감할 수 있게 됨³⁴⁾
 - **(회사별 차이)** 예정이율 인하와 책임준비금 삭감 정도는 부실 보험회사별로 달리 적용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상황, 연금 등 고이율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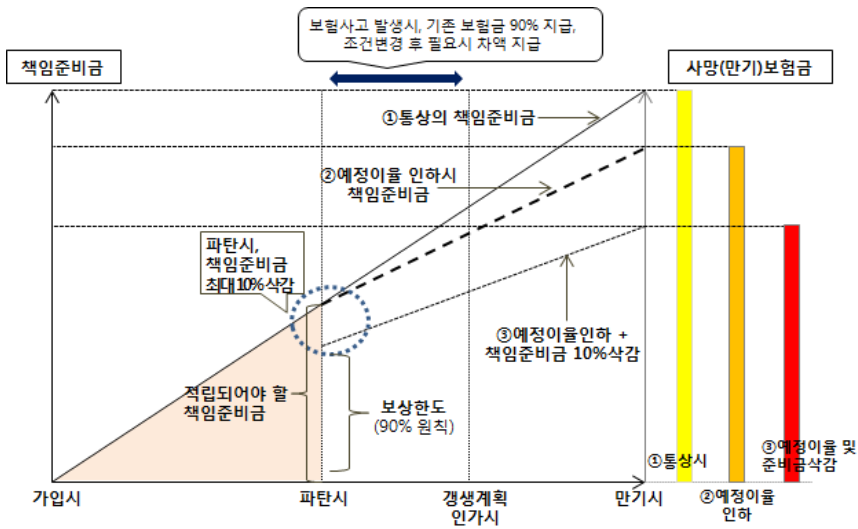
〈표 II-2〉 일본의 조건변경 사례(1997~2001년)

파산한 생명보험회사	예정이율 인하	책임준비금 삭감률	파산 시기
닛산생명보험 상호회사	N/A → 2.75%	0%	1997년 4월
동방생명보험 상호회사	4.79% → 1.50%	10%	1999년 6월
제백생명보험 상호회사	4.46% → 1.00%	10%	2000년 5월
타이쇼생명보험 주식회사	4.05% → 1.00%	10%	2000년 8월
치요다생명보험 상호회사	3.70% → 1.50%	10%	2000년 10월
협업생명보험 주식회사	4.00% → 1.75%	8%	2000년 10월
동경생명보험 주식회사	4.20% → 2.60%	0%	2001년 3월

자료: 보험연구원(2019)

34) (과거 5년간 매해 예정이율-기준이율)의 합계÷2

〈그림 II-3〉 일본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 구조



자료: 보험연구원(2019)

라) 캐나다

- 캐나다는 청산 및 구조조정법(WURA: Winding-Up and Restructuring Act)에서 법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절차를 규정함
 - **(금융당국 권한)** 보험회사법(ICA: Insurance Companies Act)은 부실이 임박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융당국(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이 WURA에 따른 청산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부실 확대를 막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³⁵⁾
 - **(보호기구)** 보험계약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로 생명보험은 ICA에 의해 Assuris가, 손해보험은 캐나다비영리회사법(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에 의해 PACICC가 각각 설립됨
 - **(보호기구 권한)** 계약이전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WURA에 따라 청산절차에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나, 보험계약자보호기구(Assuris 또는 PACICC)는 법원을

35) ICA 679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권한을 행사함

- 다만,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청산절차 참여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바 이를 WURA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함³⁶⁾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약이전, 런오프(Run-off)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대출·주식취득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 **(원칙)** Assuris는 자금지원(Financial Commitment) 방식 결정 시 'Assuris의 목적' 및 '파산으로 인한 Assuris의 총 예상비용'을 고려하여 '단독 재량'으로 결정함
- Assuris는 우리나라 예보법과 같은 의미의 '최소비용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통상 청·파산 및 보험금 대지급을 통해 부실을 정리함

마)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금산법과 유사하게 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통합 특별법(MAS Act)을 가짐

- **(적용대상)** 정리제도 적용대상은 예금수취회사(은행 등),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시장인프라, 신탁회사 등이 있음
- **(정리방식)** 정리방식으로 민간, 가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 등으로의 사업 및 지분 이전, 자본 확충,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등이 활용되고, 보험회사의 경우 런오프(Run-off)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함
- 보험회사를 런오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싱가포르 예금보험기구(SDIC: Singapor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보험회사를 인수, 운영하여 기존 보험계약은 계약 만기까지 유지되고 신규 계약 가입 및 갱신은 중단됨

■ 보험회사 정리를 위한 재원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36) Sarra(2019)

전 또는 런오프 방식 적용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정리재원)** 금융회사 정리재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은행, 보험회사 정리재원으로 각각 기존의 예금보험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SDIC는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합보호기구로 예금보험기금,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금,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함

바) 소결

- 주요 선진국은 보험회사 부실 시 보험계약의 효력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계약자 보호)** 보험상품은 장래의 불확정한 사고에 대비하는 위험보장성, 계약해지 시 같은 조건으로 다른 계약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으로 예금과 달리 계약소멸 및 해약환급금 대지급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계약 유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보험금의 대지급을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두고 계약이전 등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처리방안에 대해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손실분담)** 한편 이들 국가들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전 시 보호한도 상한이나 공동부담비율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4) 개선방안

-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이전 또는 런오프)**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이전 또는 런오프 방식의 정리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험계약 조건변경)** 계약이전 또는 런오프 방식 적용 시 예정이율, 책임준비금, 보험가입금액 등을 인하 또는 삭감하는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해야 함

■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① 보험회사 정리절차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유지를 원칙으로 하거나 ② 정리방안 결정 시 최소비용원칙에 예외(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고려)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금산법 개정)**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정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금산법에 계약효력 유지 필요성이 큰 보험의 범위를 정하여 계약효력 유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보법상에서도 최소비용원칙 예외 적용의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임
 - 보험회사 정리절차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방안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예보법 개정)** 금산법에 대한 개정 없이 계약효력 유지 필요성이 큰 보험에 관하여 예보법상 최소비용원칙을 제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임
 -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라는 예보법 제38조의4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이전 또는 런오프 방식 적용 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하여 보호한도 상한이나 공동부담비율 등을 통한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³⁷⁾

- **(설정기준)** 조건변경의 설정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을 고려해볼 수 있음

37)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전제로 계약이전 또는 런오프 방식 적용에 따른 보험계약 조건변경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I>을 참조하길 바람

- **(적용방식)** 보호한도 상한은 일정 금액까지 100% 보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하고, 공동부담비율은 보호한도의 상한은 없지만 보험가입금액이나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만 보장하는 방식을 의미함
- **(적용절차)** 금산법상 계약이전 시 조건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권리를 행정처분으로 감축하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건변경과 관련된 해외사례에서는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거나(미국·영국·캐나다), 보험계약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함(일본)
 - ①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② 조건변경에 반대하는 보험계약자의 잔류를 허용하는 방안, ③ 법령에서 조건변경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보험계약 조건변경은 경우에 따라 선해지유인(First Mover Advantage)을 발생시키므로 해지(조기종료권) 일시정지도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높은 거래비용)** 보험계약은 해지 수수료, 재가입 시 인수거절 및 보험료 상승 가능성 등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대량해지 가능성은 낮음
 - **(부분보호)** 하지만 보험계약 조건변경으로 인한 부분보호는 보험계약자의 손실 분담 정도에 따라 선해지유인(First Mover Advantage)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해지 일시정지)** 따라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해지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정리당국의 해지 일시정지 권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개별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반영

1) 문제점

- 시스템적 중요도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정리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됨
 - (시스템 위험)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의 정리방식 결정에는 예외적으로 최소비용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금융당국의 정리권한 사용이 금융회사별로 비례적이지 않아 ① 시스템 위기 발생 시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고, ② 시스템 위기가 아닌 부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규율을 훼손시킬 수 있음
 - (비례성) 시스템적 중요도와 상관없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시스템 위기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과소한 반면, 시스템 위기가 아닌 부실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과대한 것으로 평가됨
 - (높은 시스템적 중요도) 금융지주회사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부실 시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³⁸⁾
 -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과 연관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예방조치 및 정리권한(Resolution Power)을 가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금융지주회사 자체가 부실화되거나 부보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예보로부터 지원이 불가능하고, 금융안정기금의 유가증권 매입을 통해서만 자금 지원이 가능함
 - (낮은 시스템적 중요도) 행정부 주도의 정리절차를 위기가 아닌 평상시 또는 시스템 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회사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위험 추구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³⁹⁾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제한하며

38) 이재연·오승곤(2014)

39) 강동수(2006)

정치적 고려로 인한 일관성 저하로 시장규율을 훼손시킬 수 있음

- 금융당국의 재량권은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투명성을 저하시켜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의 경우,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편익보다 정책의 투명성 저하로 인한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단기간 내에 다수인의 권리변경 또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실 금융회사 처리의 특성상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각종 쟁송으로 부실 처리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자금지원으로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

2) 국제적 논의: FSB의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요소(KA)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 위험을 유발하는 대형, 복합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정리제도(Resolution Regime)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불확실성 확산)** Lehman Brothers 등 금융회사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사법부 주도로 도산처리됨에 따라 부실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결국 실물경제 침체를 불러옴
 - 행정당국 주도의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갖춘 국가의 경우에도 기존 제도가 예금보호 관련 부보금융회사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복합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체계가 아님
- **(도덕적 해이)** Bear Stearns 및 AIG 등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금융이 실시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 2014년 FSB는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요소(KA: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를 발표함

- **(구성요소)** KA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의 효과적인 정리제도에 대한 핵심요소(총 12개)를 본국(Home)뿐만 아니라 진출국(Host) 관점에서 제시함⁴⁰⁾
 - 적용범위(Scope):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인프라를 대상으로 함
 - 정리당국(Resolution Authority): 정리제도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 정리권한을 행사하도록 책임이 부여된 정리당국을 지정해야 함
 - 정리권한(Resolution Powers): 정리당국은 시기적절하고 조기에 정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영진 교체·자산 및 부채 이전·가교금융회사 설립·이해관계자 손실분담(Bail-in) 등 권한 및 수단을 보유해야 함
 - 상계·차액·담보제공·고객자산분리(Set-off, Netting, Collateralisation, Segregation of Client Assets): 상계·차액·담보제공·고객자산분리 등에 대한 법적 체계가 금융위기나 금융회사 정리 시 명확하고 투명하며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정리 조치의 효과적인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 안전장치(Safeguards): 정리권한은 채권자 우선순위 및 파산절차와 동일수준의 보상원칙 등을 존중하면서 행사되어야 함
 - 정리재원조달(Funding of Firms in Resolution): 정리재원 사용에 따른 보전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국경 간 협력 법적체계(Legal Framework Condition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해외 정리당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함
 -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의 본국과

40) 임형석·고영호(2015)

진출국 정리당국은 국경 간 금융위기 관리 및 G-SIFI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위기관리그룹을 구성해야 함

- 국경 간 협력 협약(Institution-specific Cross-border Cooperation Agreements): 모든 G-SIFI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정리당국 간 협력 협약을 체결해야 함
- 정리가능성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s): 정리당국은 최소한 G-SIFI에 대해 정리전략에 따른 정리 실행 가능성, 금융회사 정리가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리가능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SIFI는 위기상황에서 자체 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정리당국은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제금융 없이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함
- 정보 접근 및 공유(Access to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감독당국, 중앙은행, 정리당국 및 재무부 간 정보교환에 어떠한 법적, 규제적, 정책적 장애물이 없어야 함

■ FSB의 KA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평가하면 비례성 원칙이 미흡하여 평상시에는 과도한 규제가 위기 시에는 과소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정리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금융회사에게 동일한 정리절차를 적용함
 - 금융위는 2016년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선정하여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정리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2019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 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 요구, 금융위에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권한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음
- (정리권한) 금융회사 핵심서비스 연속성 유지, 계약조기종료권 행사의 일시정

지, 이해관계자 손실분담(Bail-in) 등에 대한 정리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정리재원 조달)** 공적재원의 경우, 채권자나 금융시스템 전체로부터 재원을 보전하는 규정이 없고, 민간재원의 경우, 부보기관에 대해 재원을 추가적으로 회수하는 규정이 없으며, 비부보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재원을 회수하는 규정이 없음
- **(정리가능성평가 및 회생·정리계획)**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가능성평가 및 회생·정리계획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3) 해외사례: 주요국의 금융회사 정리제도⁴¹⁾

가) 적용대상

- ①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금융시장인프라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②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리제도를 가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
- **(정리대상)** 정리대상 측면에서 은행(24개국), 보험회사(22개국), 금융투자회사(13개국), 금융시장인프라(8개국) 순으로 정리제도를 갖춘
- **(차별화)** 반면,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리권한을 가지는 경우는 은행(8개국), 금융시장인프라(4개국), 금융투자회사(3개국), 보험회사(2개국) 순임
- **(광범위·차별화)** 2013년 기준 모든 정리 대상에 대해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리권한을 가진 나라는 2개국(미국, 네덜란드)임
- **(국내)**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는 정리제도를 보유함

41) FSB 회원국(24개국)을 대상으로 함

〈표 II-3〉 국가별 정리체계 비교: 적용대상(2013년 4월 기준)

국가명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금융시장인프라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권한 구분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권한 구분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권한 구분		시스템 중요성에 따라 권한 구분
미국	○	○	○	○	○	○	○	○
캐나다	○	×	○	×	×	-	×	-
멕시코	○	×	○	×	×	-	×	-
브라질	○	×	○	×	○	×	×	-
아르헨티나	○	×	○	×	×	-	×	-
한국	○	×	○	×	○	×	×	-
일본	○	○	○	×	×	-	×	-
호주	○	×	○	×	×	-	×	-
중국	○	×	○	×	○	×	×	-
홍콩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인도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러시아	○	○	○	×	○	×	○	×
영국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스위스	○	○	○	×	○	×	○	×
사우디 아라비아	○	×	○	×	○	×	×	-
터키	○	×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	-	×	-

주: G7 국가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
 자료: FSB(2013)

나) 적용조건

-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데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해외 주요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① 부실, 파산 또는 도산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고, ②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③ 권한 사용이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경우 모두를 만족했을 때 정리권한을 사용함
 - 일본의 경우, ① 부실, 파산 또는 도산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고, ②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모두를 만족했을 때 정리권한을 사용함
 - **(국내)** 반면, 우리나라는 부실, 파산 또는 도산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리권한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금융회사 부실에 대해 정리권한을 행사함
 - 한편, 싱가포르와 터키는 ① 부실, 파산 또는 도산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고, ②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③ 권한 사용이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정리권한을 사용함

〈표 II-4〉 국가별 정리체계 비교: 정리권한 사용조건(2016년 1월 기준)

국가명	조건의 유형			권한 사용 조건
	부실, 파산 또는 도산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음	공공의 이익	권한 사용이 필수적이고 비례적	
미	DFA ²⁾	○	○	모두 만족
국	FDIA ³⁾	○		모두 만족
캐나다	○	○	○	모두 만족
멕시코	○	-	-	-
브라질	○	-	-	-
아르헨티나	○	-	-	-
한국	○	-	-	-
일본	○	○	-	모두 만족
호주	○	○	-	하나라도 만족
중국	○	○	-	모두 만족
홍콩	○	○	-	하나라도 만족
싱가포르	○	○	○	하나라도 만족
인도	○	○	-	하나라도 만족
인도네시아	○	-	-	-
러시아	○	○	-	모두 만족
영국	○	○	○	모두 만족
프랑스	○	○	○	모두 만족
독일	○	○	○	모두 만족
이탈리아	○	○	○	모두 만족
스페인	○	○	○	모두 만족
네덜란드	○	○	○	모두 만족
스위스	○	-	○	모두 만족
사우디 아라비아	○	-	-	-
터키	○	○	○	하나라도 만족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주: 1) G7 국가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

2) DFA: Dodd-Frank Act

3) FDIA: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자료: FSB(2016b)

다) 은행에 대한 정리권한

-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은행 정리 시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정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부채 상각 또는 전환 권한,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권한,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회사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 요구, 정리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사 구조 및 운영 변경 요구 권한 등을 보유함
 - 상기의 정리권한 중 캐나다는 정리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사 구조 및 운영 변경 요구 권한이 없고, 일본은 부채 상각 또는 전환 권한이 없음
 -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의 정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임
 - 2019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 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 요구, 금융위에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권한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음

〈표 II-5〉 국가별 정리체계 비교: 은행 정리권한(2019년 9월 기준)

국가명	자산, 부채 이전 또는 매각 권한	임시 가교 기관 설립 권한	부채 상각 또는 전환 권한 (Bail-in)	조기 종결권의 일시정지 권한	지주회사 관련 정리권한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정리 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사 구조 및 운영 변경 요구 권한
미국	○	○	○	○	○	○	○	○
캐나다	○	○	○	○	- ³⁾	○	○	×
멕시코	○	○	×	○	×	○	○	△ ²⁾
브라질	○	×	×	×	○	○	○	△ ¹⁾²⁾
아르헨티나	○	×	×	○	×	○	×	△ ²⁾
한국	○	○	×	×	○	×	×	△ ²⁾
일본	○	○	×	○	○	○	○	○
호주	○	○	×	○	○	○	×	○
중국	○	×	×	×	×	○	○	△ ²⁾
홍콩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인도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²⁾
러시아	○	×	×	×	×	○	○	×
영국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스위스	○	○	○	○	○	○	○	○
사우디 아라비아	×	×	×	×	- ¹⁾³⁾	×	×	△ ¹⁾²⁾
터키	○	×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¹⁾	×	×	×	×	○ ¹⁾	×	×

주: 1) 제도 개선 진행 중임

2) 감독당국이 감독대상기관에게 사업조직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목적 및 상황이 다름

3) 은행 지주회사가 존재하지 않음

4) G7 국가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 ○: 기실행, △: 부분실행, ×: 미실행

자료: FSB(2019)

라) 보험회사에 대한 정리권한

■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정리당국(행정부) 존재 여부는 국가별로 다양하고,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보험회사 정리 시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정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정리당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정리당국(행정부)이 존재하지만, 캐나다, 영국, 독일에서는 정리당국(행정부)이 존재하지 않음
- **(해외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조건부)은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권한, 보험부채 구조조정, 제한 또는 상각 권한을 보유함
 - 상기의 정리권한 중 영국은 보험부채 구조조정, 제한 또는 상각 권한을 가지고, 프랑스는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권한을 가짐
-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 정리당국(행정부)이 존재하지만, 상기의 정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재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캐나다, 이탈리아도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권한, 보험부채 구조조정, 제한 또는 상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표 II-6〉 국가별 보험회사 정리체계 비교(2019년 9월 기준)

국가명	정리당국 (행정부) 존재	이전 실행 권한 (포트 폴리오 이전 포함)	임시 가교기관 설립 권한	기존 보험계약 관리 및 의무이행 권한(Run- off 포함)	조기 종결권의 일시정지 권한	보험부채 구조조정, 제한 또는 상각 권한	민간 조달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또는 정리기금 존재
미국	○	○	○	○	○	○	○
캐나다	×	○	×	○	×	×	○
멕시코	○	○	×	○	×	○	○
브라질	○	×	×	×	○	×	×
아르헨티나	○	×	×	○	×	×	×
한국	○	○	○	○	×	×	○
일본	○	○	○	○	○	○	○
호주	○	○	○	○	○	×	○
중국	×	×	×	○	×	×	○
홍콩	○	○	○	○	○	○	○
싱가포르	○	○	○	○	○	×	○
인도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러시아	○	○	×	○	×	×	○
영국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²⁾	△ ²⁾	○
이탈리아	○	×	×	○	×	×	○
스페인	×	×	×	○	×	×	○
네덜란드	○	○	○	○	○	○	○
스위스	○	△ ¹⁾³⁾	×	○	×	×	○
사우디 아라비아	×	×	×	×	×	×	×
터키	○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	×	×

주: 1) 제도 개선 진행 중임

2) 보험회사가 더 이상 부채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도산절차 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권한이 행사 가능함

3) 원수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만 이전 가능함

4) G7 국가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 ○: 기실행, △: 부분실행, ×: 미실행

자료: FSB(2019)

마) 소결

- 주요 선진국의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례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평가됨
-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정리권한을 보유함
 - **(대마불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청산이 아닌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함
 - **(비례성)** 정리권한 행사에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 자체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권한 사용이 필수적이고 비례적인지 여부를 모두 고려함
 - **(정리권한)** 금융회사 핵심서비스 연속성 유지, 계약 조기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등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FSB의 KA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리권한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리의 속도를 중요시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정리의 속도보다는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리 작업을 진행함
 - **(은행·보험회사 비교)** 은행의 도산처리절차는 대부분 국가에서 행정당국 주도형이 많지만,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절차는 사법부 주도형도 상당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다만,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행정당국 주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함

4) 개선방안

-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위기 발생 시 또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현재와 같은 행정부 중심의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적용하되, 현재보다 폭넓고 강도 높은 정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리대상 확대)** 정리대상 금융회사를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복합금융회사도 포함시켜야 함
 - **(정리권한 강화)**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권한을 금융회사 핵심서비스 연속성 유지, 계약 조기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이해관계자 간 평등을 기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하는 방식을 택하여 시장 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손실흡수)** 이해관계자 간 공평성을 기초로 한 부채 조정을 통해 손실을 흡수하여 이해관계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시장 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은행권역)** 다만, 은행 등 실물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권역의 경우, 현행 수준의 정리제도를 유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법제화,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 위험 평가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등에서 거시건전성 점검 및 정보 공유 등을 협의하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구속력이 부족함
 - **(비은행권역)** 현재 은행권역만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선정을 비은행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 동향 및 국내 분석 등을 면밀히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은행지주회사,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함
- 2019년 6월 기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 신한, 하나, KB, 농협, 우리가 지정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이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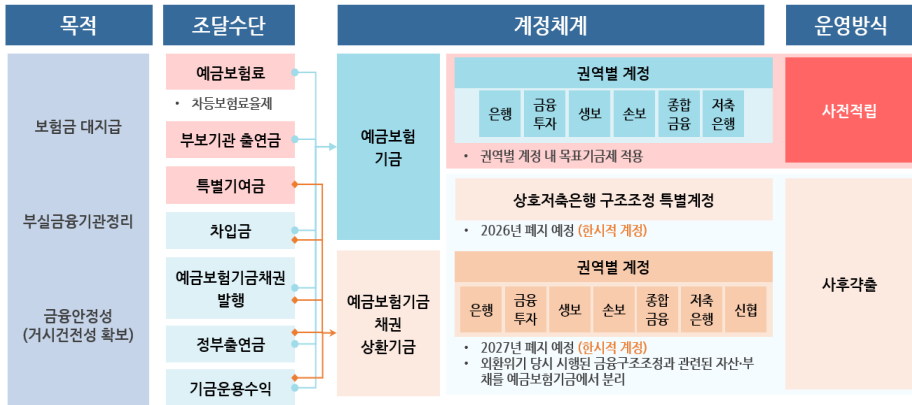
2.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개선

가. 현황

-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는 ① 모든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을 채택하고, ② 과거 부실을 상환하는 기금과 미래 부실에 대비하는 기금을 분리·운영하며, ③ 특정 권역 계정(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함
- 1998년 4월부터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해 오던 보호기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의 금융권역에 대한 예금보호업무를 통합하여 주관하게 함
 - **(기금 통합)** 예금보험기금(1996), 보험보증기금(1984), 신용관리기금(1983), 신용협동조합중앙회안전기금(1984) 등으로 분리·운영해 온 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함
- 2003년 과거 부실을 상환하는 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미래 부실에 대비하는 기금(新예금보험기금)을 분리함
 - **(공적자금 상환대책)** 2002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갈된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복원하고 예금보험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현세대(25년 이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

- **(상환기금 설치)** 동 대책을 바탕으로 2003년 이전까지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전함
 - 은행·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금융투자·종합금융·생명보험·손해보험의 7개 권역별 계정으로 구분하고,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특별기여금 수입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상환기금 채권 발행 그리고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됨
 - **(新예금보험기금 출범)** 200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新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함
 -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종합금융·생명보험·손해보험의 6개 권역별 계정으로 구분됨
 - 보험료 수입을 중심으로 출연금, 차입금 등을 통해 조성됨
-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함
- **(특별계정 설치)**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관련 자산·부채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재원조달)** 특별계정의 주요 재원은 저축은행의 보험료와 다른 5개 권역 계정의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임

〈그림 II-4〉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현황



나.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

1) 문제점

- 사업모형이 다른 권역들에는 계정 구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역 중심의 기금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유사한 사업모형을 지닌 권역들에 대해서는 계정을 따로 설정함
 - **(동일한 설계·운영)** 금융권역별 소비자 특성과 상관없이 보호범위, 보호한도, 자금조달 등 기금의 세부 구성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사 상품)** 유사한 예금수취 사업모형을 지닌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정을 따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는 금융권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은행권역 중심으로 기금이 설계되고 운영됨으로써 보험권역이나 금융투자권역의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우선순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목적의 우선순위 없이 계정별 기금이 동일하게 설계되고 운영됨

- **(다른 관점)** 소비자의 니즈와 취약요인에서 보험상품 및 투자상품은 예금상품과 다르므로 권역별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달리하여 기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국제적 논의: IADI의 통합보호제도 운영 시 고려사항⁴²⁾

■ 통합보호제도(Integrated Protection Schemes)의 장점은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금융소비자 인지도(Consumer Awareness), 정책조정(Coordination of Policy), 위기방지 및 대응능력(Crisis Prevention and Response Capability),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임

- **(운영 효율성)** 하나의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금융권역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다수의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운영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
 - 업무 담당자들은 통합기구 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각 권역에 대한 실무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음
- **(소비자 인지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용이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금융회사 파산 시 소비자가 하나의 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면, 여러 보장 기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 **(정책조정)** 단일 감독기관 및 보호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협조나 조정이 용이함
 - 다수의 감독자 및 보호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 전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의 정책 결정 대신 영역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위기방지 및 대응능력)** 부보금융회사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금융회사 파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보다 적합함
 - 특히, 금융그룹이 파산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능력은 권역별 보호기구보다

42) IADI(2015)

통합보호기구가 상대적으로 우월함

- **(비용 효율성)**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중복된 기능 및 인프라 제거를 통해 비용 감소를 유도함

■ 반면, 통합운영에 따른 단점으로 지배구조, 권역 간 형평성,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처리 속도 등이 있음

- **(지배구조)** 다양한 권역 출신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역 간 형평성)** 권역 간 상호보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권역이 지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예: 한국)
- **(부실 처리속도)** 보호제도를 권역별로 분리, 운영할 경우 금융회사 파산 시 잠재구매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용이하여 파산 금융회사의 자산을 보다 신속하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것이 가능함(예: 캐나다 퀘벡)
- **(산업 효율성)** 통합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 관점에 너무 치중하여 산업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권역별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권역 간 형평성만 강조할 경우, 과도하거나 잘못된 형태의 소비자 보호로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통합보호제도는 보호제도를 권역별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도입 목적은 유사하지만, 제도 설계가 훨씬 복잡하고 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함

- **(운영 목적)** 통합보호제도는 보호제도를 권역별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파산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여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짐
- **(고려사항)** 하지만 보호제도를 권역별로 분리·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개별 권역의 특성(Sector Specifications)과 권역별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수준의 형평성(Equity in the Level of Protection)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통합보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 독립성,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안정적인 기금조달 계획, 정리당국으로서 보호기구의 역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영 독립성)**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해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감독당국 또는 정부기관에서 맡을 경우, 규제 유예(Regulatory Forbearance)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감독 권한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보호기구가 맡아야 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권한 및 각 금융권역에 속한 부보금융회사의 사업 속성에 적합하게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함
- **(권역별 특성 반영)**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설정 시 각 금융권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 보호한도는 대다수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높고, 시장규율 및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만큼 충분히 낮아야 하며, 보호되는 고객의 수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금액도 고려해야 함
 - 보호범위는 금융권역 간 재량적이지 않아야 하나, 적합성(Eligibility)을 판단하기 쉬운 예금상품과 달리 투자상품 및 보험상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기금조달)** 긴급상황에 대한 보조재원(Back-up Funding)을 포함한 안정적인 기금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보험료 책정 시 책정기준, 요율, 부보예금, 목표기금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고, 금융권역별 기금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권역의 기금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권역 간 상호보조 및 차입을 고려하지 않음

- 대신 정부 차입 또는 민간 차입 및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보험료 등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보조재원을 마련함
- **(통합기구 역할)**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통합보호기구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정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체계, 금융안전망 참여기구 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보호기구의 권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해외사례

가) 통합보호제도

① 현황

- 예금자보호제도(DIS: Deposit Insurance System), 투자자보호제도(ICS: Investor Compensation Scheme), 보험계약자보호제도(IGS: Insurance Guarantee Scheme)를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영국 2개국임
- **(DIS·ICS 통합)** 통합보호제도의 가장 많은 유형은 예금자보호제도(DIS)와 투자자보호제도(ICS)를 병행 운영하는 형태임(12개국)
- **(DIS·IGS 통합)** 예금자보호제도(DIS)와 보험계약자보호제도(IGS)를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호주 3개국임

〈표 II-7〉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DIS+ICS)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 (DIS+IGS)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 (DIS+ICS+IGS)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손해보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퀘벡,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스웨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한국, 영국
12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자료: IADI(2015)

■ 각국 통합보호제도에서 조직운영 방식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됨

- **(정부관할)** 호주, 캐나다 퀘벡, 벨기에, 스웨덴 등은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 또는 기타 정부기관이 통합보호기구를 운영함
 - 호주는 2008년부터 금융감독당국(APRA) 내 FCS(Financial Claims Scheme)를 설립하고 예금자와 손해보험계약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
 - 캐나다 퀘벡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AMF가 예금자보호기금과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함
 - 벨기에는 중앙은행이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
 - 스웨덴은 재무부 산하의 정부기관인 국채관리청(SNDO: Swedish National Debt Office)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함
- **(은행협회)** 독일과 리히텐슈타인 등은 은행협회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업무를 담당함
- **(민간기구)** 그리스, 프랑스 등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통합보호기구를 관리함
- **(별도조직)** 한국,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영국 등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에서 통합보호기구를 운영함

② 국가 간 세부 비교

■ 통합보호제도를 운영하는 17개국 중 12개국이 통합 금융감독체계를 운영 중임

- **(은행 및 증권)**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동일한 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함
- **(은행 및 보험)**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인 BNM(Bank Negara Malaysia)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함
- **(개별감독)** 그리스와 세르비아는 권역별로 서로 다른 감독당국을 보유함

〈표 II-8〉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금융감독체계

통합감독	복합(은행 및 증권)	복합(은행 및 보험)	개별감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퀘벡,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한국,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12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자료: IADI(2015)

-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호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은 전 권역에 대해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임
- (예금자 및 투자자) 예금자 및 투자자보호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한도가 예금자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 캐나다 퀘벡은 예외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한도가 예금자보다 2배 높게 설정됨
 - (보험계약자) 한국을 제외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나라(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에서 보험계약자 보호한도가 예금자 보호한도보다 높게 설정됨
 - 호주와 싱가포르는 손해보험에 대해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90%를 보호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100% 전액보호함
 - 싱가포르는 생명보험에 대한 보호한도(SGD 100,000~500,000)를 예금보호한도(SGD 50,000)의 2~10배로 설정하고 있음

〈표 II-9〉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보호한도

구분	DIS	ICS	IGS(생명보험)	IGS(손해보험)
호주	AUD 1,000,000 (USD 1,038,000)	-	-	한도 無
오스트리아	EUR 100,000 (USD 129,400)	EUR 20,000 (USD 25,900)	-	-
벨기에	EUR 100,000 (USD 129,400)	EUR 20,000 (USD 25,900)	-	-
캐나다 퀘벡	CAD 100,000 (USD 98,000)	CAD 200,000 (USD 196,000)	-	-
덴마크	EUR 100,000 (USD 129,400)	EUR 20,000 (USD 25,900)	-	-
프랑스	EUR 100,000 (USD 129,400)	유가증권, 예탁금별 EUR 70,000 (USD 90,600)	-	-
독일	EUR 100,000 (USD 129,400)	90%, 최대 EUR 20,000 (USD 25,900)	-	-
그리스	EUR 100,000 (USD 129,400)	EUR 30,000 (USD 38,800)	-	-
한국	KRW 50,000,000 (USD 45,000)	KRW 50,000,000 (USD 45,000)	KRW 50,000,000 (USD 45,000)	KRW 50,000,000 (USD 45,000)
리히텐슈타인	CHF 100,000 (USD 110,000)	CHF 30,000 (USD 33,000)	-	-
말레이시아	MYR 250,000 (USD 82,500)	-	최대 MYR 500,000 (USD 165,000)	최대 MYR 500,000 (USD 165,000)
세르비아	EUR 50,000 (USD 64,700)	EUR 20,000 (USD 25,900)	-	-
싱가포르	SGD 50,000 (USD 40,730)	-	SGD 100,000 ~500,000 (USD 81,500 ~407,000)	한도 無
스웨덴	EUR 100,000 (USD 129,400)	SEK 250,000 (USD 38,500)	-	-
영국	GBP 85,000 (USD 129,400)	GBP 50,000 (USD 76,100)	보험금의 90% (한도 無)	보험금의 90% (한도 無)

주: 2011년 말 환율 기준임

자료: IADI(2015)

- 통합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투자자보호제도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경우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함

- **(예금자)**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은 일반적으로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의 예금임

〈표 II-10〉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보호대상

구분	설명
호주	[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해외통화 표시 제외)
오스트리아	[투자] 고객에게 반환될 수 없는 수탁된 금융상품
캐나다 퀘벡	[투자] 시장 중개인이 등록 등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 상품 및 서비스
프랑스	[투자] 금융회사 및 정부 등 소유를 제외한 모든 증권, 증권계좌, 투자자예탁금
독일	[투자]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그리스	[투자] 중개 및 매매 투자 서비스
한국	[투자] 투자자예탁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등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원본보전 금전신탁 등
리히텐슈타인	[투자] 양도성증권, 투자펀드, 단기금융상품, 선물계약, 선도금리계약, 스왑, 옵션
말레이시아	[보험]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부 담보
세르비아	[투자] 투자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상품, 금전계좌
싱가포르	[생명] 전제 [손해] 근재,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 개인 자동차·여행자·재물손해 등
스웨덴	[투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취급한 금융상품 또는 금전
영국	[투자] FSA Handbook에서 규정한 지정 투자 사업(고객 금전 및 자산, 잘못된 투자 자문 및 투자관리에 대한 청구권) [생명] 생명, 연금, 양로보험 [손해] 배상책임, 자동차, 가계, 재물, 전문인배상책임, 여행자 등

자료: IADI(2015)

- 효과적인 통합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재원조달은 필수적인데, 재원조달방식은 크게 사전적립(Ex-ante)과 사후각출(Ex-post)로 나눌 수 있음

- **(사전 대 사후)** 캐나다 퀘벡·독일·한국·말레이시아·세르비아·싱가포르·스웨덴(DIS)은 사전적립방식을, 호주·오스트리아·리히텐슈타인·영국은 사후각출방식을, 프랑스·그리스는 혼합방식을 취하고 있음
- **(차등요율제도)** 말레이시아(DIS, IGS), 독일(ICS), 싱가포르(DIS, IGS), 한국(DIS,

ICS, IGS)은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촉진 및 도덕적 해이 완화를 위해 차등
요율제도(Risk-based Premium System)를 운영함

- **(기금체계)** 한국과 영국을 제외한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들은 각 권역별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간 상호보조 또는 차입을 금지하고 있음
 - 캐나다 퀘벡·독일·그리스·말레이시아·세르비아·싱가포르의 별도 기금, 프랑스는 별도 계정을 운영하고 기금 또는 계정 간 상호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권역별로 분리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 시 상호 차입이 가능함

〈표 II-11〉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구분	조달방식	보험료율		부과기준
호주	사후각출	-		-
오스트리아	사후각출	-		-
리히텐슈타인	사후각출	-		-
영국	사후각출	-		-
캐나다 퀘벡	사전적립	DIS	0.04%	부보예금
		ICS	CAD 100 또는 160	서비스 유형
프랑스	혼합	DIS	EUR 2,535,000,000	부보금융회사 배분
		ICS	EUR 120,000,000	
독일	사전적립	DIS	0.016%	예금
		ICS	1.23%, 2.46%, 3.85%, 7.7% (10% 미만)	수수료 수입
그리스	혼합	DIS	0.3113%	예금
		ICS	0.0758%	고객 자산가치
한국	사전적립	DIS	0.08%(은행), 0.4%(저축은행)	예금 평균잔액
		ICS	0.15%	투자자예탁금 평균잔액
		IGS	0.15%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 평균
말레이시아	사전적립	DIS	0.03 ~ 0.24%	부보예금
		IGS(생명)	0.025 ~ 0.2%	보험부채
		IGS(손해)	0.05 ~ 0.4%	순보험료
세르비아	사전적립	DIS	0.1%(분기)	부보예금
싱가포르	사전적립	DIS	0.02 ~ 0.07%	부보예금
		IGS(생명)	0.028 ~ 0.142%	보험부채
		IGS(손해)	0.106 ~ 0.529%	원수보험료
스웨덴	사전적립	DIS	0.1%	보호대상 예금
	사후각출	ICS	낮은 연간 보험료	-

자료: IADI(2015)

■ 대부분의 통합보호기구에서는 기금 부족에 대비하여 보조 재원조달(Back-up Funding) 수단을 마련함

- **(정부 신용공여)** 호주, 캐나다 퀘벡(DIS), 스웨덴은 정부 또는 금융당국을 통한 긴급 신용공여 수단을 보유함
 - 호주 APRA는 정부로부터 200억 호주달러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 퀘벡(DIS)과 스웨덴의 경우 각각 퀘벡 주정부와 국채관리청(SNDO: Swedish National Debt Office)으로부터 무한 차입이 가능함
- **(은행 대출)** 영국은 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외에 상업은행으로부터 최대 7억 5천만 파운드의 신디케이트대출약정(Syndicated Loan Arrangements)을 맺을 수 있음
- **(정부 차입)** 오스트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정부 차입이 가능함
- **(시장 차입)**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한국, 말레이시아는 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허용됨
- **(추가 보험료)** 프랑스, 그리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추가 보험료 징수가 가능함
- **(미보유)** 반면, 캐나다 퀘벡(ICS), 리히텐슈타인, 세르비아는 긴급 보조 재원조달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

〈표 II-12〉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보조 재원조달

구분	보조 재원조달
호주	정부 특별지원(200억 호주 달러)
오스트리아	시장 차입, 정부 보증
캐나다(퀘벡)	DIS: 정부 무한 차입 ICS: 보조 재원조달 수단 無
프랑스	추가 보험료, 시장 차입
독일	추가 각출, 시장 차입
그리스	추가 보험료, 시장 차입
한국	정부, 중앙은행, 부모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
리히텐슈타인	보조 재원조달 수단 無
말레이시아	정부 차입, 자본시장 조달, 추가 보험료
세르비아	보조 재원조달 수단 無
싱가포르	중앙은행 차입, 추가 보험료
스웨덴	스웨덴 국채관리청(SNDO) 무한 차입
영국	상업은행 신디케이트대출(최대 7억 5천만 파운드), 국가대부기금(Government National Loan Fund) 활용

자료: IADI(2015)

- 통합보호제도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나 역할의 수준에 따라 단순 보험금지급형, 강화된 보험금지급형, 손실최소화형, 위험최소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Pay-box)**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에게 보호예금 지급기능만을 수행하는 형태로, 호주·오스트리아 등 9개국이 이에 해당함
 - **(Pay-box Plus)** 보험금 지급기능 외에 자금지원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단계에서 일정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리히텐슈타인·영국이 이에 해당함
 - **(Loss Minimizer)** 최소비용 정리방식 선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프랑스가 이에 해당함
 - **(Risk Minimizer)** 통합보호기구가 폭넓은 정리권한을 가진 형태로, 한국·말레이시아가 이에 해당함

〈표 II-13〉 통합보호제도 운영국가 비교: 통합보호기구의 역할과 정리당국

구분	통합보호기구 역할	정리당국
호주	Paybox	APRA
오스트리아	Paybox	ADGS
벨기에	Paybox	-
캐나다 퀘벡	Risk Minimizer(DIS), Paybox(ICS)	AMF
덴마크	Paybox	-
프랑스	Loss Minimizer	ACPR
독일	Paybox	Bafin
그리스	Paybox	그리스은행
한국	Risk Minimizer	FSC, KDIC
리히텐슈타인	Paybox Plus	법원
말레이시아	Risk Minimizer	BNM, MDIC
세르비아	Paybox	재무부, 세르비아 국립은행
싱가포르	Paybox	MAS
스웨덴	Paybox	-
영국	Paybox Plus	영란은행(은행의 경우)

자료: IADI(2015)

나) 기금(또는 기구) 통합

① 미국의 은행 및 저축은행 보호기금 간 통합

- 2006년 미국 FDIC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보험기금(BIF: Bank Insurance Fund)과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을 예금보험기금(DIF: Deposit Insurance Fund)으로 통합함
 - (권역 간 형평성) 기금 분리 운영으로 유사한 사업모형 및 위험을 가진 금융회사가 상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 1930년대 대공황 시 은행의 대규모 파산이 발생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기구인 FDIC가 설립됨

- **(은행 파산)** 1924년에서 1934년까지 미국 전체 은행의 약 1/3에 해당하는 8천여 개의 은행이 파산함

■ 1980년대 중반 저축대부조합(S&L: Savings & Loans Association)의 대규모 파산으로 인해 S&L의 보호기구인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가 FDIC에 흡수됨

- **(S&L 특징)** S&L은 주로 예금자로부터 만기 1년 내외의 예금을 수취하여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에 고정금리로 대출하여 금리 위험에 취약하였음
- **(S&L 부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여 S&L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부동산 가격 급락 및 주가 하락으로 S&L의 대규모 파산이 발생함
- **(기구 통합)** S&L의 대규모 부실은 FSLIC의 기금 고갈로 이어졌고, 이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금융기관개혁법(FIRREA: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을 제정하여 FSLIC를 폐쇄하고 기금을 FDIC가 관리하는 SAIF로 이전함

■ 2006년 연방예금보험개혁법(FDIRA: Federal Deposit Insurance Reform Act of 2005)을 제정하여 기금통합 등 기금관리체계를 개선함

- **(권역 간 보험료 차이)** BIF와 SAIF는 기금의 건전성 차이로 인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SAIF 가입 부보금융회사의 불만이 팽배해짐
 - BIF는 목표적립률 초과로 많은 은행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SAIF는 저축대부조합의 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금 관련 지출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됨
- **(기금통합)** SAIF가 BIF의 목표적립수준(1.25%)을 달성하고, 은행 간 합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상업은행과 S&L의 유사성이 커지자 2006년 BIF와 SAIF를 통합함

② 스페인의 예금수취기관 보호기금 간 통합

-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별도 보호기금을 통합하여 단일 예금보험기금을 설립함
- 스페인 저축은행은 2000년대 주택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함
 - **(부동산 대출)** 스페인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2004년 이후 총 대출규모가 상업은행을 능가하게 됨
 - **(저축은행 부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무수익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 3월 카스티야-라만차 저축은행(Caja Castilla-La Mancha)이 스페인 중앙은행(BdE)에 의해 국유화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됨
- 2009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예금보험기금과 별도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함
 - **(자금조달)** FROB의 자본금은 총 90억 유로로 하고 정부보증을 통해 270억 유로까지 외부조달이 가능하며, 재무부장관 승인 시 900억 유로까지 조달이 가능하게 함
 - **(구조조정)** 2009년 FROB는 총 990억 유로의 자금을 조성하고, 저축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유도, 국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실시함
 - **(저축은행 수 감소)** 구조조정의 결과, 2009년 45개였던 저축은행은 2017년 13개로 그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됨
- 스페인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1년 국왕령(Royal Decree-Law 16/2011)을 제정하여 기존에 별도로 운영해오던 상업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의 보호기금을 FGD(Deposit Guarantee Fund for Credit Institutions)로 통합함

- **(기금통합)** 통합된 기금 규모는 약 66억 유로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 은행 정리의 재원으로 사용함

다) 소결

■ 통합보호제도의 기금별 운영 독립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설계 등에서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나라에 해당함

- **(통합)** 통합운영을 채택한 국가(17개국) 가운데 예금자·투자자 통합형이 12개국,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등 모든 권역 통합형은 한국과 영국 2개국임
- **(상호보조)** 권역별 별도 운영이 일반적이고, 기금 간 상호보조나 차입이 금지됨
- 한국과 영국이 예외에 속하나, 영국도 건전성 관련 기금은 상호보조를 금지함
- **(보호한도)**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한국이 유일함

■ 권역별로 운영 중인 기금을 통합하여 전체 기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통합 대상의 권역들이 시장 및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인식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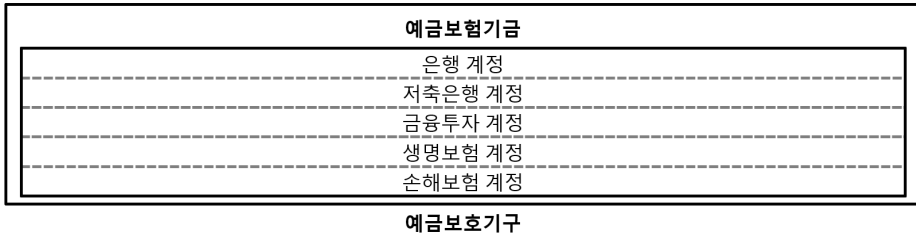
- **(위험분산)** 기금 통합은 부보금융회사의 다양화 및 비집중화 등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통합조건)** 하지만 기금 통합을 위해서는 권역 간 사업모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규제 및 업무영역, 기금 건전성 등이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어야 함

4) 개선방안

■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체계는 권역별 계정으로 구분되나, 기금 간 보호한도, 자금조달 등에서 차이가 없음

〈그림 II-5〉 현행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 통합기구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권역별 기금 분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배구조)** 권역별 기금 분리는 권역별 계정 분리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금 설계 및 운영에 권역별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임
 - **(정책조정·위기대응)** 통합기구의 장점인 정책조정, 위기방지 및 대응능력, 금융 소비자 인지도 등을 유지할 수 있음
 - **(복잡성·경직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금 설계 및 운영의 복잡성이 높고,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이 어려워 운영 경직성이 높아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그림 II-6〉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방안 1: 권역별 기금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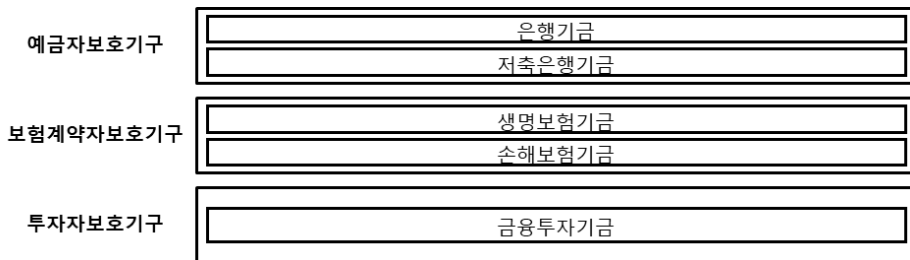


-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으로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권역별로 다원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권역별 기구 분리)** 권역별로 기금의 관리주체를 예금자보호기구,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투자자보호기구로 다원화하는 방안임

- 분리된 기구 내 기금들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규제 및 업무영역, 기금 건전성 등이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어야 함
- **(소비자 보호·유연성)** 권역별 소비자 특성에 맞춰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점이 있고, 기금 설계 및 운영이 단순하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도 쉽기 때문에 유연한 운영이 가능함
- **(위기대응)**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금융회사 파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위기방지 및 대응능력이 통합기구보다 낮음

〈그림 II-7〉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방안 2: 권역별 기구 분리



다. 시장 안정 공동계정 운영

1) 문제점

- 2011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 이후 타 권역 계정 보험료의 45/100를 특별계정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적립액은 -10.3조 원임
- **(저축은행 누적손실)** 저축은행 계정의 손실은 2011년 특별계정 개설 이전 발생한 부실에 대한 계정 간 차입을 통해 정리한 2.6조 원과 2011년 3월 개설 당시 승인된 15조 원을 합한 17.6조 원이고, 그 후 발생한 추가 부실을 더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함

■ 대규모 부실 발생 시 기금의 지속성에 우려가 있지만, 사후적 공동계정 운영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음

- **(시스템 위험 대응)** 현행 기금체제는 특정 권역의 대규모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도덕적 해이)** 저축은행 사태는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적 공동계정은 도덕적 해이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큼

2) 국제적 논의: OECD의 보호제도 재설계 및 추가 시 고려사항⁴³⁾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기존 예금보험 확대 및 비은행·비예금 채무에 대한 한시적 보증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대폭 확대함

- **(금융안전망 확대)** 정부 및 중앙은행은 금융회사, 특히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청구권(Financial Claims)의 최종보증자(Guarantor of Last Resort)로서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자본 및 유동성 최종공급자 역할을 함
- **(금융안전망 축소)** 이후 위기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보증의 상당 부분이 종료됨

■ 최근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추가적인 보증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등 보호(보증)제도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활발함

- **(보험)** 2010년 EC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0년 그리스는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도입함
- **(사적연금)**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적연금의 경우 시장위험(Market Risk)으로부터 연금수급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장상황에 상관없이 최소 수익률을 보증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

43) OECD(2011)

- **(예금보험 도입)** 호주는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예금보험을 상시화(Financial Claims Scheme)하였고, 뉴질랜드는 향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보호한도 상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많은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상향하였고, 상당수는 위기 이후에도 인상된 보호한도를 유지 중임
-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제도를 재조정하거나 신규 도입 시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① 유인(Incentive), ② 경쟁(Competition), ③ 일관성(Consistency), ④ 감당가능성(Affordability) 등을 고려해야 함
- 보호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함
- **(도덕적 해이 완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범위 제한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 및 개입권한 강화 등이 있음
 - **(명시적 보호)** 보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절한 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Explicit) 보호가 암묵적(Implicit) 보호보다 도덕적 해이 완화에 효과적임
 - **(규제차익)** 하지만 금융복합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능이 아닌 금융회사 중심으로 보호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아 규제차익으로 상호보조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위험추구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보호제도는 금융권역 간, 특히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간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정도에 영향을 미침
- **(보호제도 확대)** 최근 수십 년간 OECD 국가들은 예금, 보험계약, 투자상품 등에 대한 보호제도를 상당히 도입하였으나, 금융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예금보험제도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투자자보호제도는 1997년 EU 지침 도입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대

적으로 보험계약자보호제도 도입 국가는 크게 늘지 않음

- **(높은 수준의 감독)** 다만, 보호제도의 혜택을 받는 금융회사는 대개 상대적으로 강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에 미치는 순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감독체계 및 다양한 보호제도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전체 금융안전망 측면에서 조화를 이뤄야 함

- **(금융안전망)** 새로운 보호제도 도입 시 건전성 규제가 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잠재적 부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도 간 일관성)** 보호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호제도의 효과를 파악하여 이들 간 일관성을 고려해야 함
 - 금융회사 부채에 대한 보호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위험추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산에 대한 보증은 특정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대신 위험추구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음

■ 최종보증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보호제도의 공급여력을 고려해야 함

- **(공급여력)** 보호제도는 최종보증자인 정부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를 발생시키고, 위험이 현실화될 때 실제 부채로 전환되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침
 - 금융위기 동안 새로운 보호제도의 한시적 도입 및 기존 보호제도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후 확장된 보호 수준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갈지, 그리고 이러한 암묵적 보호가 위기 재발 시 지속될지 명확하지 않음
- **(정리권한 및 재원)** 금융회사 부실이 국가 재정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시스템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리권한 강화와 함께 정리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보호제도를 재조정하거나 신규 도입 시 명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일관적인

설계가 필요함

- **(명시적 보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보호가 암목적 보호보다 바람직함
- **(제한적 보호)**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볼 때 금융안전망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없음
- **(일관적인 설계)** 일부 보호제도 및 보호제도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3) 해외사례: 주요국의 대규모 부실에 대한 대응력 강화

가) EU의 단일정리기금(SRF) 도입

- 2016년 EU는 기존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EU 수준에서의 정리기금인 단일정리기금(SRF: Single Resolution Fund)을 도입함
- EU는 유로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합경제동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일감독체계, 단일정리체계, 예금보험제도 통일 등 3단계로 구성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구축하고 있음
 - **(단일감독체계)** 단일감독체계(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는 EU 차원의 통일된 은행감독으로 회원국별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단일정리체계)** 단일정리체계(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는 EU 차원의 동일 수준의 은행 부실정리체계 마련으로 부실 발생 시 질서정연한 정리를 목표로 함
 - **(예보제도 통일)** 예금보험제도 통일은 단일 예금보험제도 운영으로 EU 내 예금보험제도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스템 위기상황 시 뱅크런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함
- SRM의 정리재원으로서 단일정리위원회(SRB: Single Resolution Board)가 정리당

국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기금이전)** SRM에 참여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회사 회생·정리지침(BRRD: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에 따라 조성한 국가정리기금을 2016년부터 SRF로 이전함
- **(기금운영)** SRF 조성 기간 동안 회원국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운영되며, 2023년까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일기금으로 통합함
 - 적립목표는 보호예금의 1%로 2023년 말까지 550억 유로 규모로 적립하는 것을 계획함
 - 적립방법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전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액은 회사 규모 및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함
- **(지원방법)** 자금지원 순서로 Bail-in을 선행하고 SRF는 총 자산의 5%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주주 및 채권자가 총 자산의 8%까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함
 - SRF 사용한다 내에서 국가계정을 우선 사용하고, 이후 상호계정과 잔여 계정 적립액을 순차적(잔여국가계정 → 잔여상호계정)으로 활용함
 - SRF 부족 시 사후 보험료 징수, 외부 차입, 회원국 간 Loan Facility Agreements 등을 실행할 수 있음

나) 미국의 정리기금(OLF) 도입

- 미국은 시스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질서정연한 정리권한(OLA: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을 도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재무부의 독립된 기금으로서 정리기금(OLF: Orderly Liquidation Fund)을 설립함
- 미국은 2010년 Dodd-Frank법에 의해 시스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정리제도인 OLA를 도입함
 - **(도입목적)** OLA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즉 시스템 위험을 경감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SIFI)에 대한 정리권한을 강화시킴

- **(적용절차)** OLA는 SIFI 및 관련 자회사를 파산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이 심각히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FDIC가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는 제도임
 - OLA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의 경우 연결기준 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지주회사는 자동적으로 포함되고, 비은행(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금융시장인프라 등)의 경우 금융안정관리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mmittee)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여 FRB의 감독대상으로 지정한 금융회사를 포함함
 - OLA에 따른 파산절차를 적용하려면 FRB와 FDIC가 모두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권고한 후 재무부장관이 대통령과 합의하여 결정함
- **(주요특징)** OLA는 특별 정리체계(Special Resolution Regimes)로 주요특징으로는 신속한 정리절차 진행, 정부 제공 유동성 보강장치 활용, 계약 조기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등 정리권한 강화가 있음

■ OLA에서 관재인으로 선임된 FDIC는 재무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OLF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기금활용)** FDIC는 재무부장관의 채권인수로 조달한 자금을 OLF에 예치하고, 필요 시 인출하여 ① 대상금융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융자 및 채무 매입, ② 대상금융회사와 자회사의 자산 매수 및 손실의 보증, ③ 대상금융회사와 자회사 채무의 인수와 보증, ④ 대상금융회사와 자회사의 비저당자산에 대한 최우선순위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유치권 획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⁴⁴⁾
- **(재원조달)** OLF는 예금보험기금과 달리 사전에 자금을 적립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차입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 **(기금상환)** 국가가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여타 채권자 중 일반적인 파산처리과정에서 받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받은 채권

44) Dodd-Frank Act의 Section 204(d)

자로부터 그 초과분을 반환받으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OLA 대상 금융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징수하여 충당함

- FDIC는 각 금융회사에 대한 분담금 결정 시, 금융시스템에 미친 위험과 해당 금융회사가 OLA로 인해 혜택을 받은 정도, 경제상황,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자금부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

- 영국은 2001년 통합 예금보험기금 체계인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운영한 이후 2008년 공동계정을 통한 계정 간 상호보조제도를 도입하는 기금관리체계 개편을 시행함

- **(도입목적)** 공동계정은 기금의 지속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됨

- 영국은 과거 금융권역별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운영하였으나, 2001년부터 통합 금융소비자보호기금(또는 예금보험기금)인 FSCS를 도입함⁴⁵⁾

- **(권역별 보호기구)** 1982년 예금자보호기구, 1975년 보험계약자보호기구, 1988년 투자자보호기구가 설립되고, 이외에도 주택조합투자자보호기구, 공제회보호기구 등이 설립됨
- **(통합보호기구)** 금융권의 겸업화 등으로 기존 권역별 감독체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보호기구인 FSCS가 설립됨
 - FSMA에 따라 모든 금융권역의 규제·감독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다양한 보호기구를 통합하여 FSCS를 설립함

45) FSA(1997)

- FSCS는 금융권역별로 분리된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고, 서로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금융회사가 각 계정별로 보험료를 적립함
 - **(재원조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후각출이 원칙이나, 일부 기금의 적시투입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상시준비기금(사전적립)을 운영함
 - **(권역별 계정분리)** 권역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기금 적립 및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보험료를 예금, 보험, 투자, 주택금융, 보험중개 등 5개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부과함
 - 기금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모든 금융권역이 함께 부담하되, 개별 금융권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금융권역에서 부담함
 - **(보험료 책정)** 과거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보험료 수준과 향후 1년 이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그룹별로 보험료를 책정함
 - **(기금규모 유지)** 기금 부족 시 예상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추가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고, 초과기금이 발생할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금융회사에 상환함
- 금융시스템 신뢰 유지와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계정을 통한 계정 간 상호보조 도입 등 FSCS의 기금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함⁴⁶⁾
 - **(지속성·공정성)** 금융회사 파산으로 인한 일부 납부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 및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기금의 지속성(Sustainability),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Fairness), 과도한 보험료 변동성(Volatility)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공동계정 도입)** 이에 공동계정 도입을 통해 기금의 지속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완화하면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시스템 위험에 대한 대응을 높이고자 함

46) FSA(2010)

- FSA는 FSCS의 기금관리체계 개선 시 지속성, 공정성 등의 원칙을 제시함
 - **(지속성(Durability) 및 탄력성(Resilience))** 미래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및 강건성을 유지해야 함
 - **(공정성(Fairness))**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금융회사와 유사성이 크거나, 상호이익의 관련성이 밀접한 금융회사들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함
 - **(유사성(Affinity))** 보험료 부과 시 영업활동 유형, 취급 금융상품,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성이 높은 금융회사들을 동일 납부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호이익 관련성(Mutual Financial Interest))** 금융회사 간 높은 연계성으로 상호이익(Mutually Beneficial)이 존재할 경우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 역시 높은 연계성을 지닐 개연성이 있으므로 기금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감당가능성(Affordability))**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는 기금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동시에 개별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함
 - **(변동성(Volatility))** 보험료가 금융회사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수준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야 함
 - **(경제성(Economy) 및 실용성(Practicality))** 기금관리체계는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FSCS의 기금관리체계를 개선하여 FCA 납부그룹을 대상으로 연간 부과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소요 발생 시 공동계정(FCA Retail Pool)을 통하여 상호지원이 가능하게 함
 - **(계정 구분)** FSCS의 기금은 PRA 계정과 FCA 계정으로 구성되고, 두 계정 간 상호지원은 불가함
 - **(PRA 계정)** PRA 계정은 PRA 감독 대상인 ① 예금수취, ② 생명보험·연금 제조, ③ 손해보험 제조 등 3개 소계정으로 구분되고, 소계정 간 상호지원은 불가함

- **(FCA 계정)** FCA 계정은 감독 및 규율 대상에 따라 ① FCA Provider Contribution Class, ② FCA Funding Class 등 2개 중계정(권역별 및 행위별)으로 구분됨
 - FCA Provider Contribution Class는 ① 예금수취, ② 생명보험·연금 제조, ③ 손해보험 제조, ④ 주택금융 제조 등 4개 소계정으로 구분됨
 - PRA 납부그룹이 FCA Provider Contribution Class를 통해 공동계정에 참여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중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제조사들도 중개회사의 불완전판매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임
 - FCA Funding Class는 ① 생명보험·연금 중개, ② 손해보험 중개, ③ 투자 중개, ④ 주택금융 중개, ⑤ 투자 제조 등 5개 소계정으로 구분됨
- **(상호보조)** FCA 납부그룹(중개그룹 및 투자 제조)은 연간 부과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소요 발생 시 공동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중개그룹은 FCA Funding Class뿐만 아니라 FCA Provider Contribution Class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함(즉, 공동계정 전체 사용이 가능함)
 - 투자제조는 FCA Funding Class로부터만 자금조달이 가능함(즉, 공동계정 일부만 사용이 가능함)

〈그림 II-8〉 FSCS의 공동계정 도입

(단위: 백만 파운드)

PRA Funding Class			FCA Retail Pool(1,050)								
예금 수취 (1500)	생명 보험·연금 제조 (690)		FCA Provider Contribution Class(260)				FCA Funding Class(790)				
	손해 보험 제조 (600)		예금 수취 (110)	생명 보험·연금 제조 (70)	손해 보험 제조 (35)	주택 금융 제조 (45)	생명 보험·연금 중개 (100)	손해 보험 중개 (300)	투자 중개 (150)	주택 금융 중개 (40)	투자 제조 (200)

주: 1) 괄호 안의 금액은 그룹별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임

2) FCA Class의 투자제조는 FCA Funding Class에서만 자금조달 가능하며(최대 £790백만), 중개회사는 모든 그룹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함(최대 £1,050백만)

자료: FCA(2016)

- 중개회사가 FSCS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정적인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제조회사의 보험료 분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기금관리체제를 실시함

- **(계정 통합)** 최근 투자 중개 및 생명보험·연금 중개 납부그룹의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두 계정을 통합시켜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두 계정에 속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투자 중개와 생명보험·연금 중개 영업을 같이 하고 있음
- **(제조회사 분담 강화)** 같은 권역의 제조·중개회사를 동일 그룹에 편성하여 제조회사가 그룹 내 포함된 중개회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분담하게 함
 - 과거 제조회사는 부실이 발생한 중개회사의 보상비용에 대해 제조회사가 자체적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와 공동계정이 작동될 경우에만 보험료를 분담함
 - 하지만 부실 중개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제조회사들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고자 제조회사들도 중개회사의 불완전판매에 일정 책임을 직접적으로 분담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함
- **(공동계정 단순화)** 공동계정 운영방식을 단순화하여 기금운영의 복잡성을 낮춤
 - 기존 공동계정 운영방식은 중개그룹과 투자제조를 다르게 취급함(중개그룹은 공동계정 전체를, 투자제조는 공동계정 일부만 사용하게 함)
 - 하지만 같은 권역의 제조·중개회사를 동일 그룹에 편성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시, 기존 운영방식은 기금 운영의 복잡성을 높이기 때문에 공동계정을 활용하는 납부그룹에 대해 동일하게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

〈그림 II-9〉 FSCS의 현행 기금체계

(단위: 백만 파운드)

PRA Funding Class			FCA Retail Pool(1,070)									
예금 수취 (1500)	생명 보험 ·연금 제조 (690)	손해 보험 제조 (600)	손보 판매 (410)		투자 중개 (330)		투자 제조 (200)	주택금융 중개 (55)		채무 관리 (20)		예금 수취 분담금 (105)
			손보 판매 (310)	손보 제조 (100)	생보 판매 및 투자 중개 (240)	생보 제조 (35)		주택 금융 중개 (40)	주택 금융 제조 (15)	채무 관리	소비자 신용 제조	
						투자 제조 (50)						
						구조화 예금 제조 (5)						

주: 1) 괄호 안의 금액은 그룹별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임

2) 투자제조의 경우, 투자중개 및 투자제조 계정에 모두 포함되나 총부과한도는 £200백만임

3) 예금수취, 생보·연금제조, 손보제조는 PRA 및 FCA 계정에 모두 포함되나 총부과한도는 PRA 계정의 한도임

4) 예금수취분담금 계정은 나머지 5개 계정의 부과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수요 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함

자료: FCA(2016; 2018)

라) 소결

- 해외 주요국은 대규모 부실 및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리기금 도입, 공동계정 운영 등을 실시함
 - (정리기금 설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 주요국들은 정리기금을 도입함
 - EU는 SRF, 미국은 OLF라는 예금보험기금과는 별도의 정리기금을 도입함
 - (통합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영국은 2008년 기금체계 유지, 공정한 보험료 부과, 보험료 변동 최소화 등을 위해 공동계정을 도입함

4) 개선방안

-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정리기금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선제적) 예금보험기금은 부실 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지

만,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여 금융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규모)** 시스템 위기 발생 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긴급 자금지원을 통해 대규모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정리기금 도입 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및 재원 사용에 따른 보전방안을 설계해야 함

- **(손실분담)** 정리기금을 활용하기 전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등이 선제되어야 함
- **(사전적립)** 사전적립으로 운영할 경우, 재원 사용 범위 및 순서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기금 부족 시 추가 분담금, 외부 차입 등 보조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사후각출)** 사후각출로 운영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후 상환금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정리기금 설치는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행 예금보험기금 체계 내에서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공동계정을 사전에 설치·운영하고 보완적 자금조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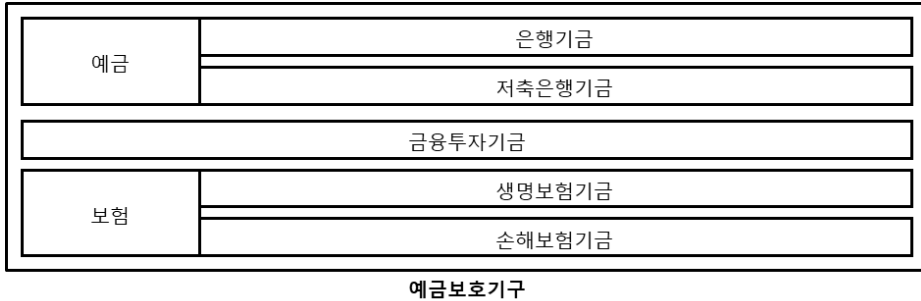
- **(한계)** 정리기금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음

■ 금융권역별 공동계정은 권역 간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공동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임

- **(지속성, 유사성)** 개별 권역의 특징 및 권역 간 관계를 지속성, 유사성, 상호이익 관련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볼 때 은행과 저축은행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공동계정으로 묶을 수 있음
- **(수용성)** 현행 제도와의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제도 운영이 비교적 단순함
- **(도덕적 해이, 권역 간 형평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낮고, 보험료 측면에서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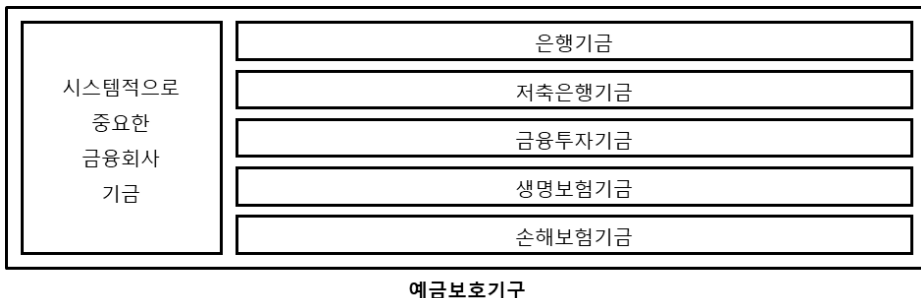
〈그림 II-10〉 시장 안정 공동계정 운영방안 1: 금융권역 중심



■ 개별회사 중심의 공동계정은 금융권역과 상관없이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로 구성된 공동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임

- **(SIFI 지정)**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 **(도덕적 해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수용성)** 현행 제도와의 차이가 커 제도 운영이 비교적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그림 II-11〉 시장 안정 공동계정 운영방안 2: 개별회사 중심



■ 사전적 공동계정 운영과 별도로 중앙은행 차입 등 보완적 자금조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완적 자금조달)** 현행 예보법 제26조에 의하면 금융위의 승인하에 중앙은행 차입 및 정부 차입 등을 통해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실효성)** 공공부문으로부터의 보완적 자금조달 수단은 만기가 제한적이거나 관련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즉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짐
 - 한국은행 차입은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만기 1년 이내만 가능하고,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부 차입의 경우, 절차(승인권자, 관련 법률과의 관계 등) 및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절차 및 규정 구체화)** 보완적 자금조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차입 및 정부 차입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금보험기금에 제공할 자금의 요건, 규모 및 절차 등을 사전적으로 의결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부 차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시 차입금의 용도 제한 및 원리금 상환일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절차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Ⅲ.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1. 보호한도 개선

가. 현황

1) 현행 보호한도

- 예금보험의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하도록 규정함(『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 (보호한도)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규정함(『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 일시금 신탁포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은 별도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함⁴⁷⁾
 - 보험금은 각 예금자의 해당 은행 예금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예금보험제도의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은 2001년 1월 1일 이후⁴⁸⁾ 지금까지 전 금융권역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47)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48)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보호한도 변화)** 은행권역은 1997년 2천만 원에서 2001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반면, 보험권역의 경우 1989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옴
- **(전액보호)**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액보호였던 적도 있으나, 2001년부터 전 금융권역에 5천만 원으로 동일 보호한도가 적용됨

〈표 III-1〉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보호한도 변화

구분	보호한도	비고
1980년대	종금·저축은행: 1천만 원 보험: 5천만 원	-
1997. 1 ~ 11	은행: 2천만 원 보험: 5천만 원	-
1997. 12 ~ 1998. 7	전액보호	1998년 4월 통합예금보험공사 출범
1998. 8 ~ 2000. 12	전액보호	- 1998년 8월 이전 가입자: 전액보호 - 1998년 8월 이후 가입자: · 2천만 원 이하 예금: 원리금 전액 · 2천만 원 초과 예금: 원금 전액
2001. 1. 1 ~ 현재	5천만 원	부분 보호제도 시행

자료: 예금보험공사

2) 보호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

-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는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예금보호제도의 기본 목적의 상충을 조화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 **(예금자보호법)**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소비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예금자보호법』 제1조)
 -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을 방지함
-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보험은 보험계약자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됨⁴⁹⁾

- 은행의 경우, 보호한도를 높게 설정하면뱅크런 가능성의 감소로 금융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음
- 보험의 경우,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을 감안하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한도를 설정함

나) 도덕적 해이와 손실분담 장치

- 예금보험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의 손실과 예금보험료 부담도 고려하여 손실분담 장치를 포함시켜야 함
 - **(도덕적 해이)** 적립금을 전액보호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금융회사 감시를 통한 시장규율도 훼손의 우려가 있음
 - **(손실분담)** 대표적 손실분담 수단이 보호한도 설정으로 정액방식의 경우 부분 보장방식으로, 보험에서는 공동부담(비례방식)으로도 손실을 분담할 수 있음
 - **(예금보험료)** 전액보호방식의 경우, 손실보전을 위한 출연비용이 커지며, 예금보험료 부담도 많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짐
-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는 예금보험의 기본 목적과 도덕적 해이 방지 외에도 경제 환경 변화 및 금융회사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추가 고려사항)** 금융권역별 보호한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역 간 자금이동, 예금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문제점

1) 경제성장 및 금융환경 변화

- 경제성장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1년 설정된 5천만 원 보호한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부보예금 증가)** 2000년 12월 말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전체 부보예금은 3.3배 증가하였으며, 부보예금의 증가율이 가장 큰 금융권역은 보험권역으로 약 6배 증가하였음
 - **(G7 국가와 비교)** 1인당 GDP 대비 은행예금에 대한 보호한도는 G7 국가의 경우 평균 2.7배지만 우리나라는 1.4배로 보호한도가 낮은 수준임
 - 현행 보호한도가 설정된 2001년 당시 11,253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지난 20년 간 약 2.8배 증가하여 2018년 말 31,363달러에 달하였음
 - **(금융환경 변화)** 경제성장, 물가상승, 자산증가 등으로 1인당 평균 적립액과 사고보험금 등이 증가하여 현행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금융소비자와 적립금 비율이 감소함
 - **(국제적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함
 - IADI의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보호한도는 예금자·금융회사별로 약 7만 5천 달러로 지난 10년간 상당 수준 증가함⁵⁰⁾

50) IADI(2018a)

〈표 III-2〉 예금보험 부보예금 변화

(단위: 십억 원)

구분	2000년 12월	2019년 12월	증가율(배)
은행	506,275	1,353,481	2.67
보험	130,070	804,105	6.18
금융투자	7,374	31,686	4.30
종금	6,556	1,453	0.22
저축은행	18,803	61,575	3.27
신협	19,208	-	-
총합	688,286	2,252,300	3.27

주: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임(잔액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표 III-3〉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은행 예금보호한도

(단위: USD)

국가	예금보호한도	1인당 GDP	보호한도 GDP 비율
캐나다	73,529	46,233	1.59
프랑스	114,943	41,464	2.77
독일	114,943	47,478	2.41
이탈리아	114,943	34,483	3.33
일본	90,098	39,290	2.29
영국	110,749	42,944	2.58
미국	250,000	62,794	3.98
G7 평균	124,172	44,793	2.71
한국	44,719	31,363	1.43

주: 2018년 말 기준임

자료: IADI Annual Survey; World Bank Databank

2) 금융권역별 특성

■ 금융안정성, 적립금 분포, 도덕적 해이와 사고보험금 보장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호한도의 적용은 소비자 보호에 부적절함

- (소비자 보호)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사업모형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가) 금융안정성

-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금융권역의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이 높을수록 보호한도도 높아져야 뱅크런을 예방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은행)**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이 큼에도 현행 보호한도에서 적립금 보호비중이 25%로 금융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권역 간 시스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은행의 경우 만기가 짧은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모형상 자산과 부채의 장단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상존함
 - **(보험)** 유동성 위험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적립금 보호비중은 각각 60%와 83%로 은행권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금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되는 구조이며, 사망보험 등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부(Contingent) 계약임
 - **(금융투자)** 일반적 예금수취 금융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교과서적인 뱅크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립금 보호비중은 44%로 은행보다 높음
 -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예탁금 역시 본격적인 투자대상에 투입되기 전의 대기성 자금으로 대출로 운용되는 은행의 예금과는 그 성격이 다름

〈표 III-4〉 금융권역별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04. 12 2006. 9 ¹⁾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은행	5천만 원 이하	98.8	38.9	98.6	30.1	98.2	26.2	98.1	25.0
	1억 원 이하	99.5	49.1	99.4	39.8	99.2	35.6	99.2	34.6
저축 은행	5천만 원 이하	97.7	80.7	96.5	79.2	99.2	90.0	97.8	74.7
	1억 원 이하	99.6	88.5	99.5	89.4	99.9	93.8	99.7	82.1
금융 투자	5천만 원 이하	99.6	47.1	99.7	59.8	99.8	47.4	99.7	44.4
	1억 원 이하	99.8	59.1	99.9	72.7	99.9	58.1	99.9	56.0
생명 보험 ²⁾	5천만 원 이하	98.6	73.2	99.1	75.8	97.5	68.1	95.8	60.3
	1억 원 이하	99.5	80.4	99.8	83.6	99.3	80.7	98.8	77.1
손해 보험 ²⁾	5천만 원 이하	99.9	90.6	99.9	87.6	99.7	83.2	99.6	83.1
	1억 원 이하	100.0	94.4	100.0	92.4	99.9	90.9	99.9	91.8

주: 1) 은행과 저축보험은 2004년 12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2006년 9월 자료임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증준비금, 미보고발생액 등 계약자별 구분 없이 책임준비금의 세부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제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보험권역의 사고보험금과 해지환급금

- 보험권역은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과 해지환급금에 모두 5천만 원 동일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보장 목적의 사고보험금은 해지환급금과 성격이 다름
- (위험보장) 보험계약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보험가입 목적이 위험보장이란 점에서 타당함
 - (해지환급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적립금이란 점에서 은행예금과 성격이 유사함
 - (보호 효과) 보호한도 설정기준으로 사고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선택에 따라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전액보호되는 계약의 규모가 다를 수 있음

다) 도덕적 해이

- 금융권역별 위험노출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고위험 금융권역에서 고수익 추구를 통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음
 - **(저축은행)**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등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보호한도 적용 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음
 - 예금보험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을 선택하였을 소비자들도 5천만 원의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고수익을 쫓아 저축은행을 선택함

3) 보호한도 개선을 위한 검토기준

-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이라는 예금보험제도의 근본 목적을 감안하되, 현행 보호한도의 객관적인 평가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검토기준)** 소비자 보호의 충분성, 시스템 위험을 포함한 개별 금융권역의 특성, 보호한도 조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검토함
 - **(국제기준)** 국제적 기준에서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의 수준의 적정성과 경제성장과 금융환경의 변화가 보호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함
- 보호한도의 설정에 개별 금융권역의 시스템 위험, 사업모형, 소비자의 금융거래 목적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함
 - **(금융권역 특성)** 개별 금융권역의 특성은 권역의 사업모형에 따른 유동성 및 시스템적 위험과 권역의 실물경제 및 금융체계 내 중요도를 함께 고려함
 - **(소비자 보호)** 금융권역별 소비자의 금융거래(은행 등 예·적금, 금융투자회사의 예탁금, 보험의 위험보장 등) 목적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검토함
 -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투자회사의 적립금 보호방식과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 보장방식 등 금융권역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차별화를 검토함
 - 예금보험의 보장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완화를 위한 소비자의 손실분담도 금융권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함

- **현행 보호한도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는 경우 경제전반과 각 금융권역에 미치는 자금이동과 예금보험료 상승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함**
 - **(자금이동)** 금융회사 또는 권역 간 보호한도 차등화는 특정 회사 또는 권역에 제도변화에 따른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유발할 수 있음
 - **(예금보험료 부담)**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예상 손실보전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예금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시장규율)** 보호한도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유발 효과가 클 경우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

다. 해외사례

1) 예금보호한도에 관한 IADI 지침⁵¹⁾

-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 금융안정 유지와 도덕적 해이 방지(시장규율) 등 세 가지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은행권역 관점 보호한도 지침)** IADI는 은행권역의 관점에서 보호한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
- **IADI는 전반적인 금융안전망 체계를 감안하여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뱅크런의 방지를 위해 대다수(90~95%)의 예금자를 보호⁵²⁾하되 시장규율도 확보하도록 권고함**
 - **(시장규율)** 다수 예금자의 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고액예금자의 은행 감시 유인을 남겨 시장규율을 확보함
 - 전체 예금자의 5~10%에 해당하는 고액예금자는 총 예금의 30~50%를 차지하며 이들 예금의 상당 부분을 보호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51) IADI(2013)

52) 과거 IMF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설정 시 예금자의 80%, 예금액의 20~30%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시함. 보호예금자의 비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한계보호증가율은 미미하며, 나머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호한도 설정 시 예금 분포와 보호예금자 수 등 필요 데이터를 이용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금 확보를 위한 손실측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도산가능성 예측)** 과거 경험치 적용 방법 또는 발생가능 최대 손실금액(Value at Risk)과 부도율 등에 기반한 정교한 방법을 통해 도산가능성을 예측함
 - 예를 들어 5~6개의 소규모 은행 또는 중간 규모 은행 2~3개 이상의 지급불능 시에 대비한 손실을 예측하고 기금을 적립함
 - **(다른 고려사항)** 기금 마련 시 재원조달 방안, 경제발전 수준, 주변국과의 연결성, 한 국가 내 다수의 예금보험제도의 존재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
 - **(주기적 검토)** 보호한도는 물가상승, 금융시장 및 예금규모 변화, 신상품 출시 등에 따라 실질 가치가 감소하므로 보호한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

2) 해외 주요국의 보호한도

가) 은행의 보호한도 설정

- 각 나라마다 경제적 상황과 예금보호제도의 운영환경이 달라 국가별 보호한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은행권역 보호한도는 \$500 미만부터 전액보호까지 폭넓음⁵³⁾
 - **(1인당 GDP 대비 국제비교)** 은행 예금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EU 주요 회원국(23개국) 평균 5.4배이며, 한국은 2018년 말 기준 1.43배로 낮은 수준임
 - 2013년 말 1인당 GDP 대비 평균 보호한도는 고소득 국가는 5.3배, 중상위 국가 6.3배, 중하위 국가 11.3배, 저소득 국가 5배로 각각 보고됨
 - **(EU 예금보험지침)**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리금 포함 10만 유로를 제안하고 있으며, EU는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예금보험 보험한도를 상향시켜 왔음
 - EU 예금보험지침의 보호한도 변천: 최소 2만 유로(1994년) → 최소 5만 유로(2009년) → 10만 유로(2010년 이후)

53) IMF(2014)

〈표 III-5〉 해외 은행 예금보호한도

(단위: 유로)

국가	보호한도 (계좌당, 기관당)	1인당 GDP의 배율	일시적 고액예금 보호한도
Australia	162,474	3.62	-
Belgium	100,000	2.78	500,000
Brazil	62,971	7.70	-
Bulgaria	100,139	14.96	127,500
Canada	66,417	1.77	-
Chile	Unlimited	Unlimited	3,948
Croatia	100,000	9.00	-
Czech Republic	100,000	5.89	200,000
Denmark	100,000	2.13	1,300,000
Estonia	100,000	6.09	-
Finland	100,000	3.12	-
France	100,000	3.09	500,000
Germany	100,000	2.70	-
Greece	100,000	6.44	300,000
Hungary	100,000	8.42	-
Iceland	16,737	0.29	-
India	1,303	0.81	-
Ireland	100,000	1.72	-
Italy	100,000	3.76	-
Japan	78,427	2.45	Unlimited
Korea	39,007	1.57	-
Lithuania	100,000	7.19	300,000
Luxembourg	100,000	1.12	2,500,000
Malta	100,000	4.46	500,000
Mexico	100,329	13.51	-
Netherlands	100,000	2.49	500,000
Norway	203,096	3.23	-
Poland	100,000	8.67	191,861
Portugal	100,000	5.67	-
Romania	100,000	11.07	100,000
Russia	20,252	2.26	-
Slovenia	100,000	5.11	23,597
Sweden	100,000	2.16	490,000
Switzerland	83,320	1.25	-
Taiwan	83,744	4.13	-
Turkey	22,090	2.52	-
United Kingdom	95,706	2.89	1,130,000
United States	208,300	4.20	-

자료: IADI Annual Survey; Adema et al.(2019)

나) 금융권역 특성의 반영

- 해외 주요국에서는 각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은행 및 금융투자는 정액방식으로, 보험은 보험종류별로 차등하여 정액·정률 방식으로 보호한도가 정해짐
- (사고보험금) 미국은 정액방식, 영국과 일본은 정률방식으로 보호한도를 정하며, 캐나다는 일정금액까지는 전액보장하는 정률방식으로 보호한도를 정함
 - 정액방식의 경우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는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미국, 캐나다), 해지환급금의 보호한도는 은행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짐(미국)
 - 정률방식의 경우, 영국은 장기 및 의무 보험의 사고보험금을 전액보장하고 기타 보험은 90%를 보장하며, 일본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80~100%를 보장함
 - (해지환급금) 정액방식에서는 사고보험금보다 낮게 정해지고(미국, 캐나다), 정률방식에서는 책임준비금 또는 사고보험금과 보호한도가 같게 정해짐(일본)

〈표 III-6〉 주요국의 금융권역별 보호한도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¹⁾	일본 ²⁾
은행		\$250,000	C\$100,000	£85,000	¥10,000,000
금융투자		\$500,000 (적립금 ³⁾ \$250,000)	C\$1,000,000	£85,000	¥10,000,000
생명보험	사고보험금	\$250,000 ~500,000	MAX(C\$60,000 ~200,000, 85%)	100%	90%
	해지환급금	\$100,000	MAX(C\$60,000, 85%)		
손해보험	사고보험금	\$300,000 (근재보험 100%)	C\$250,000 ~300,000	장기·의무보험 100% 그 외 90%	80~100%
	해지환급금	\$10,000 ⁴⁾	70% ⁴⁾		

주: 1) 영국 FSCS의 보험권역 보상은 보험계약 보장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2) 일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고금리계약의 계약이전 시 예정이율 삭감을 통해 별도 보호한도, 90%~1/2Σ(5년간 매년 예정이율-기준금리)를 적용함

3) 금융투자의 적립금은 투자자예탁금임

4) 손해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미경과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함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c); FSCS 홈페이지

라. 개선방안

-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보호한도 차별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효과와 함께 추가로 시장규율 약화, 금융권역 간 자금이동,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논의함

1) 은행

가) 보호한도 상향

- 금융안정성과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하여 은행예금의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금융안정성)** 보호한도 증액은 적립금 보호비중의 증가로 금융 불안 시에도 급격한 현금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안정성의 강화도 기대됨
 - 은행은 대표적인 수신 금융회사로 여타 금융회사에 비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커 예금보험 사고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 있음
- **(경제성장 반영)** 지난 20여 년 동안 1인당 GDP가 약 2.8배 증가하였고, EU 예금보호지침(10만 유로)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한도를 고려해볼 때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상향함

나) 고려사항

① 예금분포 변화와 경제성장 반영

- 현행 보호한도의 소비자 보호 비중은 적정하지만 적립금 보호비중은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금융 불안 시 소수 고액예금자들의 예금인출 가능성을 높임
- **(소비자 보호 비중)** 지난 15년 동안 전체 은행권역 소비자 중에서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부 보호되는 소비자의 비중은 9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대다수의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IADI의 권고에 부합함
- **(적립금 보호비중)** 전체 은행권역 적립금 중에서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 보호되는 적립금 비중은 2004년 약 39%에서 2019년 약 25% 수준으로 낮아졌음
- 지난 15년 동안 고액예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1억 원 초과 예금액 비중은 2004년 51%에서 2019년 65%로 크게 증가하였음
- 소수의 고액예금자들이 불완전하게 보호되며 금융 불안정 시기에 이들의 대량 인출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표 III-7〉 은행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4. 12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96.27%	22.96%	96.48%	18.18%	95.35%	14.33%	95.50%	13.95%
2천~3천	1.32%	6.56%	1.09%	4.69%	1.31%	4.30%	1.27%	4.08%
3천~4천	0.72%	5.12%	0.62%	3.76%	0.83%	3.83%	0.77%	3.50%
4천~5천	0.47%	4.28%	0.44%	3.46%	0.69%	3.72%	0.58%	3.42%
~5천만 원	98.77%	38.93%	98.62%	30.10%	98.17%	26.18%	98.12%	24.96%
5천~1억	0.73%	10.13%	0.80%	9.65%	1.05%	9.46%	1.09%	9.60%
~1억 원	99.50%	49.06%	99.42%	39.75%	99.22%	35.64%	99.21%	34.56%
1억 초과	0.50%	50.94%	0.58%	60.25%	0.79%	64.35%	0.80%	65.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비자 수 및 금액	98,143,519	479,038,200	110,800,848	632,776,500	139,698,922	970,426,060	165,745,459	1,264,649,621

자료: 예금보험공사

-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년 간 약 2.8배 증가하여 2018년 말 현재 31,363달러에 달하였음
- **(1인당 GDP 성장)** 현행 보험한도가 설정된 2001년 당시 11,253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8년 말 31,363달러를 기록함

② 보호한도 상향의 장단점

-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소비자가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을 집중시키면
서 은행 간 예금유치 경쟁이 증가하고 시장규율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시장규율 강화)** 1억 원 보유 소비자는 기존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두 개의 은행에 분산 예치하다가 하나의 은행에 집중 예치하면 거래편의가 증대됨
-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증가하는 은행권역 비용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예금보험료 인상)**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증액하면 보호되는 적립액 비중이
9.6%p(121조 3,437억 원) 증가하여 현행 보호한도의 보호비중 약 25%와 비교
하면 증가 규모가 큼
 - **(단계적 인상)** 예금보험료 인상 정도를 추정해보고 비용증가로 인한 효율성 저
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호한도를 5천만 원~1억 원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단, 5천만 원~1억 원 사이 금액 중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
액만이 추가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 초과금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
이 필요함

2) 저축은행

가) 보호한도 유지

- 권역 간 자금이동의 가능성, 예금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현행과 동일한 5천만 원으로 유지함
 - **(보호비중)**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 5천만 원 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소비자와
금액의 비중이 각각 97.8%와 74.7%로 충분하여 보호한도를 유지함
 - **(예금보험료)** 은행권역에 맞추어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예금보험료 추가

- 인상으로 저축은행 사태 후 인상된 예금보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은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이란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나) 고려사항

① 저축은행의 적립금 분포변화와 사업모형 특성

-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소비자 및 적립금의 비중은 각각 97.8%와 74.7%로, 보호한도를 유지하여도 대다수의 소비자와 적립금을 보호할 수 있음
 - (소비자 보호비중)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소비자 보호 비중은 2004년 97.67%였으며, 2019년에도 97.8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대다수의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IADI의 권고에 부합함
 - (적립금 보호비중)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적립금 비중은 2004년 약 81%에서 2019년 약 75%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III-8〉 저축은행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4. 12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72.12%	16.33%	66.35%	15.08%	78.79%	12.23%	72.73%	5.99%
2천~3천	6.81%	11.73%	8.32%	12.00%	4.78%	12.07%	3.86%	6.51%
3천~4천	8.03%	19.78%	6.74%	13.49%	4.28%	14.92%	4.21%	9.91%
4천~5천	10.71%	32.85%	15.09%	38.66%	11.36%	50.78%	17.01%	52.31%
~5천만 원	97.67%	80.69%	96.49%	79.22%	99.22%	90.00%	97.82%	74.71%
5천~1억	1.89%	7.78%	2.97%	10.17%	0.64%	3.77%	1.89%	7.34%
~1억 원	99.56%	88.47%	99.46%	89.39%	99.86%	93.77%	99.71%	82.05%
1억 초과	0.45%	11.53%	0.54%	10.61%	0.13%	6.22%	0.29%	17.9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2,136,456	32,640,127	4,051,912	73,606,795	3,088,241	32,177,224	3,869,860	59,518,958

자료: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 적립금 분포의 특징은 4~5천만 원 범위의 적립금 비중이 50% 이상으로 집중되어 소비자들이 예금 규모를 보호한도에 맞추는 유인이 크다는 점임
 - **(적립금 증가 양상)** 4~5천만 원 범위 적립금의 비중이 2004년 33% 수준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5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여 은행에 비하여 고위험 금융회사로 분류됨
 - **(고위험 사업모형 증가)**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 PF는 올해 상반기 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1년 4조 3,000억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임⁵⁴⁾
 - **(지배구조 특성)**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른 경영자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은행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 시중은행과 달리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저축은행은 위험 감수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고스란히 대주주 일가의 몫으로 돌아가는 지배구조를 가짐

② 보호한도 유지의 장단점

-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보호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모형을 가진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은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은행과 저축은행의 보호한도에 차이가 나면 같은 예금수취 금융회사인 저축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고수익 추구)** 저축은행 예금자 다수가 상대적인 고수익을 찾아 거래하는 점을

54) 2019년 10월 14일 국회 정부위원회 장병완 의원 보도자료를 참조함

고려하면 은행의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유인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전추구)** 단, 안전추구 성향의 예금자는 상향된 은행의 예금보호한도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③ 은행 및 저축은행 계정의 통합

- 장기적으로 예금수취기관으로 동일한 사업모형을 가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규제 및 업무영역 등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기금을 통합하여 단일 금융권역으로 예금보험을 운영하고 동일 보호한도를 적용함

- **(예금보험의 목적)**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이라는 예금보험의 목적에서 두 금융권역은 사업모형과 이에 따른 위험의 종류가 동일하므로 단일 기금으로 관리함
- **(회사별 위험)** 동일 예금보험기금 아래 차등요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통하여 회사별 위험관리를 유도하여 고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통제함
 - 은행별로 위험추구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수반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권역별 보호한도가 아닌 회사별 예금보험료의 차등을 통하여 규율함

3) 보험

-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사고보험금을 중심으로 보호한도를 논의하며, 해지환급금에 대한 보호한도도 별도로 고려함

- **(보장의 지속)** 보험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는 위험보장의 지속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의 지속을 전제로 사고보험금 중심의 보호한도 논의가 필요함
- **(청산방식)** 현행 보호한도는 해지환급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청산방식을 전제로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결함을 가짐
 - 청산방식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전형적인 부실 은행 정리방식임

가) 보호한도 조정방안

- 사고보험금을 보험권역 보호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정하여 위험보장이 목적인 보험 권역의 특성을 반영함
 - **(보험계약 유지)** 부실 보험회사 정리방식은 보험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전방식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함
 - **(보호한도 기준)** 사고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함
 - **(손실분담)**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 손실분담은 정액 또는 비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선 정액방식 보호한도만을 고려대상으로 함
 - 정액방식은 보호한도 내에서 사고보험금의 일정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계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소비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쉬움
 - 비율방식은 보호한도 없이 모든 계약에 대해 동일 비율로 보험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계약자 간 형평성면에서 유리함
- 일부 보험상품은 사고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신 해지환급금은 소비자 및 적립금 분포에 맞추어 하향 조정함
 - **(사고보험금 상향)**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상품인 연금, 종신, 정기보험의 경우 사고보험금 기준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연금은 96.2%, 종신보험 94.0%, 정기보험 94.9%로 다른 보험종목의 사고보험금 보호비중과 비슷해짐
 - **(해지환급금 하향)**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소비자 및 적립금 모두 보호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향 조정이 가능함
 - 보험은 계약이전을 통한 보장의 지속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특성을 가지므로 해지환급금 하향 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음

나) 고려사항

① 보험가입금액 분포

-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인 보험가입금액의 분포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 변액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종류의 5천만 원 미만 계약이 95% 이상임
 - **(보호비중이 낮은 보험종류)** 연금은 89.1%, 종신보험은 70.4%, 정기보험은 80.5%, 변액보험은 74.2%가 5천만 원 미만으로 보호비중이 낮음⁵⁵⁾
-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상품인 연금, 종신, 정기보험의 경우 1억 원 또는 2억 원을 보호한도로 설정했을 때 전액보호되는 계약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연금)** 보험가입금액의 1억 원 이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은 96.2%, 2억 원 이하는 99%임
 - **(종신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억 원 이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이 94.0%, 2억 원 이하는 98.1%임
 - **(정기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억 원 이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이 94.9%, 2억 원 이하는 98.6%임

② 책임준비금 분포

-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소비자 및 적립금 분포를 고려하는 경우 현행 보호한도에서 소비자 및 적립금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
 - **(소비자 보호비중)** 계약자의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계약자의 비중이 생명보험은 95.9%, 손해보험은 99.6%임
 - **(적립금 보호비중)** 적립금 분포도 현행 보호한도에서 생명보험은 60.3%, 손해보험은 83.1%를 보호하여 해지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의 보호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55) 생명보험 각 상품의 보험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은 <부록 II>를 참조하길 바람

〈표 III-9〉 보험가입금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생명보험계약 비중(2017년)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연금	89.1	질병보험	95.8
종신보험	70.4	건강보험	96.4
정기보험	80.5	암보험	99.8
상해보험	99.0	변액보험	74.2

주: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8)

〈표 III-10〉 생명보험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6. 9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94.94%	54.14%	94.81%	53.53%	89.13%	40.23%	84.58%	30.88%
2천~3천	2.14%	10.23%	2.65%	11.42%	4.80%	12.88%	5.73%	11.79%
3천~4천	0.82%	5.44%	1.11%	6.78%	2.38%	8.92%	3.48%	10.12%
4천~5천	0.66%	3.44%	0.52%	4.10%	1.23%	6.03%	1.99%	7.50%
~5천만 원	98.56%	73.24%	99.09%	75.84%	97.53%	68.05%	95.78%	60.29%
5천~1억	0.96%	7.15%	0.66%	7.80%	1.72%	12.65%	2.99%	16.85%
~1억 원	99.52%	80.39%	99.75%	83.64%	99.25%	80.70%	98.77%	77.14%
1억 초과	0.48%	19.61%	0.25%	16.36%	0.75%	19.30%	1.24%	22.8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38,389,927	181,954,838	43,128,531	245,644,480	48,256,539	441,393,335	48,642,390	580,070,595

주: 보충준비금, 미보고발생액 등 계약자별 구분 없이 책임준비금의 세부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제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표 III-11〉 손해보험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6. 9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99.45%	79.52%	99.21%	72.61%	98.76%	64.86%	97.77%	61.80%
2천~3천	0.30%	6.06%	0.42%	7.82%	0.59%	9.00%	0.96%	9.20%
3천~4천	0.11%	3.21%	0.17%	4.42%	0.27%	5.69%	0.57%	7.68%
4천~5천	0.05%	1.79%	0.08%	2.71%	0.13%	3.66%	0.25%	4.45%
~5천만 원	99.91%	90.58%	99.87%	87.56%	99.74%	83.22%	99.55%	83.14%
5천~1억	0.07%	3.79%	0.09%	4.87%	0.18%	7.72%	0.33%	8.67%
~1억 원 이하	99.98%	94.37%	99.96%	92.43%	99.92%	90.94%	99.88%	91.81%
1억 초과	0.03%	5.64%	0.03%	7.57%	0.07%	9.06%	0.11%	8.1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23,708,443	27,963,125	33,757,911	43,403,287	71,890,990	117,414,245	73,345,378	186,512,902

주: 보증준비금, 미보고발생액 등 계약자별 구분 없이 책임준비금의 세부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제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③ 보험권역 보호한도 설정의 기준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시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을 보호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 **(보험의 원리)** 보험계약의 목적이 위험보장임을 감안할 때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험의 원리에 적합함

- 보험계약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보장받는 금액(보험가입금액)이 크게 다름
- 보호한도 설정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비자 이해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사고보험금이 책임준비금보다 이해하기 쉬움

- 소비자가 보호한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책임준비금의 경우 계약자가 계산하기 어려움

〈표 III-12〉 보호한도 설정 기준별 특징

구분	사고보험금 기준	책임준비금 기준
특징	- 보험의 위험보장 목적에 부합 - 소비자 이해도 높음	- 금융권역 간 형평성 유리 - 소비자 이해도 낮음 - 납입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외사례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	일본

④ 보호한도 상향의 장단점

- 상품별 보험가입금액 분포 고려 시 보험계약 지속과 사고보험금 상향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해지환급금 하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연금가입 증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연금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입금액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보호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기대됨
 - (예금보험료) 사망률 감소 등에 따른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정기 및 종신보험 수요 감소로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해지환급금 하향 효과) 보험계약의 유지가 전제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보호한도 하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의 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금융투자

가) 보호한도 유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립금의 분포, 권역 간 자금이동의 가능성과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현행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유지함
 - (보호비중) 소비자 기준 보호비중은 99% 이상이며, 적립금 기준 보호비중도

44%로 은행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투자자예탁금)** 투자 목적의 일시적 예치금으로 은행 등의 예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은행의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의 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보호범위 확장)** 단, 금융투자권역의 보험범위를 넓혀 유가증권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보호대상 소비자 및 금액 분포를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은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도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으로부터 투자자 자산보호 차원에서 보호범위에 포함함
 - 유가증권으로 보호범위를 넓히는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고려사항 - 적립금의 분포 변화와 특성

- 적립금의 분포 변화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소비자의 보호비중은 99%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적립금 보호비중은 2006년 47%에서 2019년 44%로 소폭 하락함
 - **(보호비중)**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소비자 및 적립금 보호는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권역의 보호대상 적립금인 투자자예탁금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대량인출)** 예금보호 대상인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므로 은행예금과 다르게 금융 불안에 따른 대량인출의 가능성은 낮음
 - **(도덕적 해이)** 투자자예탁금은 투자 목적의 일시적 예치금으로 보호한도에 따라 소비자가 투자자예탁금 규모를 조정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음

〈표 III-13〉 금융투자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6. 9		2009. 12		2014. 12		2019. 9	
	계정 수	금액	계정 수	금액	계정 수	금액	계정 수	금액
2천만 원 이하	98.79%	30.47%	98.84%	38.11%	99.38%	30.30%	99.17%	28.47%
2천~3천	0.40%	6.46%	0.45%	9.26%	0.22%	7.03%	0.28%	6.66%
3천~4천	0.23%	5.21%	0.23%	6.73%	0.12%	5.36%	0.15%	5.08%
4천~5천	0.16%	4.94%	0.15%	5.71%	0.08%	4.67%	0.10%	4.19%
~5천만 원	99.57%	47.09%	99.67%	59.82%	99.80%	47.36%	99.71%	44.41%
5천~1억	0.27%	11.96%	0.22%	12.85%	0.12%	10.72%	0.17%	11.54%
~1억 원	99.84%	59.05%	99.89%	72.67%	99.92%	58.08%	99.88%	55.95%
1억 초과	0.16%	40.96%	0.11%	27.33%	0.08%	41.92%	0.12%	44.0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10,674,289	15,747,792	15,991,994	18,669,391	24,416,879	18,504,480	28,178,463	29,327,148

자료: 예금보험공사

2. 보호범위 확대

가. 현황

-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자 자산에 대한 예금보호는 금융투자회사와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됨⁵⁶⁾

- (투자자 자산) 금융투자회사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현금성 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⁵⁷⁾하고 유가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함⁵⁸⁾
-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예탁한 금

56) 예금자보호법 제2조

57) 자본시장법 제74조. 단, 투자자예탁금 중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은 별도 예탁대상이며 청약자예수금, 연금위탁증거금 등은 제외됨

58) 자본시장법 제75조

전, 매매 등의 거래 후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잔여 금전 등 일시적 대기자금을 말함

- **(겸영회사)** 은행과 보험회사 등 겸영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자의 신탁 자산 중 원본이 보존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부보 대상에 포함됨
 - 겸영투자사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예치 또는 신탁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예금보험제도 아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등'의 범위에 투자자예탁금만 포함되어 유가증권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보호범위)** 투자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시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투자자예탁금, 유가증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보호함
- **(유가증권)**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가증권의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통합예금보험제도에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음
 -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 등 투자자의 자산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지만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락의 발생이 가능함
 - 투자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이러한 누락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는 경우,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는 보호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상품 등 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회사 부실 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음

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성장에도 투자자 보호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행권역의 예금자 보호방식에 맞추어 금융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 **(보호범위 한정)** 원본이 보존되는 예금 등으로 보호범위를 한정하여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법이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보호범위에서 제외됨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투자자의 유가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이 규정하는 원본이 보존되는 예금 등에 속하지 않아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이 발생함
 - **(보호 사각)** 금융회사 부실 시 횡령 등 고의나 과실에 따라 누락된 투자자의 유가증권은 금융투자자 자산임에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보호의 사각이 발생함
 - 투자자의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은 금융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지만 금융회사 명의로 관리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⁵⁹⁾
 -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투자원본 손실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실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 밖으로 볼 수 있음
 - **(시장변화)** 금융투자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규모와 금융상품의 복잡성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높임
 -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투자자 보호범위가 정해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금융상품 판매도 온라인플랫폼과 비대면 금융영업의 확대 등으로 기존 판매방식에서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제고됨

59) 정대섭(2017a)

〈표 III-14〉 자본시장의 성장

(단위: 십억 원)

연도	주식			채권 거래액
	일 거래금액	시가총액	예탁금	
2000	1,494	186,206	6,058	27,367
2005	5,354	655,075	11,896	3,733,478
2010	5,387	1,140,967	13,702	6,242,356
2015	3,707	1,242,832	20,917	6,986,283
2019	4,114	1,475,909	27,338	6,893,375

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회사의 파산 시 금융상품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를 벗어나지만 보상받기 어려움

- **(불완전판매)** 정보비대칭성이 상존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이 보호범위에서 제외됨
 -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이 특히 강조되며 고수익을 위한 고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함
 - 그러나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자자의 책임은 경감되어야 함
- **(피해보상)** 금융회사 파산 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 금융회사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에서 일부만 보상함
- **(부실 가능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에 비례하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도 커짐
 - 금융회사가 생존해 있는 경우, 피해 투자자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화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움

- 실제 2013년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하여 모은 투자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동양그룹 사태가 촉발함⁶⁰⁾

- **(불완전판매)** 손실위험이 높고 복잡한 구조의 투자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대량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서명, 투자성향 조작, 불충분한 위험고지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함
 - 다수의 개인에게 소액·단기로 모집한 자금을 하나의 신탁상품에 넣어 펀드처럼 운용하고 1:1 자산관리 취지를 위배하여 투자자 보호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됨
- **(손해배상 결정)** 분쟁조정 결과, 2014년 7월 말까지 24,028건 5,892억 원에 대하여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었고 12,441명에게 625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됨
- **(피해금액 회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3,165억 원을 변제받고 손해배상액 625억 원을 더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함

〈표 III-15〉 동양그룹 사태 손해배상금액 및 회수액

(단위: 명, 건, 억 원)

분쟁조정 대상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	불완전판매 금액(A)	변제액 (B=현금+출자전환)	손해액 (C=A-B)	손해배상액 (D=C×배상기준)	총 회수액 (E=B+D)
인원	건수						
16,015	35,754	24,028 (67.2%)	5,892	3,165 (53.7%)	2,727 (46.3%)	625 (손해액의 22.9%)	3,791 (64.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금감원 분쟁조정위,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 인정, 배상비율은 15~50%”

-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에서도 2013년 말까지 24개 저축은행 2만 3천 명의 투자자가 8,170억 원 규모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⁶¹⁾
 - **(배상금 결정)** 13,883명의 분쟁조정 신청 투자자 중 13,387명(96.4%)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어, 전체 손해액 4,155억 원 중 1,240억 원(29.8%)의 배상결정금액이 결정됨
 - **(피해보상)** 저축은행의 파산에 따라 배상 결정 후 피해자 보상은 파산 저축은행

6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61) 전선애·오승곤(2015)

의 파산재단에서 잔여재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받게 되지만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⁶²⁾

-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파산배당율은 평균 28.2%로 배상결정금액 1,240억원 중 약 35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해외사례

1) 해외 투자자 보호 범위

〈표 III-16〉 국가별 보상대상 재산권 비교

구분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계약상 채권	투자자예탁금	○	○	○	○	○	○
	유가증권 ¹⁾	×	○	○	○	○	○
손해배상 청구권	사기 ²⁾	×	×	×	○	○	○
	업무상과실 ³⁾	×	×	×	×	○	○
	운영상오류	×	×	×	×	×	○
	결제불이행 ⁴⁾	×	×	×	×	○	○
	불완전판매 ⁵⁾	×	×	×	×	×	○

주: 1) 각 국가별로 증권범위 다름

2) 미국과 호주는 고객의 미승인 거래만 해당됨

3) 호주는 증권증서의 잘못된 취소 또는 취소실패만 해당됨

4) 호주는 고객계산에 따른 증권거래로 고객 계좌로의 증권의 입고 또는 현금의 입금만 해당됨

5) 잘못된 투자자문, 부적합 투자추천을 포함함

자료: 이성복(2018); 예금보험공사(2018d)

■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국가에서만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도 보상하고 있음

- **(독일)** 투자자예탁금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일본·캐나다)**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에만 투자자 보호범위에 포함하며 위법이나 불완전판매에 의한 투자자 피해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

62) 서울파이낸스(2013. 10. 21), “[2013 국감] ‘저축銀 피해보상, 1조 2천억 중 1천억’”

- **(미국·호주)**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미국은 사기, 호주는 사기, 업무상과실과 결제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보호하고 있음
- **(영국)** 투자자예탁금, 유가증권과 함께 업무상과실 등과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가장 폭넓은 보호범위를 가짐

2) 영국 FSCS

■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⁶³⁾는 금융감독당국(FCA, PRA)의 인가를 받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실 또는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함

- **(금융회사 종류)** 예금수취 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보험 중개회사, 금융투자회사, 주택금융 등 금융회사의 파산 또는 위법행위 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FSCS에서 보상금⁶⁴⁾을 지급함
 - 보험 및 금융투자의 경우 개인 및 소기업이 보호대상이며, 예금의 경우 대기업 예금도 포함함
- **(보호범위)** 부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부실 자문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까지 8.5만 파운드⁶⁵⁾ 범위 내에서 보호범위에 포함함
 - 투자자예탁금은 물론 주식, 채권, 선물옵션, 개인연금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며 잘못된 투자자문, 관리 소홀, 잘못된 설명과 사기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보상함
 - 단,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잔여재산 부족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FSCS에서 보상함

63)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64) 부실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을 통한 보상이 부족한 경우 FSCS에서 보상금을 지급함

65)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 기존 5만 파운드에서 예금과 동일한 금액인 8만 5천 파운드(약 1억 2천만 원)로 인상함

〈표 Ⅲ-17〉 FSCS 금융서비스 보호대상 및 한도

대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중개)	한도
예금	은행, 주택조합, 신탁 예치금	-	8.5만 파운드
보험	(장기) 생명 및 연금	장기보험 중 순수보장성 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100%
		그 외 장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90%
	(일반) 의무보험, 전문직 배상책임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100%
	그 외 일반보험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90%
투자상품	주식, 채권, 단위신탁, 선물옵션, 개인연금 장기투자상품 등	잘못된 투자자문, 부실한 투자관리, 사기 등에 의한 손실	8.5만 파운드
주택금융	주택금융 관련 자문	부적절한 모기지 대출 등 주택금융 관련 자문 및 중개에 의한 손실	
채무관리	채무자 지급 자금	-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b)

3) 호주 사전적립 보상기금(CSLR) 도입 논의

- 최근 사전적립 보상기금(CSLR)의 도입을 결정하고 의견수렴 중인 호주 사례 검토
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자보호기금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제도 개혁)** 호주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기초한 소비자보상제도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2017년 분쟁조정 및 민원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추진함
- 호주는 2001 회사법 912B조에서 금융회사나 그 대리인의 규정위반에 따른 소매투
자자 피해 시 보상 방안을 마련해 놓을 것을 규정함
 - **(피해보상 방안 검토)**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2007년 전문가 배상
책임과 소비자 보상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놓고 비교⁶⁶⁾하여 배상책임을 채택함

66) 전문가 배상책임 가입,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문가 배상책임 가입, 그리고 소비자 보
상기금 조성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배상책임으로 결론내림

-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은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의 편익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마련됨
- 호주 정부는 크게 전문가 배상책임, 소비자 보상기금과 피해보상 증권예치 등 방안에 대한 규제당국,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편익과 부담을 분석함

〈표 III-18〉 호주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검토

구분		배상책임 (일반적)	배상책임 (상세 규정)	보상기금	증권예치
소비자	부담	하	하	하중	하
	편익	중상	중상	중상	중
규제당국	부담	하	중	중상	상
	편익	중상	중	중	중
공급자	부담	하중	중	중상	중상
	편익	중상	중	중	하
순위 ¹⁾		1	2	3	4

주: 1) 순위는 저자가 추가함

자료: ASIC(2007)

■ 사전기금 보상제도(CSLR)의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2017년 외부분쟁조정과 민원제도에 대한 검토인 Ramsey Review를 거치면서 활발해짐

- (개혁 권고) 2017년 12월 21일 제출된 ‘외부분쟁해결 및 민원제도 검토’ 최종 보고서⁶⁷⁾는 호주의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민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권고함
- 외부분쟁해결 및 금융민원제도의 개혁으로 기존의 전문가배상책임에 기반한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로는 충분한 보상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제기됨

■ CSLR 도입에 대한 Ramsey Review의 권고⁶⁸⁾는 ① 가장 필요한 금융부문에 한정시켜 CSLR 도입, ② CSLR은 우선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자문업에 한정, ③

67)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a)

68)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b)

CSLR의 도입에 적용범위, 접근조건, 구상권, 기금조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의 반영
등입

- **(보호범위)** CSLR 설립 후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 및 일반 자문을 개인 및 소상공
인에 제공하는 금융자문업자의 금융자문 실패에 우선적으로 한정시켜 적용함

■ Ramsey Review는 위험기반 분담금을 제안하며 위험의 평가방법, 위험의 반영정
도, 회사 또는 서비스 종류에 따른 위험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분담금 책정)**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
든 참여회사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적절한 정도로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분담금을 회사별로 공평하게 나누는 경우 소형회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지고 시장경쟁을 제한하게 됨

■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기
금조달 방법은 추가적 분담금 각출, 예상 못한 비용까지 연간분담금에 포함 또는
차입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음

- **(추가재원)** Ramsey Review는 대규모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피해보상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도록 제안함

라. 개선방안

1) 통합 예금보험제도 보호범위에 유가증권 포함

■ 현행 통합 예금자 보호체계 아래 금융투자상품 등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유가증권)** 금융투자회사의 횡령 등 위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재산인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부실로 불가능해진 경

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보상함

-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탁제도 및 투자증권 집중 예탁제도를 보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위법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함⁶⁹⁾
- **(제도 수용성)** 현행 예금보험제도 아래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는 연장선에서 집중예탁 대상 투자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면 제도개선이 용이함
- 별도의 독립기구나 기금의 설치 없이도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도 부보상품에 포함시키면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충분히 제도 수용이 가능함

2)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보상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운영과정의 불법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가 부실에 빠져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함⁷⁰⁾

- **(보호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사기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금융회사의 부실로 불가능해진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함
-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일반투자자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보상하지 않음
- **(장기검토)**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과 자문업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상체계를 마련함⁷¹⁾
- 장기적으로 부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담당할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하여 보상제도를 운영함

69) 정대섭(2017b)

70) 하홍운·김정석(2006)

71) 장기검토과제로서 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I〉를 참고하길 바람

3) 고려사항

가)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형평성 문제

- 금융소비자 보호범위를 금융회사의 위법 및 불완전판매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완전판매 비율 등 평판과 책임성 지표보다 투자수익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됨
 - **(금융회사)** 투자수익률을 우선하는 소비자에 맞추어 금융회사 운영의 우선순위를 완전판매와 준법 등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유인이 생김
-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의 예는 피해자 보상이 금융회사 채권자의 변제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
 - **(후순위채 채권자)** 다른 채권자와 비교하여 금융회사의 파산 시 채권 회수를 위한 우선순위가 낮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음
 - **(형평성)** 후순위채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을 위해 파산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에서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들과 경합시키는 것은 채권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나) 보상재원 및 운영주체

- 보호범위의 확대에 따른 재원은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업법에 따른 과징금⁷²⁾을 금융회사의 위법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투자자 보상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⁷³⁾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사용함
 - **(과거 피해액)**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의 피해자 배상결정금액은 1,420억 원,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의 피해자 손해배상액은

72) 자본시장법 제428조, 429조 및 429조의2 보험업법 196조 은행법 65조의3 등 금융법에서 정한 과징금임

73)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추후 같은 이유로 인한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책임성에도 부합함

625억 원이었음

-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 불법행위에 따른 대규모의 피해자 배상금액은 과징금 등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임
- **(과징금)**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금액은 규모가 작아 금융회사의 과징금을 적립하여, 별도의 분담금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함
 - 금융권역 전체의 과징금 납부액은 2019년에 345억 원, 과거 3년간 과징금 납부액은 642억 원에 달하였음
 - 금융투자회사의 2019년 과징금 납부액은 117억 원이었고, 과거 3년간의 과징금 납부액은 250억 원에 달하였음
-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반면 2019년 12월 말 현재 통합 예금보험 계정별 적립액은 은행 9.5조 원, 생명보험 5.1조 원, 손해보험 1.4조 원, 금융투자 3,000억 원에 각각 달하고 있음
 - 과징금을 통한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여 별도의 분담금 각출 없이 피해자 보상제도를 운영함

〈표 III-19〉 최근 3년간 금융회사 과징금

(단위: 개, 백만 원)

금융업	금융회사	기업 수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은행	15	344	1,466	8,842
저축은행	저축은행	37	583	331	8,325
금융투자	증권	34	4,352	8,172	8,649
	투자자문	3	-	204	1,630
	자산운용	47	128	275	847
	종합금융	1	-	-	20
	선물	1	-	40	-
	부동산신탁	2	-	1	-
	신기술금융	5	39	8	552
	합계	93	4,519	8,700	11,698
여신전문업	카드	8	85	37	85
	할부금융	26	814	362	257
	리스	6	35	64	-
보험업	생명보험	20	9,469	661	4,855
	손해보험	11	159	2,597	412
금융지주		2	18	-	-
전체 합계		218	15,501	14,216	34,473

자료: CEO 스코어

- 보호범위 확대 시 기존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도 부보상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구 및 기금에서 운영이 가능함
 - **(원본손실 금융상품 보장)**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의 보호 사각에 있던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넘어서는 범위를 보장함
 - **(운영주체)** 금융회사의 부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므로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주체를 활용하면 제도의 수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과 자문업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상체계와 이를 운영할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IV.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1. 현황

가. 예금보험기금 자금조달

-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및 출연금, 정부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차입금,⁷⁴⁾ 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채권의 회수자금, 기매입 예금채권 등의 회수자금,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함
 - **(제도 경과)**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 **(재원 구성)** 예금보험기금 중 예금보험기금계정에는 2003년부터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⁷⁵⁾의 55%와 부보금융회사 출연금⁷⁶⁾ 등이 재원으로 사용됨
 - **(특별계정)** 예금보험기금 중 각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에는 2003년부터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행, 외부차입금, 회수자금 등이 재원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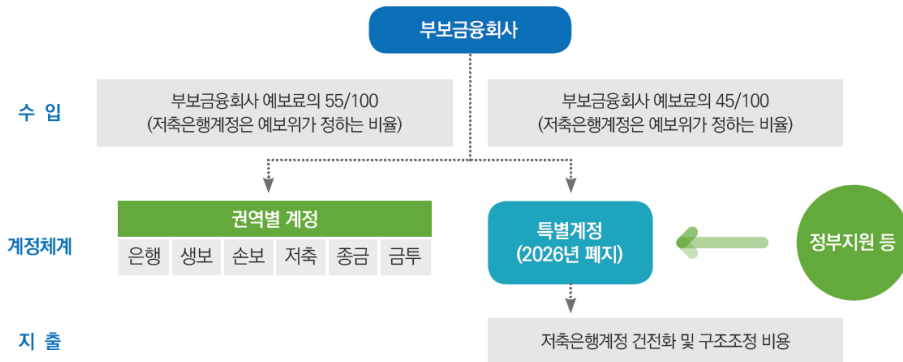
74)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은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수 있음

75) '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의 경우 매 분기)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76)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영업 또는 설립)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한 차례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그러나 부보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출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지 않음

- 다만, 상호저축은행권역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 보험료를 납부함

〈그림 IV-1〉 예금보험기금의 수익 및 지출 구조



자료: 예금보험공사(2019)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예금보험료)**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 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적용함
 - **(납부시점)**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함

〈표 IV-1〉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단위: 십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은행	4,871	395	420	437	468	501	525	534	8,150
금융 투자회사	266	-	-	-	-	-	-	4	270
생명보험	2,853	22	81	128	186	235	247	243	3,994
손해보험	666	49	45	71	81	88	97	102	1,199
종합 금융회사	26	0.8	0.6	0.4	0.7	0.9	0.9	1.0	31
상호 저축은행	1,428	25	26	6	30	29	14	25	1,582
특별계정 합계	756	667	616	712	682	824	910	936	6,104
합계	10,865	1,159	1,187	1,355	1,446	1,677	1,794	1,844	21,328

주: 2019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

■ 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특별기여금⁷⁷⁾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함

- (특별기여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

77) '특별기여금'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예금등 잔액의 일정한 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특별기여금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2년에 수립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이 2003~2027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정분담금임

- (기타 재원) 이 밖에 예금보험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채권의 회수자금, 구매입 예금채권 등의 회수자금,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에 지원된 자금의 회수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함

〈표 IV-2〉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억 원)

구분	상환기금 설치 전 보험료 수입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98 前 ³⁾	'99 ~'02	합계	'03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은행	161	1,311	1,472	5,868	897	959	979	1,066	1,134	1,201	1,257	13,361
금융투자	-	69	69	180	20	20	18	24	27	30	31	350
보험사	232	824	1,056	1,638	300	318	351	384	417	433	451	4,292
생보	180	665	845	1,310	230	239	262	284	307	313	323	3,266
손보	52	159	211	328	71	79	90	100	110	120	128	1,025
종합금융	98	84	182	10	0.9	0.7	0.7	0.8	1.0	1.1	1.2	17
상호저축	241	183	424	464	39	32	31	35	40	47	54	743
신협	40	149	189	120	25	26	28	30	33	-	-	262
합계	772	2,619	3,392	8,280	1,283	1,356	1,407	1,540	1,653	1,712	1,793	19,024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임

2) '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됨

3) '98년 보험료 수입은 '98년 4월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98년 6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함

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2002. 12. 26.> 제6조에 따라 신협의 특별기여금 납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

-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 분의 5', 즉 50bp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⁷⁸⁾을 연간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함

- (예금보험료율) 은행은 8bp,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는 15bp, 저축은행은 40bp 등 권역별로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함

78) 당해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납부함

- **(특별기여금요율)**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는 10bp, 저축은행은 5bp를 적용함
- **(출연금요율)** 설립출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의 100bp,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은 50bp를 적용함

〈표 IV-3〉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	특별기여금 요율	출연금 요율
은행	8/10,000	1/1,000	1/100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5/10,000	1/1,000	1/100
보험회사	15/10,000	1/1,000	1/100
종합금융회사	15/10,000	1/1,000	5/100
상호저축은행	40/10,000	1/1,000	5/100
신용협동조합	-	5/10,000	-

자료: 예금보험공사

-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예보법 제26조)
 - **(외부차입)** 예금자보호법은 한은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한은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차입규정)** 한국은행법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는 한은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음

나. 목표기금제도

-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System)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융권역별로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09년 1월 도입되었음
 - **(목표기금 도입)** 2009년 1월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할 금액 수준의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목표를 설정함
 - 목표규모(목표적립률)은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 부보예금(Insurable Deposit)의 일정 비율로 설정함⁷⁹⁾
 - **(보험료 감액과 면제)**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목표가 달성되면 동 부보금융권의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 납부가 감면되며, 직전년도의 기금적립률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됨
 - 예를 들어, 2013년에는 금융투자회사는 기금적립률이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하여 면제를 받았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여 각각 45%, 7%의 감액을 받음
 - **(감면율 근거 불명확)**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감면율 수준을 각 권역별 계정 예상 운용수익, 수입 및 지출 등의 가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음

79)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표 IV-4〉 예금보험 계정별 기금적립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0.638% (하한 미달)	0.655% (하한 미달)	0.688% (하한 미달)	0.664% (하한 미달)	0.676% (하한 미달)	0.690% (하한 미달)	0.715% (하한 이하)
생명보험	목표규모 하한	0.660%						
	목표규모 상한	0.93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0.918% (하한 초과)	0.860% (하한 초과)	0.858% (하한 초과)	0.831% (하한 초과)	0.807% (하한 초과)	0.810% (하한 초과)	0.832% (하한 초과)
손해보험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0.923% (하한 초과)	0.829% (하한 초과)	0.775% (하한 미달)	0.741% (하한 미달)	0.717% (하한 미달)	0.706% (하한 미달)	0.711% (하한 이하)
투자매매증개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528% (상한 초과)	1.940% (상한 초과)	1.714% (상한 초과)	1.252% (상한 초과)	1.204% (상한 초과)	1.025% (하한 초과)	1.138% (상한 초과)
상호저축은행	목표규모 하한	1.650%						
	목표규모 상한	1.92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4.228% (하한 미달)	-5.389% (하한 미달)	-5.464% (하한 미달)	-4.703% (하한 미달)	-3.789% (하한 미달)	-3.3303% (하한 미달)	-2.964% (하한 이하)
종합금융	목표규모 하한	(대상 부보금융회사 수가 1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 유보)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831%	3.803%	3.632%	3.047%	2.395%	2.905%	2.206%

주: 1) 목표규모(목표적립률):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 부보예금의 일정 비율임

2) 기금적립률: 계정별 결산서상 자본 총계 / 계정별 공사의 직전회계연도 말 부보예금

자료: 예금보험공사

다. 차등요율제도

-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은 고정보험료(Flat-rate or Fixed-rate Premium)와 차등보험료(Differential Premium) 또는 위험보험료(Risk-based Premium)로 구분됨
 - **(고정보험료율제도)** 고정요율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재무상황 등에 관계없이 개별금융회사의 자산, 부채, 보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임
 - **(차등보험료율제도)** 차등요율은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는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1항의 개정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됨
 - **(도덕적 해이 억제)**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도모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각국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억제시키고자 함
 - 즉,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선행행위를 억제시키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
 - **(보험료 형평성)**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위험의 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평가모형 구분)**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여부 등에 따라 크게 ① 차등모형 평가, ②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③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됨
 - 이 중 차등모형 평가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성됨
 - 기본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나타내는 위기대응,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건전성 관리, 수익성을 나타내는 손실회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보완평가부문은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과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등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으로 구성됨

- (차등보험료율제도 연착륙 유도)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보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2017년부터는 등급 간 차등폭이 확대되는 본격 가동기간으로 설정하여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함

〈표 IV-5〉 차등평가의 구분

구분	대상	평가방법	적용요율
차등모형 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외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차등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소액보험료 납부 부보금융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외 적용 평가	부실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a)

〈표 IV-6〉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¹⁾ 대비)

구분	소프트랜딩 기간		평가방법		
	2014~2015년	2016년	2017~2018년	2019~2020년	2021년~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0%	0%	0%	0%	0%
3등급(할증)	+1%	+2.5%	+5%	+7%	+10%

주: 1)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a)

2. 목표기금 재설정

가. 문제점

-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사전적립에 기초한 목표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목표기금 수준과 달성기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기금 수준의 투명성 부족)** 목표기금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목표기금액 및 감면율 설정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여 산출기준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목표기금 도달가능성)** 한편, 목표기금액이 정액이 아닌 정률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기금액 도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 또한 존재함

- 무엇보다 금융환경 변화와 괴리된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산업의 사회적 기능 약화 문제를 유발하거나, 기금운영의 지속성에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과다적립에 따른 문제)** 기금 산정에 자본규제 강화 이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목표기금이 과다 추정되어 금융산업의 자금운영 효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사회적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과소적립에 따른 문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손실 충당이 불가능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예상치 못한 손실 흡수를 위해 권역별로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됨
 - **(은행: Basel III)** 자기자본을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대출 부실화가 은행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 **(금융투자: NCR)** 기존 NCR제도는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으로 산출하였으나, 2016년 개정된 신 NCR은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함
 - 한편, 외부차입에 따른 자산증가 현황을 표시해 금융투자사의 과다한 부채경영을 억제하고자 2016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함
- **(보험: RBC)** 보험회사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RBC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2009년에는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RBC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리스크 측정 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의 상향조정, 장수리스크 반영 등 자본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으로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금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표 IV-7〉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규제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제도	BIS 자기자본 규제	NCR 규제	RBC 규제
산식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반영 위험	시장, 신용, 운영	시장, 신용, 운영	시장, 신용, 운영, 보험, 금리
기준	8%	100%	100%
도입	1992년 (‘08년 바젤 II, ‘13년 바젤 III)	1997년 (‘16년 개편)	1999년 (‘09년 RBC)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과 보험업은 저축기능 위주의 유사한 사업모형을 견지하였으나, 이후 양 권역 간 사업모형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함

- **(사업모형 변화: 부채구조)**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환매 가능성이 낮은 보장성보험이나 연금 등의 적립금 비중이 높아진 상황임

- (사업모형 변화: 자산구조) 장기국채 등 유동성이 풍부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사업모형의 변화가 진행 중이나 목표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음
 - 보험회사가 보유한 안전자산 비중은 2000년 31.7%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기준 50.3%로 크게 늘어남
 - 저금리 장기화로 최근 안전자산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 여전히 높은 상태임

〈표 IV-8〉 생명보험 상품비중(부채구조)의 변화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연금상품	21.6	27.2	28.1	32.7	35.6
일반 저축성보험	49.3	13.1	13.1	18.4	12.5
보장성보험	29.1	46.1	35.4	31.3	36.8
변액보험	-	13.6	23.4	17.6	15.1

주: 연금상품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변액연금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표 IV-9〉 생명보험 자산구조의 변화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현금 및 예금	6.8	2.5	4.0	2.7	2.3
국공채 및 특수채	14.9	37.4	44.2	48.2	41.5
약관대출	10.0	11.8	10.4	7.1	6.5
안전자산 합계	31.7	51.7	58.6	58.0	50.3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해외사례

1) 주요국의 목표기금 운영 현황

■ 대부분의 G7 국가에서는 목표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금의 설정방식에서는 금융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⁸⁰⁾

- **(예금자보호제도)** 전 세계 113개 예금보험기구를 대상으로 한 IADI(2018b)의 조사결과, 응답국(69개) 중 64개 기구가 사전적립방식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44개 기구가 목표기금제(Target Ratio)를 적용하고 있음⁸¹⁾
 - 목표기금제도를 운영 중인 대다수 국가는 목표대상(Fund Target)으로 적립금액(Fund Amount)보다는 적립비율(Target Ratio)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하마와 일본의 경우만 목표대상으로 적립금액을 사용하고 있음
 - 목표적립률 설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호한도에 속한 보호예금(Insured or Covered Deposits) 또는 부보요건을 충족하는 전체 부보예금(Insurable or Eligible Deposits)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목표적립비율을 일정 범위로 적용하는 국가들은 적립비율을 일정 범위로 설정한 후 기금적립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함
 - 목표기금 규모 달성을 위한 기간은 중기(5~10년)로 설정하는 기구가 응답국의 절반 이상임
-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일본, 프랑스, 독일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에서 목표기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예를 들어, 일본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경우 적립금이 4,000억 엔에 달할 때까지 회원사의 부담금으로 사전 적립하며, 기금적립액이 4,000억 엔을 초과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사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싱가포르르는 사전분담금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며, 기금 부족 시에는 사후분담

80) G7 국가의 금융권역별 보호기금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IV>를 참조하길 바람

81) 주요국의 목표적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V>를 참조하길 바람

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

- 한편, 사후각출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는 독일의 건강보험, 호주 손해보험, 미국의 생명 및 손해보험, 캐나다 생명보험은 목표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투자자보호제도)**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목표기금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임
- 예금자보호제도에서는 G7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율' 방식을 통해 목표기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금액' 방식을 통해 목표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예를 들어, 독일 EdB는 단기간에 보험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적립규모(가장 최근에 징수한 보험료 합계의 2배)를 설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100억 유로의 목표기금액을 설정하고 있음

〈표 IV-10〉 G10 국가의 기금적립방식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유형	적립	목표	적립	목표	적립	목표	적립	목표
미국	RM	사전	○	사후	×	사후	×	사전	-
일본	LM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영국	P+	혼합	-	혼합	-	혼합	-	혼합	-
프랑스	LM	혼합	○	혼합	○	사전	○	사전	○
독일	RM	사전	-	혼합	○	사후	×	사전	-
이탈리아	LM	사전	○	None		사전	-	사후	-
캐나다	LM	사전	○	혼합	○	혼합	○	사전	-
스웨덴	P+	사전	-	None		None		사후	-
네덜란드	P+	사전	-	None		None		혼합	-
벨기에	P	사전	-	None		혼합	-	혼합	-
스위스	P	사후	-	-	-	혼합	-	None	
한국	RM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주: 1) 예금보험기구 유형: Paybox(P), Paybox Plus(P+), Minimizer(LM), Risk Minimizer(RM)

2) 기금적립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혼합방식(사전+사후)

2) 국제기구 권고사항

-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목표기금 설정 시 금융시스템 구조, 법적 체계, 건전성 규제, 감독 및 정리제도, 거시경제 환경, 긴급자금지원 접근성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음⁸²⁾
- **(금융시스템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수, 예금보험기구의 리스크익스포저, 금융기관 재무현황, 예금자 및 상품 유형, 금융기관 상호연관성, 파산 확률, 예금보험기구의 손실 경험
 - **(법적체계)** 예금보험기구의 권한, 파산법과 별도의 정리체계 보유 여부, 사법제도, 금융거래 관련법 등
 - **(건전성 규제, 감독 및 정리제도)** 예금보험기구의 부보은행 취약성 적시발견·조기개입권한, 정리방식 및 권한 보유 여부
 - **(거시경제 환경)**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부보금융기관 파산가능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상황
 - **(긴급자금 활용)**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긴급유동성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차입 등 외부자금의 조달방안
 - **(기타 요소)** 회계 및 공시제도, 기금 증가율, 시스템 위기 등

〈표 IV-11〉 목표기금 설정 시 반영 요인

(단위: 개)

금융시스템 구조 및 특징	법체계	건전성 규제 및 정리제도	거시경제 환경
33(75%)	29(66%)	24(55%)	24(55%)
긴급자금지원 접근성	회계 및 공시제도	기타	-
14(32%)	7(16%)	12(27%)	-

주: 목표기금제를 운영 중인 44개 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함
 자료: IADI(2018b)

82) IADI(2018b); IADI(2015)

3) 자본규제 강화와 금융회사 파산확률

- 해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보다 강화된 자본규제는 금융회사의 파산확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함⁸³⁾
 - **(자본규제와 파산확률 간 관계)** 자기자본규제는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 크기와 위험도에 비례하여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금융회사의 추구하는 위험을 모두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파산 확률을 낮출 수 있음
-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파산확률 감소는 위험추구 행위(Risk-taking Behavior)나 산업경쟁도(Competitive Effect)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⁸⁴⁾
 - **(금융회사 위험추구 행위 억제)** 자본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회사의 위험추구 행위는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금융회사 파산 시 지분보유자(Equity-holder)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주주(Shareholder)가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낮아짐
 - **(부실 금융기관의 시장진입 억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산업 경쟁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요구자본 수준은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본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요구자본에 대한 부담 증대로 파산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방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목표기금은 단기적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의 보험회사 파산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음⁸⁵⁾

83) EIOPA(2019); Caporale et al.(2017); Song et al.(2017)

84) Furlong and Keeley(1989); D'erasmo(2018)

다. 개선방안

-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등 정책목표 미도달 가능성)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목표기금 평가 시 개별 항목에 경영환경 변화, 규제환경 강화, 사업모형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상손실액의 구성요인) 목표기금 수준(예상손실액, Expected Loss)은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위험노출액(EAD: Exposre at Default)으로 구성됨

$$Expected\ Loss = PD \times LGD \times EAD$$

- 과거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부도확률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 부도확률을 산출하는 방식 중 통계적 모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파산확률을 추정한 후 예상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부도확률: PD) 금융회사 부도확률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① 과거 실제 파산확률(Historical Failure Rates), ② 신용평가등급(Rating Agency-based Forecasts), ③ 파산확률추정을 위한 통계적 모형(Statistical Model) 등이 있음
 - (사업모형과 자본규제의 반영) 파산확률 모형(Reduced Form)에 각 금융권역의 사업모형상 특징(상품구성의 변화), 자본규제 강도(자본 수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⁶⁾

85) 미국, 캐나다 보험회사의 파산 건수 추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VI>를 참조하길 바람

86) Caporale et al.(2017); Nolte and Khan(2017)

3. 자금조달방식 재검토

가. 문제점

-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기금 조성방식으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금조성방식과 관련하여 적합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1) 단일기준의 기금적립

- 전 금융권역에 걸쳐 획일화된 사전적립방식의 기금조성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부보 금융회사들의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비효율성)** 신속한 정리와 대규모 적립기금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권역의 경우 획일적인 기금조성방식은 자금운영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에서는 각 금융권역별로 기금조달방식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차이에서 비롯한 정리방식에 일정 부분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은행)**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리의 속도를 중시함에 따라 신속한 정리와 사전적립기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임
 - **(보험)** 반면, 보험업은 보험회사 간 상호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정리의 속도보다는 계약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간을 두고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생명보험이나 연금과 같이 보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파산한 보험회사의 고객에게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청산방식을 취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전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는 청산방식을 통해 보험 가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고연령층에 접어

든 보험계약자는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임

- 따라서 최근 효율적인 정리제도로의 개편 논의를 감안해 볼 때, 현재와 같이 전 금융권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식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II-1장(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참고하기 바람

2) 예금보험료 부담

- 사전적립제도에서 예금보험료 부담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환경이나 경기불황 시 금융회사의 파산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기순응성)**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등과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차등보험료의 경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변화와 도산위험에 근거하여 부과되므로, 경기 악화 시 높은 예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부보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켜 부도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2018년 기준 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수준은 저축은행과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보험료 부담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예금보험료 부담 수준)** 2018년 기준 권역별 보험료 부담은 저축은행(16.9%), 생명보험(11.4%), 은행(5.8%), 손해보험(5.4%)의 순임
 - **(총예금보험료 부담 수준)** 한편,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당기순이익 대비 총예금보험료 부담은 최근 5년 사이 20%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표 IV-12〉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 추이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표준편차
은행	9.6	16.0	27.5	7.7	5.8	8.8
저축은행	72.6	34.2	8.1	14.7	16.9	26.1
생명보험	6.2	8.2	15.2	11.2	11.4	3.4
손해보험	3.6	4.8	4.2	4.1	5.4	0.7

주: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 비중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표 IV-13〉 금융권역별 총예금보험료 부담 추이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표준편차
은행	21.7	35.7	62.0	17.3	13.1	19.8
저축은행	90.6	42.8	12.2	18.6	21.1	32.1
생명보험	13.6	15.4	26.9	19.0	19.1	5.1
손해보험	7.0	8.1	7.1	6.9	9.1	1.0

주: 당기순이익 대비 총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상환기금특별기여금) 비중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을 ① 권역별 수익성과 ② 예금보험료 수준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저금리 장기화로 당기순이익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가) 금융권역별 수익성

-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권역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추세임
- (은행)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회사 간 경쟁 심화,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음
 -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과 높은 자산증가율을 바탕으로 ROA와 ROE가 타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2008년부터 계속된 적자가 7년 만인 2014년(2014년 7월~2015년 6월)에 연간 기준 흑자로 전환함
- **(보험)** 보험회사의 이익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발생하는데, 시장포화로 보험영업이익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영업이익 실현 또한 제한적인 상황임
- 특히, 생명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LAT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된 상태임

〈표 IV-14〉 금융권역별 ROE 추이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1.37	5.88	7.34	7.93	6.98
저축은행	6.71	8.07	8.61	7.61	7.56
생명보험	5.83	3.67	5.71	5.55	3.87
손해보험	9.59	11.24	11.39	8.86	5.48

주: 국내 일반은행 기준임

자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나)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수준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타 권역 대비 예금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료 증가율)** 최근 5년간 권역별 예금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험(22.8%), 손해보험(20.6%), 상호저축은행(9.5%), 은행(5.8%) 등의 순임
 - **(총예금보험료 증가율)** 최근 5년간 권역별 총예금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손해보험(16.2%), 생명보험(15.1%), 상호저축은행(9.6%), 은행(5.8%) 등의 순임

〈표 IV-15〉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은행	763	794	850	910	955	5.8%
저축은행	130	124	68	153	187	9.5%
생명보험	202	297	369	437	459	22.8%
손해보험	84	129	147	161	177	20.6%
합계	1355	1446	1677	1794	1,844	8.0%

주: 1) 고유계정과 특별계정 보험료 합계 실적임

2) 합계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표 IV-16〉 금융권역별 총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상환기금특별기금)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은행	1,722	1,773	1,916	2,044	2,156	5.8%
저축은행	162	155	103	194	234	9.6%
생명보험	440	559	652	744	772	15.1%
손해보험	163	219	247	271	297	16.2%

주: 고유계정, 특별계정, 상환기금특별기금 보험료 합계 실적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① 부보금융기관 변화

■ 2019년 말 기준 전체 부보금융회사는 321개사로, 2014년 대비 19개사가 증가하였으나 권역별 부보금융회사 변동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권역별) 은행, 저축은행, 보험권역의 부보금융회사의 변동폭은 크지 않으며, 주로 금융투자회사의 시장진입 및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표 IV-17〉 금융권역별 부보금융회사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56	58	60	56	56	54
저축은행	81	80	80	80	80	80
보험회사	48	48	47	47	44	45
생명보험	25	25	25	25	24	24
손해보험	23	23	23	22	20	21
금융투자회사	116	114	104	110	124	141
종합금융회사	1	1	1	1	1	1
합계	302	301	292	294	205	321

주: 1) 부보금융회사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됨

2) 부보금융회사는 인·허가일부터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일 전일까지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② 부보예금 변화

■ 예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보예금은 2018년 기준 2,103조 원이며,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7.3% 증가함

- **(은행)**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의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된 상태임
-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타 금융권역과 달리 부보예금 증가율 상승세가 지속되며, 연평균 15.8%의 부보예금 증가율을 기록함
 - 이는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제공, 대출 등 영업 활성화에 따른 부보예금 조달 증가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저축은행 예금의 퇴직연금상품 운용 대상 편입⁸⁷⁾ 등의 효과도 존재한 것으로 보임
- **(보험)**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장기인보험 상품 수요 확대로 부보예금이 증가해왔으나, 최근 들어 신계약 성장 한계로 부보예금 성장률은 둔화된 상태임

87)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2018. 9. 7 시행)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신용평가등급 투자자격 이상인 저축은행의 예·적금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운용대상 편입이 가능해짐

〈표 IV-18〉 금융권역별 부보예금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은행	970	1,065	1,141	1,198	1,244	6.4%
(개인)	N.A.	490	602	633	647	-
(법인)	N.A.	408	539	566	597	-
저축은행	32	37	44	51	58	15.8%
생명보험	446	487	532	564	584	7.0%
손해보험	120	138	155	172	187	11.8%
합계	1,587	1,752	1,900	2,017	2,103	7.3%

주: 1) 부보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은행·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에서 예금자가 정부·공공기관·부보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임

2) 합계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해외사례

1) 주요국의 기금조성 현황

■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① 사전적립(Ex-Ante Funding), ② 사후각출(Ex-Post Settling-Up), ③ 혼합방식(Hybrid or Mixed Funding)으로 구분됨⁸⁸⁾

- (사전적립방식) 금융회사의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금융회사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사전에 징수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기금적립방식임
- (사후각출방식) 금융회사 파산 후 소요되는 정리비용을 사후적으로 생존해 있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징수하거나 차입을 통해 기금을 조달하는 무기금 방식임
- (혼합방식) 사전적립방식과 사후분담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보험료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88) G7 국가의 금융권역별 보호기금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IV〉를 참조하길 바람

-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보호제도와 투자자보호제도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경우 혼합방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

- **(예금자보호제도)** G7 국가 중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이 사전적립방식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임
 -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69개국을 대상으로 한 IADI(2018b)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중 64개 기구가 사전적립방식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임
- **(투자자보호제도)** G7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전적립방식의 투자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임
 - 영국은 혼합방식 형태의 투자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임
- **(보험계약자보호제도)**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최소한의 사전적립기금을 유지하고 부실 발생 시 사후각출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가 많음
 -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운영 중인 G7 국가 중 일본만이 사전적립제도를 운영 중이며, OECD 회원국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사전적립, 사후각출, 혼합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⁸⁹⁾
 - 일본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적립금이 4,000억 엔에 달할 때까지 회원사의 부담금으로 사전 적립하며, 기금적립액이 4,000억 엔을 초과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사는 부담금 납부가 면제됨
 - 사후각출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는 독일의 건강보험, 호주의 손해보험, 미국의 생명 및 손해보험 등은 별도의 사전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89) OECD(2013)

〈표 IV-19〉 G10 국가의 기금적립방식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조달방식	차등요율	조달방식	차등요율	조달방식	차등요율	조달방식	차등요율
미국	사전	○	사후	×	사후	×	사전	×
일본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영국	혼합	○	혼합	○	혼합	○	혼합	○
프랑스	혼합	○	혼합	×	사전	×	사전	○
독일	사전	×	혼합	○	사후	○	사전	○
이탈리아	사전	○	None		사전	×	사전	-
캐나다	사전	○	혼합	○	혼합	×	사전	○
스웨덴	사전	○	None		None		사후	-
네덜란드	사전	○	None		None		혼합	-
벨기에	사전	○	None		혼합	×	혼합	-
스위스	사후	×	-	-	혼합	-	None	
한국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주: 자금조달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혼합방식(사전+사후)

■ 1991년 미국이 위험기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캐나다, 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권역별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현황을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서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나타남
 - 미국은 부보은행의 자본비율과 감독등급을 기초로 총 4등급의 차등보험료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보험료 부과기준을 곱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를 산출함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15년 역내 통일된 분담금 산정체계 적용을 위하여 분담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⁹⁰⁾
- **(투자자보호제도)** 캐나다, 독일 등에서 차등요율제도를 운영 중임
 - 캐나다는 회원사로부터 사전 적립되며, 회원사의 위험수준 및 고객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함

90) EBA(2018)

- 일본은 연간 50억 엔을 총부와 규모로 하여 회원사 수(10억 엔), 영업수익(20억 엔), 보상대상 고객 자산규모(20억 엔)에 따라 개별회원사에 부과함
- **(보험계약자보호제도)** IFIGS(2015)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에서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응답국의 29%임
- 예를 들어, 독일 생명보험은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각사의 준비금은 보험상품의 구성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차등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음⁹¹⁾
- 한편, 싱가포르의 보험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4단계(Low, Medium Low, Medium High, High)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자본적정성 지표와 경영성과 지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함

2) 보험료 감당가능성: 보험료 또는 보험료율 한도 설정

-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제도)** 사전적립기금을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에서는 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투자자보호제도)** 독일은 고객자산 보유 가능 여부, 자기계정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금융회사 연 총수익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한편,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직전 회계연도 순영업이익의 0.25%이며, 기금규모가 목표수준을 상회하거나 향후 6개월 이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순영업이익의 최대 0.02%까지 하향 가능함
- 일본은 기금의 규모가 목표 수준인 500억 엔을 상회할 경우 부과를 중단하며, 2003년부터 목표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징수가 중단됨
-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일본과 영국은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과도하여

91) Verordnung über die Finanzierung des Sicherungsfonds für die Lebensversicherer

경영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적립단계에서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은 사후각출 단계에서 보험료를 상한을 설정함

- 한편, 유럽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EIOPA(2018)의 조사 결과, 개별 보험회사 (11개국) 또는 보험산업(8개국) 대상으로 연간납부 보험료의 상한 설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음⁹²⁾

〈표 IV-20〉 G10 국가의 예금보험료 감당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적립	보험료 한도		적립	보험료 한도		적립	보험료 한도		적립	보험료 한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미국	사전	-	-	사후	-	○	사후	-	○	사전	○	-
일본	사전	○	-	사전	○	-	사전	-	-	사전	-	-
영국	혼합	-	-	혼합	○	-	혼합	○	-	혼합	-	-
프랑스	혼합	-	-	혼합	-	○	사전	-	-	사전	-	-
독일	사전	○	-	혼합	-	○	사후	-	○	사전	○	-
이탈리아	사전	-	-	None			사전	-	-	사후	-	-
캐나다	사전	-	-	혼합	-	-	혼합	-	○	사전	-	-
한국	사전	-	-	사전	-	-	사전	-	-	사전	-	-

3) 경기순응성 대응: 경기조정 보험료

■ FDIC 이사회는 목표적립률(DRR: Designated Reserve Ratio) 결정 시 과거 손실경험 등 다음과 같은 요인을 반영하도록 권고함⁹³⁾

- 부보금융회사의 과거 손실 사례 및 잠재위험을 포함한 당해 연도 또는 향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위험
- 부보금융회사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
 - 경기호황기에는 목표적립률(DRR)을 높이고 경기불황기에는 목표적립률을 낮

92) EIOPA(2018)

93) FDIC(2019)

추는 방안 강구

-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 방지장치
- ‘Reform Act. 12 U.S.C. § 1817(b)(3)(C)’에 부합하는 기타요인

■ 즉, 목표적립률 결정 과정에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차등보험료의 경우 금융회사의 파산위험에 기초하여 부과됨에 따라 경기불황 시기에 부보금융회사의 부담을 증가시켜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국제통화기구(IMF)⁹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목표적립률 구간)** 예를 들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경기순응성(Pro- cyclicality)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적립률을 특정 수준이 아닌 일정범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4) 사후 기금징수의 신뢰도 제고

■ 사후각출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서는 기금징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의 내부유보(프랑스) 또는 추가보험료 징수 가능(독일, 프랑스)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험료 추가각출을 허용하고 있음

- **(징수신뢰도 제고 장치)** 한편, 홍콩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나, 보험회사 파산 정리과정에서 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승인하에 1% 한도 내에서 추가분담금 징수가 가능함⁹⁵⁾

94) Andritzky et al.(2009)

95) 사전기금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12억 달러, 7,500만 달러이며, 분담금은 수입보험료의 0.07%임

다. 개선방안

- 기금조달방식 유형별로 각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vs. 효율성)** 사전적립방식은 효과성이나 기금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점을 보유함
 - 사전적립방식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파산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기금 적립에 참여함으로써 사후분담에 비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함
 - 수익성이 높은 경기호황 시에 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 파산이 많이 발생하는 경기불황에 대비함으로써 경기변동 충격 완화 등의 장점을 보유함
 - **(행정비용 절감 vs. 자금지원의 신속성)** 사후각출방식은 보험료 부담, 행정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보험료 형평성,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자금지원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단점을 보유함
 -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 파산 사례가 거의 없는 시기에는 사전적립방식에 비해 금융권의 부담이 적고, 보험료 수취 및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없으므로 사전적립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이 가능함

〈표 IV-21〉 사전적립방식과 사후각출방식의 장·단점

구분	사전적립방식	사후각출방식
장점	·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 경기변동 충격 완화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 금융기관의 낮은 보험료 부담 · 기금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
단점	· 사후분담에 비해 높은 초기 비용	· 기금 미비로 정리지연 가능성 · 금융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 우선 현행과 같은 사전적립방식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경우 금융회사의 연간보험료 한도 설정, 경기조정 보험료 등을 통해 예금보험료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간보험료 한도)** 금융권역별 또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보험료 상한 적용이 가능한데, 제도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회사별 상한 설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산업별 상한 설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 **(경기조정 보험료)** 보험료 부담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보험료 책정기준을 당해 연도가 아닌 이동평균지표를 적용하거나 보험료를 산정 시 경기변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동평균법)** 이동평균 방식에 의한 예금보험료 부과방식은 매년 예금보험료를 평가하되 평가된 요율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으로,⁹⁶⁾ 실제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예금보험료 산정 모형 내에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함
- 한편, 사후각출을 혼합하는 방식 도입 시에는 기금징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자본의 내부유보 또는 추가보험료 징수 등의 안전장치 적용이 가능한데, 내부유보 방식이 징수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기금징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장치)** 징수 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내부유보 방식이 추가보험료 징수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함
 - **(제도변경을 위한 고려사항)** 사전적립방식에서 사후각출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전환 시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각 금융권역별로 적립된 기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는 혼합방식제도하에서도 부실 금융기관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임

96) Konstas(1992; 2005); Shaffer(1997); Pennacchi(2005); 한편, Jarrow et al.(2006)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면서도 리스크가 고려된 예금보험료 부과시스템을 제안함. 즉, 경기가 좋을 때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경기가 나쁠 때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며,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함

V.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과제

1.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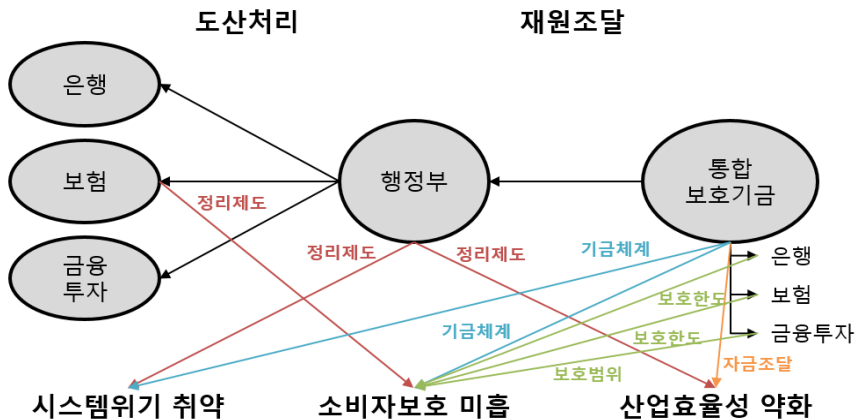
-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함
 - **(정책 실패)** 부적절하게 설계 시 금융회사의 위험추구를 조장하여 금융전반에 걸친 위기를 초래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 시 효과성, 효율성, 수용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상호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성)** 규제비용으로 직접비용인 제도 운영비용과 간접비용인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최소화해야 함
 - **(수용성)** 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추가적인 규제비용 효율화 등 제도 수용성이 높아야 함

- 현행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시스템 위기 취약)** 시스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리권한 및 재원조달능력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의 암묵적 상호보조를 기대하게 하여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

- **(소비자 보호 미흡)** 시스템 위기가 아닌 부실의 경우, 금융권역별 소비자의 니즈 및 취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제도가 설계되어 실질적 보호가 미흡함
- **(산업효율성 약화)** 거시경제 및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반면 통합제도 운영의 경직성으로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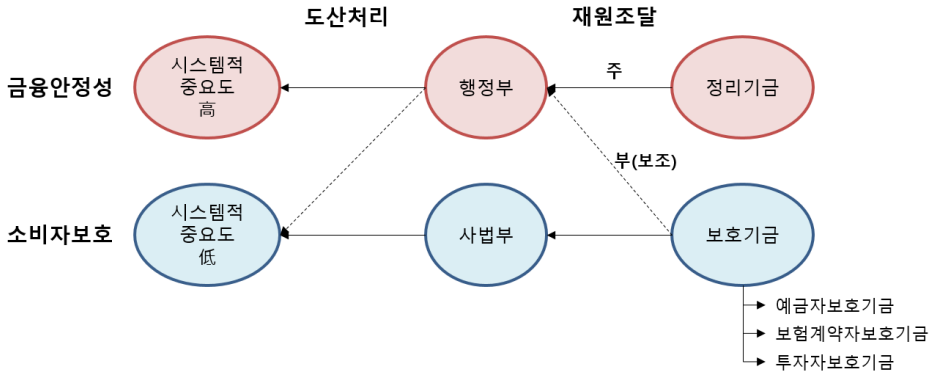
〈그림 V-1〉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안정성 우선)**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해야 함
 - 정리기금은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도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차입 등 보완적 자금조달 수단이 사전에 제도화되어야 함
 - 또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해관계자 손실분담 등)와 함께 재원 사용에 따른 보전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 **(소비자 보호 우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호기금은 금융권역별 소비자의 니즈와 취약요인에 맞춰 보호범위·보호한

도·자금조달 등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그림 V-2〉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향



2. 정책과제

■ 기본 개선방향은 유지하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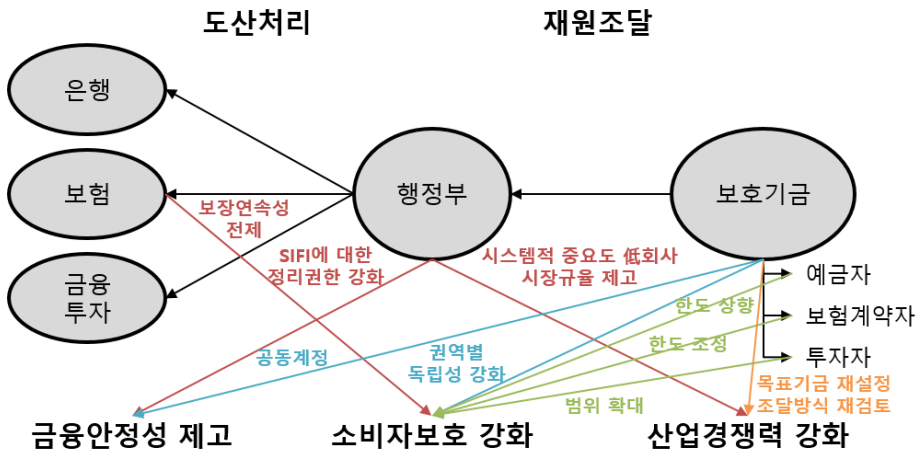
- **(정리제도)**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개별회사 시스템적 중요도 반영
 -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 연속성 유지, 보험계약 조건변경 및 해지 일시정지 도입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권한 강화,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는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적용
- **(기금체계)** 금융권역별 독립성 강화, 시장 안정 공동계정 운영
 - 권역별 기금 분리(단일 기구) 또는 권역별 기구 분리
 - 권역 중심 공동계정 운영 또는 회사 중심 공동계정 운영
- **(보호한도·범위)** 은행 및 보험 보호한도 조정, 금융투자 보호범위 조정
 - 은행: 적립금 보호한도 상향
 - 보험: 적립금(해지환급금) 보호한도 하향, 사고보험금 보호한도 상향
 - 금융투자: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도록 보호범위 확대, 위법행위(불완전판매 등)

관련 손실을 포함하도록 보호범위 확대

○ **(자금조달)** 목표기금 재설정, 조달방식 재검토

- 목표기금 산정 시 경영·규제 환경 및 사업모형 변화를 반영
- 보험료에 대한 연간한도 설정 및 경기변동 반영, 사후각출을 혼합하는 방식 도입(내부유보, 추가보험료 징수 명문화 등으로 보완)

〈그림 V-3〉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제도 개선 시 현행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부방안 비교)** 우선과제는 현행 제도에서 취약도가 높거나 개선 절차가 간단한 과제로 세부 개선방안별 비교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 **(비용-편익 분석)** 차선과제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비용-편익 분석을 사전에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V-1〉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검토사항

구분	내용	우선순위	세부 검토사항
정리제도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 조건변경	1	보험계약 조건변경 방식별 비교 분석
	보험회사 정리 시 계약이전 우선 도산처리 이원화	2	도산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기금체계	권역별 공동계정	1	개별회사별, 금융권역별 시스템 위험 평가
	SIFI 공동계정		
	권역별 기금 분리	2	기구 분리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권역별 기구 분리		
보호한도	은행: 상향	1	보호한도 조정에 따른 규제비용 분석 (권역간 자금이동 및 보험료 감당가능성 등 평가)
	보험: 해지환급금 하향, 사고보험금 상향		
	금융투자·저축은행: 유지		
보호범위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	1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위법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투자자 피해자보상제도 마련	2	
자금조달	목표기금 수준 재검토	1	금융환경 변화가 파산확률 및 손실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험료 연간한도, 경기변동 반영	2	연간한도 책정 방식별 비교 분석 경기변동 반영 방식별 비교 분석
	내부유보, 추가보험료		해외사례 보완

참고문헌

- 강동수(2006),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 강호성·박광우·최원호·한중호(2011), 「국내저축은행 자료를 이용한 차등예금보험 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24(4)
- 고동원·노태석(2010),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11(1)
- 고영미(2014), 「베일인 제도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증권법연구』, 15(2)
- _____(2016), 「글로벌 금융기관의 정리원칙의 국내적 도입: 금산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5(3)
- 광장(2018),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검토』, 「연구용역보고서(손해보험협회)」
- 권세훈·정지만(2014),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안정연구』, 15(1)
- 권은지(2015), 「한국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파산제도」, 『도산법연구』, 6(2)
- 금융위원회(2020. 3. 1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참고자료
- 김기원·이창순(2012),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김대식·박영석·신진영·이준행·정지만(2004),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규모와 보험료를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9(2)
- 김봉한·전선애(2002), 「은행위험에 기초한 예금보험료를 추정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16(1)
- 김용우(1998),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보험가입자 보호」, 『생협』, 234
- 김은정(2016),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3(3)
- 노형식·송민규·연태훈·임형준(2014), 「금융소비자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 류건식·김해식(200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

구원

- 맹수석(2008),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금융안정연구』, 9(2)
- _____ (2017), 「증권회사의 파산과 위험부담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31(1)
- 보험개발원(2018), 『CY2018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 보험연구원(2019),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예금보험 공사)
- 서은숙(201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보호기금)관련 해외 사례」, 한국금융소비자 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
- 안수현(201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
- 안종길·이종욱(2006),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안정연구』, 7(별호)
- 예금보험공사(2001), 『2000 연차보고서』
- _____ (2015), 『유럽의 예금자·투자자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 _____ (2017),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와 예금보험제도』
- _____ (2018a), 『2017 연차보고서』
- _____ (2018b), 『英 FSCS의 통합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 _____ (2018c),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 _____ (2018d), 『주요국의 투자자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사후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 _____ (2019), 『2018 연차보고서』
- _____ (2020), 「예금보험 관련 주요통계」
- 오승곤·이기영·김상수(2011),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예보제도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25
- 윤종미(2016),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 법률』, 26(3)
- 이건범·권은지(2017), 「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경제발전연

- 구』, 23(1)
- 이민환·서대교(2011), 「대형·복합금융회사의 정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 연구』, 12(1)
- 이성복(2018), 『해외 투자자보상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 이순재(2005),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보험부문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 이재연·오승곤(2014), 「우리나라 대형복합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15(1)
- 이한준(2018),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Bail-in)의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1(1)
- 임형석(2014),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KIF 정책보고서』, 한국 금융연구원
- _____(2016),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및 국제적 논의 동향」, 예금보험 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 _____(2018),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은행법연구』, 11(1)
- 임형석·고영호(2015),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KIF 정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 임형석·이재연(2015),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KIF 정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 장동한·최필선(2008), 「신바젤협약의 경기순응성과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보험학회지』, 80
- 전선애·오승곤(2015), 「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연구』, 16(2)
- 전성인(2007),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제도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재무학회·금융감독원 공동심포지엄
- 정대섭(2017a),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 제법무』, 9(2)
- _____(2017b), 「투자자 보호기금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법과 정책』, 23(3)
- 정봉은(201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보험연구원

- 정순섭(2017),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0(2)
- 정지만·오승곤(2010),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금융안정연구』, 11(1)
- _____ (2017), 「예금보험공사의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리스크리뷰』, 14(1)
- 조대형(2014),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902, 국회입법조사처
- 조정래·박진표(20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부실금융기관 처리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BFL』, 7
- 최운열·이진호(2014),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금융안정연구』, 15(2)
- 하홍윤·김정석(2006), 「금융회사의 파산과 투자자보호: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금융리스크리뷰』, 3(2)
- 한국리스크관리학회(2018), 『생명보험산업의 예금자보호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생명보험협회)
- Adema, J., Hainz, C., and Rhode, C.(2019), “Deposit Insurance: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across Countries”, *ifo DICE Report*
- Andritzky, J., Kiff, J., Kodres, L., Madrid, P., Maechler, A., Narain, A., Sacasa, N., and Scarlata, J.(2009), “Policies to Mitigate Procyclicality”, IMF Staff Position Note
- ASIC(2007), “Compensation and Insurance Arrangements for AFS Licensees”, Regulation Impact Statement
- Caporale, G. M., Cerrato, M., and Zhang, X.(2017), “Analysing the Determinants of Insolvency Risk for General Insurance Firms in the UK”,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84

-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a), “Review of the Financial System External Dispute Resolution and Complaints Framework”, Final Report
- _____ (2017b), “Review of the Financial System External Dispute Resolution and Complaints Framework”, Supplementary Final Report
- D’erasmo, P.(2018), “Are Higher Capital Requirements Worth It?”,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Research Department
- Diamond, D. W., and Dybvig P. H.(1983),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3)
- Duan, J. C.(1994),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Using Price Data of the Derivative Contract”, *Mathematical Finance*, 4(2)
- EBA(2018), “Guidelines on Methods for Calculating Contributions to Deposit Guarantee Schemes”
- EC(2004), “Working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MARKT/2513/04
- _____(2005), “Working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MARKT/2529/05
- _____(2010), “White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 EIOPA(2018), “Discussion Paper on Resolution Funding and National Insurance Guarantee Schemes”
- _____(2019), “Consultation Paper on Proposals for Solvency II 2020 Review Harmonisation of National Insurance Guarantee Schemes”, EIOPA-BoS-19-259
- Falkenheim, M., and Pennacchi, G. G.(2003), “The Cost of Deposit Insurance for Privately Held Banks: A Market Comparable Approach”,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4
- FCA(2016), “Reviewing the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 _____(2018), “Reviewing the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Feedback from CP17/36, Final Rules and New Proposals

- for Consultation”
- FDIC(2019), “Designated Reserve Ratio for 2020”
- FSA(1997), “Consumer Compensation”
- ____(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 FSB(2013), “Thematic Review on Resolution Regimes”
- ____(2016a),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Overview of Responses to the Public Consultation”
- ____(2016b), “Second Thematic Review on Resolution Regimes”
- ____(2019), *2019 Resolution Report*
- Furlong, F. T., and Keeley, M. C.(1989), “Capital Regulation and Bank Risk-taking: A Not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3(6)
- IADI(2013), “Enhancing Guidance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Deposit Insurance Coverage”, Guidance Paper
- ____(2015), “Integrated Protection Schemes”
- ____(2018a), “2018 Global Survey on Deposit Insurance and Financial Safety Net Framework”
- ____(2018b), “Deposit Insurance Fund Target Ratio”
- ____(2019), *2018 Annual Survey*
- IAIS(2013), “Issue Paper on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 ____(2017), “Insurance Core Principles – Updated November 2017”
- IFIGS(2015), “Principles of Funding for an Insurance Guarantee Scheme”
- IMF(2014), “Deposit Insurance Database”, Working Paper
- Jarrow, R. A., Madan, D. B., and Unal, H.(2006), “Designing Countercyclical and Risk Based Aggreg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Working Paper, FDIC Center for Financial Research
- Kelly, G.(2017), “Why Insurers Fail: Exit Strategies of P&C Insurers in Canada”, PACICC

- Klein, R. W.(2009), “Insurance Regulation and the Challenge of Solvency II: Modernizing the System of U.S. Solvency Regulation”, NAMIC
- Konstas, P.(1992), “The Bank Insurance Fund: Trends, Initiatives, and the Road Ahead”, *FDIC Banking Review*, 5(2)
- _____ (2005), “A Moving-Average Formula for Calculating Deposit Insurance Assessments”, *FDIC Banking Review*, 17(3)
- Merton, R. C.(1977), “An Analytic Derivation of the Cost of Deposit Insurance and Loan Guarantees: An Application of Modern Option Pricing Theo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1)
- NAIC(2018), “Receiver’s Handbook for Insurance Company Insolvencies”
- Nolte, J. P., and Khan, I. Z.(2017), “Deposit Insurance Systems: Addressing Emerging Challenges in Funding, Investment, Risk-based Contributions and Stress Testing”, World Bank Group
- OECD(2011), “Guarantee Arrangements for Financial Promises: How Widely Should the Safety Net be Cast?”, *Financial Market Trends*
- _____ (2013),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Selected Consider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OECD Publishing
- Pennacchi, G. G.(2005), “Risk-Based Capital Standards, Deposit Insurance, and Procyclicality”,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4(4)
- Sarra, J. P.(2019), “Flotsam, Financing and Flotation: Is Canada Resolution Ready for Insurance Company Insolvency?”, *Annual Review of Insolvency Law*
- Shaffer, S.(1997), “Deposit Insurance Pricing: The Hidden Burden of Premium Rate Volatility”, *Cato Journal*, 17(1)
- Song, Q., Huang, J., Wang, Y.(2017), “Capital Regulation Effects on Insolvency Probability of Commercial Banks in Chin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Mathematics*, 20(1)

부록 I. 보험계약 조건변경 도입 시 고려사항

-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전제로 계약이전 또는 런오프 방식 적용에 따른 보험계약 조건변경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계약이전 대상 보호상품의 범위
 - 부실 정리 시 계약이전 방식 우선
 - 계약자 손실분담 방안
 - 종목별 손실분담 차등방안

1. 계약이전 대상 보험상품

- 보장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품을 계약이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함
 - 장기 보험계약 등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가입조건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해지는 보험상품일수록 계약이전의 필요성이 큼
 - 보험회사 부실 시에도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전을 통하여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중요함
-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의 종류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이 포함됨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은 11개로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

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
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이 포함됨

- 손해보험업의 보험 가입 주체에 따라 기업성보험(해상, 선박, 특종 등)과 가계
성보험(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포함됨

■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위험의 특성 및 사업 모델의 특성상 보험회사 정리 시 계약
종료 방식을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손실이 클 수 있음

- 사망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 새로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가 언더라이팅(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음

■ 연금의 경우에도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수위험(Longevity Risk)
이 증가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연금의 경우에는 위험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요소(Social Element)에서
보다 강한 보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음⁹⁷⁾
- 연금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
호하지 않을 경우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음

97) OECD(2013)

〈부록 표 I-1〉 보험종목의 특성과 계약이전 여부

구분		장기 계약	인적 위험률 변화 ¹⁾	노후보장 체계 관련성 ²⁾	계약이전 대상
생명보험	생명보험	○	○	X	○
	연금 ³⁾	○	X	○	○
손해보험	가계성 보험 ⁴⁾	○	○	X	○
	장기보험	○	○	X	○
	자동차	X	X	X	X
	기업성 보험	X	X	X	X
제3보험	상해 ⁵⁾	○	△	X	○
	질병	○	○	X	○
	간병	○	○	△	○

주: 1) 시간의 흐름(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적 위험률이 변화하는 경우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대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2) 노후소득 측면에서 연금, 노후의료보장 측면에서 간병보험이 노후보장체계와 관련성이 있음. 질병보험은 노인뿐 아니라 유아부터 모든 연령대에 수요가 존재함

3) 연금은 저축성보험으로 보험료가 연령에 따른 인적 위험률의 변화에 연동하기보다는 사망률, 납입기간 및 연금급여액에 따라 달라짐

4) 가계성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단기계약이 주를 이루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계약이 주를 이룸

5) 우리나라의 상해보험은 대부분 장기계약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단기계약임. 상해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이나 질병보험처럼 연령 증가에 따라 위험률이 변하여 연령별 위험률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단일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로 표시함

자료: 보험연구원(2019)

■ 일반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기업성 보험으로 부보 대상이 아니거나 단기 상품임

- 손해보험 종목 가운데 개인용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성보험은 부보대상에 해당됨

■ 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의 가계성 보험 중 장기보험은 인(人)보험에 해당되며, 계약이전의 필요성이 큰 상품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손해보험의 기업성보험은 물(物)보험에 해당되며, 계약이전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2. 보험계약이전 방식의 우선 고려

- 보험계약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이전 방식을 보험회사 부실의 정리방식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현행 예금자보호법상의 최소비용원칙 아래에서 보험계약이전 방식이 청·파산 방식보다 우선하기 어려움
 - 보험계약의 연속성 유지에 따른 사회안전망 기능의 강화 등 보험계약이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이전 대상인 보험회사의 부실 정리에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를 두는 경우,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
 - 예금자 보호법령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를 두더라도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자 손실분담을 명시하여 기금의 손실을 관리할 수 있음

- 최소비용원칙을 유지하면서 계약자 손실분담을 통하여 보험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손실분담 규모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보험계약자의 해지 유인이 높아질 수 있음
 - 최소비용원칙 아래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손실분담 규모를 조정하여 청·파산 방식보다 기금손실 측면에서 최소한 동일하도록 만들어야 함
 - 손실분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해지 증가는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함

3. 계약조건 변경방안 비교

- 계약조건 변경방안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목적, 보험의 단체성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형평성, 소비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분석함

가. 보험가입금액 기준 & 정액방식

- 보험계약자는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는 설정 기준임
- 정액방식은 보호한도 이내의 계약은 전부 보호되므로 다수의 취약한 보험계약자 보호에 유리한 설정방식임
 - 보호한도 이내 계약의 계약자와 보호한도 초과 계약의 계약자 간 보장의 형평성 문제는 존재함
 - 보호한도 초과 계약의 일부보호는 계약자 손실분담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가입금액은 사망보험금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금액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정 기준 및 방식임
 -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 선택 시 보험회사의 부실 시에도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선택할 수 있음

나. 보험가입금액 기준 & 정률방식

- 보험계약자는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는 설정 기준임
- 정률방식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소액 계약자들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게 됨
 -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가입금액은 사망보험금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금액이므로 보험계

약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정 기준임

- 정률방식은 보험가입금액의 단순한 비율 계산을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정액방식에 비하면 소비자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다. 책임준비금 기준 & 정액방식

- 보험계약자가 위험보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보험계약의 특성보다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예·적금과 유사하게 취급하므로 보험가입의 목적과 괴리됨
- 계약조건 변경의 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동일 보험계약이면서도 보험 가입기간이 다른 계약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는 장기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보험계약자일수록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되므로 장기계약인 보험의 특성에 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 보험가입기간이 짧아 아직 책임준비금이 보호한도 이내인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삭감 없이 계약이전이 됨
 - 그러나 장기간 보험료 납입으로 책임준비금이 보호한도를 초과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계약이전 시 책임준비금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삭감됨
- 보험가입금액과 비교해서 책임준비금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용어로 위험보장의 비교 등에서 소비자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라. 책임준비금 기준 & 정률방식

- 보험계약자가 위험보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보험계약의 특성보다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예·적금과 유사하게 취급하므로 보험가입의 목적과 괴리됨

- 정률방식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소액 계약자들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게 됨
 -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가입금액과 비교해서 책임준비금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용어로 위험보장의 비교 등에서 소비자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부록 표 I-2〉 계약조건 변경 방안별 특징 및 장·단점

구분	보험가입금액 기준	책임준비금 기준
정률방식	- 보험계약의 목적인 위험보장에 부합 - 계약자 간 형평성에 유리 - 소비자 이해도 높음 (사례) 영국, 캐나다(전부보호 한도 초과 계약)	- 계약자 간 형평성에 유리 - 소비자 이해도 낮음 (사례) 일본
정액방식	- 보험계약의 목적인 위험보장에 부합 - 취약 계약자 우선 보호 - 소비자 이해도 높음 (사례) 미국, 캐나다(전부보호 한도 내 계약)	- 납입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 - 소비자 이해도 낮음 (사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적용 시

자료: 보험연구원(2019)

4. 보험상품별 계약자 손실분담의 차등화

- 보험회사의 선택 등과 같은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 시 계약자의 책임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손실분담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은 보험회사 선택 시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면도 있으므로 책임성과 손실분담은 비례관계로 볼 수 있음
 -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책임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배상책임보험의 제3자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보험회사 부실에 따른 책임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보험계약자의 책임성에 따라 보호한도를 높여 손실분담을 낮추어도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정액방식 손실분담 방안의 경우, 보호금액을 다른 보험에 비해 높이거나 전부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률방식 손실분담 방안의 경우, 보호비율을 다른 보험보다 높게 정하거나 100% 전부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금리 보험계약은 인수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손실분담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이차역마진으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과거 고금리 계약은 보험회사 계약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금리 계약에 대한 조건변경 가능성은 보험회사의 부실 징후 시 보험계약자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계약해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함

부록 II. 생명보험상품의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부록 표 II-1〉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연금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17.4	19.7	18.6
1천만 ~ 2천만	27.9	32.1	30.1
2천만 ~ 3천만	27.9	23.2	25.4
3천만 ~ 4천만	8.4	8.3	8.4
4천만 ~ 5천만	7.5	6.0	6.7
5천만 ~ 1억	6.7	7.3	7.0
1억 ~ 2억	2.9	2.7	2.8
2억 ~ 3억	0.6	0.4	0.5
3억 ~ 4억	0.3	0.1	0.2
4억 ~ 5억	0.1	0.1	0.1
5억 ~ 10억	0.2	0.1	0.2
10억 초과	0.08	0.03	0.06
건수 합계	4,534,224	4,981,410	9,515,634

주: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2〉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종신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8.2	11.6	9.9
1천만 ~ 2천만	12.4	15.7	14.0
2천만 ~ 3천만	15.5	18.3	16.9
3천만 ~ 4천만	9.3	10.2	9.7
4천만 ~ 5천만	21.5	18.2	19.9
5천만 ~ 1억	26.5	20.6	23.6
1억 ~ 2억	4.4	3.8	4.1
2억 ~ 3억	1.2	0.9	1.0
3억 ~ 4억	0.3	0.2	0.3
4억 ~ 5억	0.3	0.2	0.3
5억 ~ 10억	0.3	0.2	0.3
10억 초과	0.06	0.04	0.05
건수 합계	7,913,479	7,518,266	15,431,745

주: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3〉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정기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31.1	40.7	36.2
1천만 ~ 2천만	13.5	16.3	15.0
2천만 ~ 3천만	11.9	13.9	12.9
3천만 ~ 4천만	3.3	3.5	3.4
4천만 ~ 5천만	14.5	11.6	13.0
5천만 ~ 1억	18.5	10.7	14.4
1억 ~ 2억	5.1	2.5	3.7
2억 ~ 3억	1.3	0.5	0.9
3억 ~ 4억	0.2	0.1	0.2
4억 ~ 5억	0.3	0.1	0.2
5억 ~ 10억	0.2	0.1	0.2
10억 초과	0.05	0.02	0.03
건수 합계	966,709	1,079,848	2,046,557

주: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4〉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상해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62.3	57.4	59.8
1천만 ~ 2천만	20.6	20.1	20.4
2천만 ~ 3천만	10.9	14.5	12.7
3천만 ~ 4천만	1.6	1.9	1.7
4천만 ~ 5천만	3.6	5.0	4.3
5천만 ~ 1억	0.7	0.9	0.8
1억 ~ 2억	0.2	0.2	0.2
2억 ~ 3억	0.0	0.0	0.0
3억 ~ 4억	0.0	-	0.0
4억 ~ 5억	0.0	-	0.0
5억 ~ 10억	0.0	-	0.0
10억 초과	-	-	-
건수 합계	2,455,991	2,529,864	4,985,855

주: 1)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2) '0.0'은 건수는 있으나 수치가 매우 작은 경우를 의미하고, '-'은 건수가 '0'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5〉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질병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42.7	40.4	41.4
1천만 ~ 2천만	24.2	27.8	26.3
2천만 ~ 3천만	11.7	12.6	12.2
3천만 ~ 4천만	3.7	3.7	3.7
4천만 ~ 5천만	13.4	11.3	12.2
5천만 ~ 1억	4.1	3.9	4.0
1억 ~ 2억	0.2	0.2	0.2
2억 ~ 3억	0.0	0.0	0.0
3억 ~ 4억	0.0	0.0	0.0
4억 ~ 5억	0.0	0.0	0.0
5억 ~ 10억	0.0	0.0	0.0
10억 초과	-	-	-
건수 합계	9,555,374	12,948,705	22,504,079

주: 1)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2) '0.0'은 건수는 있으나 수치가 매우 작은 경우를 의미하고, '-'은 건수가 '0'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6〉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건강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51.1	36.3	42.2
1천만 ~ 2천만	28.3	47.4	39.8
2천만 ~ 3천만	9.6	8.8	9.1
3천만 ~ 4천만	2.8	1.9	2.3
4천만 ~ 5천만	3.7	2.6	3.0
5천만 ~ 1억	4.3	2.8	3.4
1억 ~ 2억	0.3	0.2	0.3
2억 ~ 3억	0.0	0.0	0.0
3억 ~ 4억	0.0	0.0	0.0
4억 ~ 5억	0.0	0.0	0.0
5억 ~ 10억	-	-	-
10억 초과	-	-	-
건수 합계	2,394,751	3,646,617	6,041,368

주: 1)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2) '0.0'은 건수는 있으나 수치가 매우 작은 경우를 의미하고, '-'은 건수가 '0'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7〉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암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52.7	48.8	50.4
1천만 ~ 2천만	32.6	36.2	34.7
2천만 ~ 3천만	12.6	12.9	12.8
3천만 ~ 4천만	0.7	1.0	0.9
4천만 ~ 5천만	1.1	1.0	1.0
5천만 ~ 1억	0.2	0.2	0.2
1억 ~ 2억	-	-	-
2억 ~ 3억	-	-	-
3억 ~ 4억	-	-	-
4억 ~ 5억	-	-	-
5억 ~ 10억	-	-	-
10억 초과	-	-	-
건수 합계	4,540,168	6,265,276	10,805,444

주: 1)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2) '-'은 건수가 '0'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표 II-8〉 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 변액보험

(단위: 원, %, 건)

가입금액	남자	여자	전체
1천만 이하	14.3	20.4	17.5
1천만 ~ 2천만	12.9	17.1	15.1
2천만 ~ 3천만	15.7	18.1	16.9
3천만 ~ 4천만	9.1	9.9	9.5
4천만 ~ 5천만	17.4	13.1	15.2
5천만 ~ 1억	22.6	16.0	19.1
1억 ~ 2억	4.9	3.7	4.3
2억 ~ 3억	1.6	0.9	1.2
3억 ~ 4억	0.4	0.3	0.3
4억 ~ 5억	0.5	0.3	0.4
5억 ~ 10억	0.5	0.3	0.4
10억 초과	0.11	0.06	0.08
건수 합계	3,714,107	4,071,712	7,785,819

주: 2017년 기준: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8)

부록 Ⅲ. 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및 운영방안

-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과 자문업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를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진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등⁹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함
 - 특히 설명의무 위반(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손해배상책임)**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함⁹⁹⁾
 - 단, 금융회사가 대리업자의 선임 및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됨
 - **(사전적립)**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금융회사 등이 부실에 빠지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실보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보상기금을 적립하여 활용함

98)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와 대리점·설계사·모집인과 자문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통칭함

99) 금융회사는 대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함

1. 적용대상 금융회사,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¹⁰⁰⁾와 판매 및 자문 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함

- (적용대상 회사) 부실로 인하여 배상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¹⁰¹⁾의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함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부실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적립된 보호기금에서 보상함

〈부록 표 III-1〉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근거법령

금융회사	근거법령	상품유형
은행(근거법령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포함)	은행법	예금 및 대출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자임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법	투자
보험회사	보험업법	보험 및 투자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대출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6호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 자본시장법, 보험업법상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함

- (보호상품 및 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함

10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금융회사(〈부록 표 II-1〉 참조)를 말함

1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부록 표 II-2〉 참조)를 말함

- 보험중개인 또는 자문업자의 경우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을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의 부실 시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함
- (보호범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투자 및 보험 상품을 보호대상 금융상품¹⁰²⁾으로 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함
-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금융회사의 경우, 예탁금을 제외한 유가증권 형태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함
- 보험업법을 근거로 한 금융회사의 경우, 변액보험과 변액연금 등 기존 통합예금보험제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함

〈부록 표 III-2〉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 업종구분

금융회사 등	근거법령	업종 구분
은행	은행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자본시장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보험회사	보험업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자 ¹⁾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7호아목

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10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중 투자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 중 변액 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 보호대상은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에 있어 정보비대칭성면에서 취약한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 중 대기업은 제외함
 - (전문금융소비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증권상장법인¹⁰³⁾ 등을 포함함
 - (일반금융소비자 적용예외) 해당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2. 기금조성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제44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등에 사전에 분담금 납입의무를 부과하고 금융법에 근거하여 징수된 과징금¹⁰⁴⁾도 보상기금 재원으로 활용함
 - (분담금) 소비자 피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전에 분담금을 납입하여 사후 부실에 빠지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상재원으로 활용함
 - 금융회사와 함께 판매 또는 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한 위법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보상재원을 사전에 부담시켜 형평성을 제고함
 - 특히 중개인이나 자문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보상책임을 사전에 분담시킬 필요가 있음
 - (배상책임) 대리점, 설계사, 모집인 등의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¹⁰⁵⁾

103)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함

10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 자본시장법 제428조, 429조 및 429조의2 보험업법 196조 은행법 65조의3 등 금융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말함

105)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위법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 있지만,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대신 금융회사의 구상권을 보장함

- 금융회사가 대리점 등의 선입과 업무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배상 책임이 면책되어 대리점 등의 위법행위에도 소비자 피해보상의 공백이 우려됨
-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를 대리점에도 부과함으로써 보험중개사와 자문업과의 형평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부록 표 III-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유형

구분	내용	예
예금성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예금·적금
대출성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과 여신전문업자의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담보대출, 신용카드
투자성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펀드, 신탁
보장성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료: 금융위원회(2020. 3. 17)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예금, 대출, 투자, 보장성 등 금융상품 유형¹⁰⁶⁾에 따른 위법 및 불완전판매 비중과 금융업자의 규모를 반영하여 분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함

- (적정 분담금) 금융회사, 판매대리업자, 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의 매출 규모를 반영하여 각 권역 시장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함
 - 각 금융회사 등의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부담 상한을 정하고, 각 권역 간 연간 부담 상한액도 설정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과 시장경쟁의 균형을 유지함

3. 보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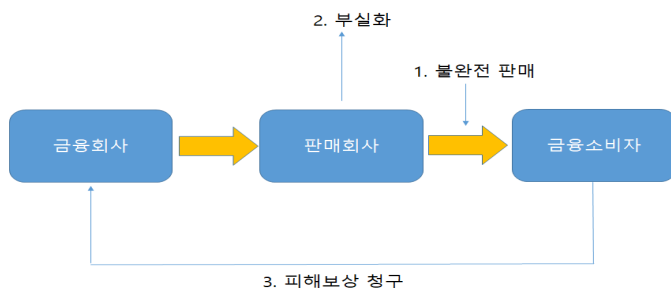
■ 보상기금을 통한 보상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또는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됨

10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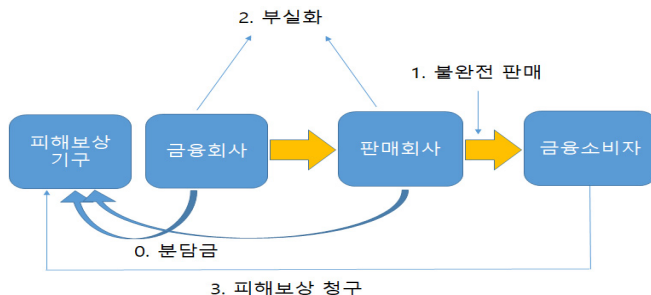
- **(판매책임 회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의 보상은 해당 금융상품 판매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모두 부실에 빠지는 경우에 한해 사전적립기금에서 보상함
 -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위법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이들의 부실 시 해당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우선적으로 배상책임을 짐
- **(자문업 등)** 금융상품 중개업 및 자문업의 경우, 이들의 위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보상은 이들의 부실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유가증권 관련 위법)** 부실에 빠진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유가증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예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실도 보상함

〈부록 그림 III-1〉 소비자 피해보상 개념도

가. 판매회사 부실화, 금융회사 생존



나. 판매회사와 금융회사 동시 부실화



4. 운영방안

- 현재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에 따른 예금자·보험계약자·금융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금융소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확장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¹⁰⁷⁾
 - 특히, 유가증권 예탁의 누락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투자자예탁금의 보상과 유사하므로 예금보험공사 업무의 확장 시 효율성이 높음
 - **(별도기구 논의)** 장기적으로 부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담당할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여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함
 - 기존의 투자자보호기구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은 원본손실 위험성 등 투자상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함¹⁰⁸⁾
 - 투자자 보호에서 확장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예금보험제도와 분리된 별도의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및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7) 노형식 외(2014), 전선애·오승곤(2015), 예금보험공사(2018d) 등에서 참고함

108) 전성인(2007), 맹수석(2008; 2017), 정대섭(2017b) 등에서 참고함

부록 IV. G7 국가 보호제도 자금조달방식

〈부록 표 IV-1〉 G7 국가의 예금자보호제도 자금조달방식 비교

구분	재원 조달 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추가 분담 가능	기금 적립액 (2019년 기준, Million)
		기금 목표규모	보합료			하한	분담기준	보합 료율		
			책정기준	요율 또는 인분	상한					
미국	사전	보호예금의 2%	총부채 (총자산-Tier1)	0.015% ~ 0.4%	1.35%	-	-	-	-	
캐나다	사전	보호예금의 1%	보호예금	0.075% ~ 0.333%	-	-	-	-	-	
독일	사전	-	부보예금	0.016%	-	-	-	-	-	
영국	혼합	-	보호예금	-	-	-	-	-	○	
프랑스	사전	보호예금의 0.5%	보호예금총액	± α	-	-	-	-	-	
이탈리아	사전	보호예금의 0.8%	보호예금	± α	-	-	-	-	-	
일본	사전	¥ 5조	부보예금	0.033%	-	-	-	-	-	
한국	사전	0.825% ~ 1.100%	적립금	0.08 ± α	-	-	-	-	-	

〈부록 표 IV-2〉 G7 국가의 투자자보호제도 자금조달방식 비교

구분	재원 조달 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추가 분담 가능	기금 적립액 (2019년 기준, Million)
		기금 목표 규모	보험료			분담기준	보험료율			
			책정기준	요율 또는 안분	상한			하한		
미국	사전	USD 25억	순영업이익	0.25%	-	초과 시 0.02	-	-	-	
캐나다	사전	CAD 1.25억	고객자산규모	± α	-	-	-	○	-	
독일	사전	-	총수익	1.23 ~ 7.7%	10%	-	-	-	-	
영국	혼합	Max[1년 or 3년 평균보상비용]	적격수익	-	-	-	적격수익	○	-	
프랑스	사전	€ 100억	-	± α	-	-	-	○	-	
이탈리아	사전	-	-	-	-	-	-	-	-	
일본	사전	¥ 500억	회원사 수, 영업수익, 고객자산 규모	1 : 2 : 2	¥ 50억	-	-	-	-	
한국	사전	0.825% ~ 1.100%	적립금	0.15% ± α	-	-	-	-	-	

〈부록 표 IV-3〉 G7 국가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제도 자금조달방식 비교

구분	재원 조달 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추가 분담 가능	기금 적립액 (2019년 기준, Million)
		기금 목표규모	보험료			분담기준	보험료율			
			책임기준	요율 또는 인분	상한			하한		
미국	사후	-		-		3개년 평균 수입보험료	Max 2%	-	-	
캐나다	혼합	Min CA\$ 1억 (유동성기금)	요구자본	$\pm \alpha$	-	요구자본	-	-	CA\$ (167+170) Mil.	
독일	혼합	책임준비금 $\times 0.1\%$	책임준비금	$0.02\% \pm \alpha$	-	책임준비금	Max 0.1%	○	€ 997 Mil.	
영국	혼합	Max[1년 or 3년 평균보상비용]	수입보험료 $\times 0.75$ + 책임준비금 $\times 0.25$	수보 및 책준	£690 Mil.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	-	
프랑스	혼합	-	책임준비금	0.05% (1/2 내부유보)	-	책임준비금	0.05%	○	€ 868 Mil.	
이탈리아	-		-			-	-	-	-	
일본	사전	¥ 4,000억	수입보험료 $\times 0.197$ + 책임준비금 $\times 0.012$	3개년 평균 (수보 + 책준)	¥ 330억	-	-	-	¥ 3,039억 (19년 3월)	
한국	사전	0.660% ~ 0.935%	수입보험료 $\times 0.5$ + 책임준비금 $\times 0.5$	$0.15\% \pm \alpha$	-	-	-	-	-	

〈부록 표 IV-4〉 G7 국가의 손해보험계약자보호제도 자금조달방식 비교

구분	재원 조달 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추가 분담 가능	기금 적립액 (2019년 기준, Million)
		기금 목표규모	보험료			분담기준	보험료율			
			책정기준	요율 또는 인분	상한			하한		
미국	사후	-	-	-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Max 2%	-	-	
캐나다	혼합	Min CA\$ 2억 (보상기금)	수입보험료	-	-	수입보험료	Max 1.5%	-	CA\$ 56 Mil.	
독일	사후	-	-	-	-	책임준비금	0.02% (Max €10억)	-	-	
영국	혼합	Max[1년 or 3년 평균보상비용]	수입보험료×0.75 + 책임준비금×0.25	인분 (수보 및 책준)	£600 Mil.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	○	-	
프랑스	혼합	-	수입보험료 (보험계약자 부담)	2%	-	수입보험료	-	○	-	
이탈리아	사전	-	수입보험료	5%	-	-	-	-	-	
일본	사전	¥ 500억	수입보험료×0.038 + 책임준비금×0.007	안분(수보70% + 책준30%)	-	-	-	-	¥ 500억 (19년 3월)	
한국	사전	0.825% ~ 1.100%	수입보험료×0.5 + 책임준비금×0.5	0.15% ± α	-	-	-	-	-	

부록 V. 주요국 목표적립비율 산정방식

〈부록 표 V-1〉 목표적립비율 산정 기준(예금자보호제도)

목표기금 설정방식	설정기준(분모)	국가	목표기금(비율/금액)
법령 (28개국)	Insured Deposits (15개국)	알바니아	5
		불가리아	1
		중국	2
		핀란드	0.8
		프랑스	0.5
		홍콩	0.25
		헝가리	0.8
		이탈리아	0.8
		키르키즈	15
		리비아	3
		몰도바	7
		몬테네그로	10
		폴란드	2.6
		싱가포르	0.3
		슬로바키아	0.8
	Insurable Deposits (11개국)	아제르바이잔	5
		브라질	2
		체코	1.5
		에스토니아	2
		과테말라	5
		온두라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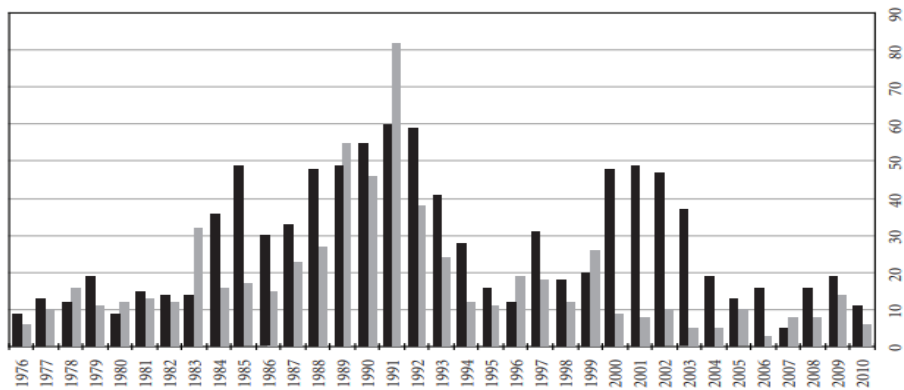
〈부록 표 V-1〉 계속

목표기금 설정방식	설정기준(분모)	국가	목표기금(비율/금액)
법령 (28개국)	Insurable Deposits (11개국)	인도네시아	2.5
		카자흐스탄	5.7
		마케도니아	4
		팔레스타인	3
		우루과이	5
	Total Deposits (2개국)	아르메니아	5
		아르헨티나	5
예금보험기구 (16개국)	Insured Deposits (7개국)	브루나이	0.5
		캐나다: CDIC	1
		자메이카	8~10
		코소보	8~9
		말레이시아	0.9~0.9
		필리핀	5.0
		미국	2
	Insurable Deposits (4개국)	콜롬비아	5.5
		몽골리아	4
		루마니아	3
		한국	0.825~1.1
	Total Deposits (2개국)	캐나다: B.C.	0.88
		짐바브웨	2
	Deposits and Borrowings (1개국)	캐나다: Alberat	1.5
	Amount(2개국)	바하마	BSD 81 Million
		일본	JPY 5 Trillion

자료: IADI(2018a: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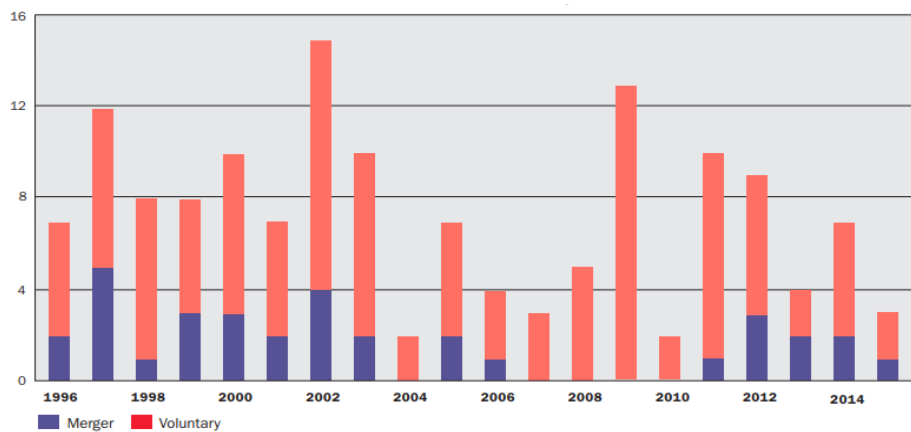
부록 VI. 미국, 캐나다 보험회사의 파산 건수 추이

〈부록 그림 VI-1〉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 건수 추이



자료: Klein(2009)

〈부록 그림 VI-2〉 캐나다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건수 추이



자료: Kelly(2017)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제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진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금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화·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운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 정봉은·이창성 2020.8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사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 2020-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 양승현 2020.9
- 2020-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 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 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 송윤아, 강성호, 기승도, 장윤미 2020.9
-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황 인 창

KAIST 경영공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ichwang@kiri.or.kr)

김 해 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이 승 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김 동 겹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dgkim@kiri.or.kr)

안 소 영

City University of London 보험·위험
관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veryberry_y@kiri.or.kr)

연구보고서 2020-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28-0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